

월간

재정포럼

2022. July_Vol.313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7

권두칼럼

나라 살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 전영준

현안분석

토지거래허가제가 인근지역에 미치는 풍선효과 | 김하영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박정흠

정책연구

주택가격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외

정책토론티포트

KIPF-AMRO 공동연구 워크숍:

주요 아시아 국가의 코로나19 경제충격과 재정대응의 평가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2022년 하반기 표준마일리지 요율 인상 발표 외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CONTENTS

권두칼럼

나라 살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 전영준 02

현안분석

토지거래허가제가 인근지역에 미치는 풍선효과 | 김하영 08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30

미치는 영향 분석 | 박정흠

정책연구

주택가격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 강동익·송경호 61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
| 안종석·정재호 6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 임홍래·한동숙 68

근로장려세제 확대의 경제적 효과:
노동공급과 납세행태에 미친 영향
| 권성오·홍우형 71

재정여력 및 건전성 관련 지표 개선 방안
| 김종면·박윤진 73

정책토론포트

KIPF-AMRO 공동연구 워크숍: 78

주요 아시아 국가의 코로나19 경제충격과 재정대응의 평가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2022년 하반기 표준마일리지 요율 인상 발표 외 94



나라 살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전영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필자가 재정학 분야 연구에 종사한 지 올해로 27년째가 된다. 1995년 7월 1일부로 한국조세연구원에 입사한 이래 길다면 긴 기간 동안 이 분야 연구에 종사하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 노력도 해왔고 고민도 있었다. 연구자들이 모두 느끼는 점이겠지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하는 문제이다. 경제학은 가치중립적인 학문이 아니고 또한 순수과학이라기보다 사람들의 일상과 관련된 생활 밀착형 학문이다. 따라서 경제학 연구의 산물이 집대성되어 경제정책으로 연결될 때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나라 살림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연구하는 재정학은 국민의 생활과 더욱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분야이다.

상대주의를 넘어 최소한의 기준을 모색할 필요

그러면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 것이며 공공경제학이라고도 불리는 재정학은 이에 대해 어떠한 원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인가? 재정학은 아직도 이 원칙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지 못하며,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가재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부지출 수준과 조세부담률 혹은 국민 부담률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상이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반면 시장의 한계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타협하고 넘어간다. 상대주의는 절대적 타당성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경험

과 문화 등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에 따라 가치판단 또는 진실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현실에 대해 상이한 인식을 하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이한 가치판단을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대주의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러한 상대주의를 온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모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필자는 이 기준을 가정의 살림살이에서 찾아볼까 한다.

.....

가정의 성실한 가장이 가정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가는 정부가 국가재정을 어떻게 운영하여야 하는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가정의 살림살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나라 살림

가정은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근간이다. 경제는 각 가정의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과 그 의사결정의 결과인 자원배분으로 구성된다. 경제(Economy)라는 용어는 그리스어로 ‘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이라는 ‘Oikos Nomos’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경제학 모형에서 사회의 최적자원배분을 모색할 때 대표적인 가계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가정의 성실한 가장이 가정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가는 정부가 국가재정을 어떻게 운영하여야 하는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각 가정의 성실한 가정은 집안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가? 우선 가족의 풍족한 소비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자 노력한다. 자녀의 장래를 위하여 자녀 교육에 힘쓰며 자녀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한다. 자녀가 장성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도 부모는 필요하다면 자녀를 돕기 원한다. 자녀들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녀에게 능력의 범위 내에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려 한다. 가장들은 현재의 소비와 함께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가장은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고(생애주기적 동기),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위험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며(예비적 동기), 또한 좋은 투자 기회를 대비하여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일정 수준 보유하는 의사결정을 한다(투자적 동기). 나라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며 미래세대의 후생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공교육 제공을 비롯하여 각종

.....

대리인인 정부는 때로는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하기도 한다.

교육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공적연금과 같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각종 제도와 국가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타나는 가정의 살림살이와 나라 살림살이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때로는 재원을 낭비하며 집권 기간 동안 유한책임을 지는 정부

가정의 가장은 자신과 가족의 소득과 자산을 관리하는 반면 정부는 국민이라는 주인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이 위임한 국가 사무를 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세를 징수하고 지출을 한다. 대리인인 정부는 항상 주인인 국민의 후생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주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하기도 한다. 가장은 가정의 살림살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지만 정권은 집권 기간, 즉 유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유한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집권 기간 동안 지출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지만 유권자들의 더 많은 표를 유도할 수 있는 용도로 지출을 함으로써 재원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경제성이 없는 정부투자를 용인하여 두고두고 국민의 부담이 되도록 하는 문제를 방관하는 경우도 있다. 성실한 가장이라면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없어 보이는 용도에 지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부채 관리도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이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늘리고 또한 국가부채 수준을 높여도 무방하다고 한다. 현명한 가장이라면 이웃집이 안고 있는 부채가 우리집보다 훨씬 많으므로 우리집도 빚을 내서 돈을 더 쓰고 즐기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채 규모가 너무 크면 앞으로 예기치 못한 위기 발생 시 가정경제가 파탄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 이웃집이 어떻게 하든 자신의 능력에 맞게 부채를 관리할 것이다. 부모들은 자신의 부채를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떠넘기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 부채 증가와 공적연금을 비롯한 각종 제도를 통해 조세부담을 미래세대로 떠

넘기고 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에 저부담-고급여 구조라고 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 공적연금급여 수급액에 비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미래세대들의 조세부담 증가로 귀착된다. 보험시장에서 부모가 보험급여를 먼저 받고 보험료를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자녀가 대신 부담하게 하는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회사가 먼 미래의 보험료 수입을 담보할 수 없기도 하지만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제도를 비롯한 각종 지원제도의 수혜자가 수혜의 필요성이 큰 사람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집단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에 로비를 한 결과 필요 이상의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가정에서도 멀쩡히 잘 살면서도, 부모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하여 실제로 못 사는 자녀보다는 징징거리는 자녀에게 돈을 더 주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하는 가장을 현명하다고 하지는 않는다.

.....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때 ‘성실한
 가장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생각해본다면
 가장의 무한책임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 성실한 가장으로서 무한책임을 되새겨야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때 ‘성실한 가장이면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하는 생각을 한 번은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한계는 있을 것이다. 유한기간 동안 대리인으로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정부, 보다 구체적으로는 집권세력이 무한책임을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공적 서비스(public service)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국정에 참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실한 가장의 무한책임을 다시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최근 들어선 새 정부가 ‘인기 없는’ 정책도 미래세대를 위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하는 헛될 수 있는 바람을 이번에도 가져볼까 한다. **KIPF**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토지거래허가제가 인근지역에 미치는 풍선효과

김하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정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토지거래허가제가 인근지역에 미치는 풍선효과



김하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hykim1@kipf.re.kr)

I. 서론

‘핀셋규제’에 의한 ‘풍선효과’는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비판의 주요 근거가 되어 왔다. 즉 부동산 투자수요가 존재하는 한, 특정지역에 대한 규제는 대체지역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가격을 상승시키므로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 투기 또는 가격상승 억제효과가 거의 없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학술적으로 풍선효과는 장소기반 정책의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간접효과인 대체효과(displacement effect)에 해당되며, 도시 및 지역 관련 정책에서 사람기반 정책(people-based policy)과 장소기반 정책(place-based policy)의 효과성에 대한 이슈는 오래된 논쟁과 연구주제이다.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의 억제가 정책목표일 경우, 부동산 투자의 행위자를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혹은 대상지역 또는 자산을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쟁이 대표적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사람기반 정책, 특정지역에 대한 대출규제 등은 장소기반 정책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후자에 해당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풍선효과로 인해 규제의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장소기반 정책의 경우에는 풍선효과, 즉 대체효과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이효과(spillover effect)도 함께 고려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대체효과와 전이효과를 동시에 분석한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책을 이용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도시 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범죄 발생이 높은 지역에 순찰인력을 늘리면 인접지역 범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Blattman et al.(2021)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범죄 핫스팟(hot spot)에 대한 무작위실험(randomized experiment)을 수행한 결과, 범죄가 대체지역으로 이전하여 도시 전체의 실제 범죄 발생건수는 크게 낮아지지 않았으므로 장소기반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 Weisburd and Telep(2016)와 Braga et al.(2019)은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경찰 순찰을 늘리지 않은 인접지역에서도 조심하여 인접지역 범죄율도 같이 낮아지는 전이효과에 의해 범죄 억제에 장소기반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이러한 전이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자산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규제지역 내 부동산 수요의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인근지역으로 가격 하락이 전이되는 효과(price spillover)를 예상할 수 있다. 최근 연구(Szumilo, 2020)에서는 내부 리모델링을 한 주택의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인접주택의 가격 역시 약 0.3% 상승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2020년 6월 시행된 삼성동·청담동·대치동·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해당지역과 인접지역의 거래가격 및 거래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해당 규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수요가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풍선효과 또는 대체효과에 의해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는지, 혹은 규제지역 내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인근지역으로 전이되는 효과가 나타나는지 통계적인 증거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II. 분석대상 지역

1.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신도시나 도로 등을 조성할 때 인근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1979년에 도입된 규제이다. 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 가능하

본고는 2020년 6월 시행된 삼성동·청담동·대치동·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해당지역과 인접지역의 거래가격 및 거래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해당 규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면적이 180㎡ 초과인 경우만 허가를 요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표 1>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2020년 기준)

용도지역		허가를 요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 미지정	90㎡ 초과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며,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법 제12조 및 17조에 의해 거주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자금출처 소명이 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할 경우에만 주택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의 매수가 원천 금지되는 효과가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른 허가대상 면적은 <표 1>과 같이, 도시지역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면적(주택인 경우 대지지분 면적)이 180㎡ 초과인 경우에만 허가를 요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제가 토지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정광호·김원수(2005), 최종흠(2007) 등 다수 존재하나, 주택시장에 미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대신 유사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의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의 효과를 분석한 김대원·유정석(2014)과 2018년 8월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과를 분석한 양완진·김현정(2020)에서는 규제지역 지정이 오히려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8·2 대책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의 효과를 분석한 송경호·권성오(2020)

이론적으로 특정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풍선효과와 가격전이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은 상승과 하락이 모두 가능해진다.

[그림 1]의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부지(옛 한전 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s, Exhibitions)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지구 지정된 후, 2016년 서울시에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으며,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2020년 6월 5일 KDI의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주변 주거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커져 그해 6월(2020. 6. 23.~2021. 6. 22.) 주변 지역인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2021. 6. 23.~2022. 6. 22.)과 2022년(2022. 6. 23.~2023. 6. 22.)에 재지정되었다.

III. 실증분석

이론적으로 특정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풍선효과와 가격전이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은 상승과 하락이 모두 가능해진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인접지역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로 인해 강남 지역 아파트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언론보도 내용에서처럼 토지거래허가제가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설명될 수 있다. 해당 규제가 인접지역의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 가격전이효과는 자산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는 자산가격 동조화로 설명될 수 있다(Shiller, 1989). 이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매커니즘은 구매자 또는 투자자들이 대상 자산의 적정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유사 또는 인근 자산의 거래가격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즉 규제지역 인근 아파트에 대한 투자자의 가치 평가가 규제지역 내의 아파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비합리성을 행동경제학에서는 정박효과(anchoring)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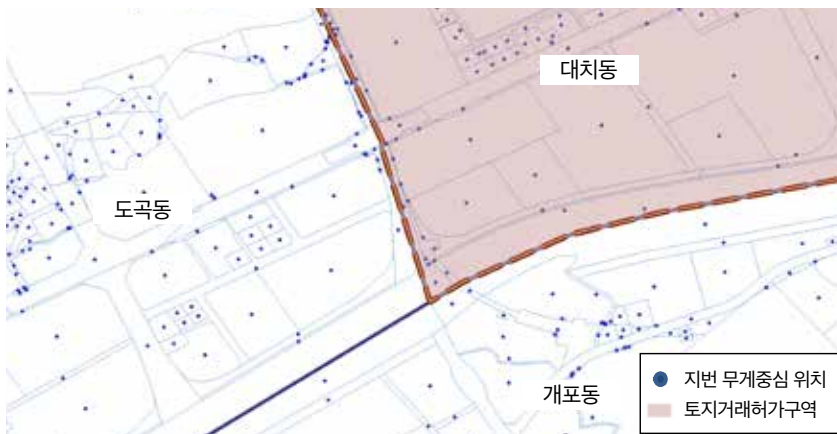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부동산 투자수요 및 가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료

실증분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중 2016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대체효과 및 전이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규제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아파트 거래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는 아파트 동·호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된 개별 아파트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할 수가 없다. 이에 본고는 각 개별 아파트가 해당 아파트단지의 무게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하여 [그림 2]와 같이 각 지번(아파트 단지)의 무게중심 위치를 먼저 구한 다음, 그 무게중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선까지의 직선최단거리를 측정하여 각 개별 아파트와 허가구역 간의 거리로 사용하였다. 경계선까지 거리별 주요 아파트단지는 <표 2>와 같으며, <표 3>에서는 허가구역 내부와 외부에 위치한 아파트의 주요 특성들을 요약하여 비교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청담동·삼성동·대치동·잠실동과 서울 나머지 지역을 비교했을 때보다 허가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0~500m에 위치한 아파트와 바깥쪽 0~500m에 위치한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용면적 등이 더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토부 자료는 아파트 동·호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고는 각 지번의 무게중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선까지의 직선최단거리를 측정하여 각 개별 아파트와 허가구역 간의 거리로 사용하였다.

[그림 2] 각 지번의 무게중심 위치



출처: 저자 작성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청담·삼성·대치·잠실동과
 서울 나머지 지역을
 비교했을 때보다
 허가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안쪽
 0~500m에 위치한
 아파트와 바깥쪽
 0~500m에 위치한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용면적 등이 더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선까지 거리별 주요 아파트단지

경계까지의 거리	주요 아파트단지
-1,195 ~ -500m	송파 잠실: 월드메르디앙, 우성, 아시아선수촌, 엘스, 리센츠 강남 삼성: 진흥, 청구,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상아, 홍실 강남 대치: 레미안 하이스턴, 현대, 효성, 은마, 우성 강남 청담: 진흥, 삼성청담공원, e편한세상, 자이
-500 ~ 0m	송파 잠실: 갤러리아팰리스, 트리지움, 주공5, 우성4, 레이크팰리스, 현대 강남 삼성: 웰다타워, 롯데캐슬프리미어, LG에클라트, 레미안2, 서광 강남 대치: 삼성, 쌍용, 레미안팰리스, 선경1·2, 한보미도1·2, 개포우성1·2, 센트레빌, 아이파크 강남 청담: e편한세상2, 자이, 삼익, 건영, 현대
0 ~ 500m	송파 석촌: 석촌호수해링턴, 잠실한솔 송파 신천: 롯데캐슬골드, 장미1, 더샵스타파크, 한신코아 송파 송파: 호수임광 강남 압구정: 한양1·2·3·4·5·7 강남 역삼: 개나리SK뷰, 센트레빌, 개나리푸르지오, e편한세상, 래미안, 아이파크 강남 개포: 자이, 성원대치2, 우성3·8·9, 주공5·6·7, 경남1·2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1·2·3, 래미안카운티, 렉슬, 아카데미스위트1, 래미안, 현대비전21, 아크로빌 강남 논현: 동현, 파라곤, 아크로힐스 강남 일원: 우성7 성동 성수1: 한신한강
500 ~ 1,000m	송파 신천: 푸르지오월드마크, 장미2·3, 더샵스타리버, 미성, 파크리오 송파 방이: 신동아타워 송파 송파: 한양 송파 가락: 센트레빌 강남 압구정: 현대8 강남 역삼: 래미안크레이튼, 자이, 대우디오빌 강남 개포: 현대1·2, 주공4, 래미안블래스티지 강남 도곡: 매봉삼성, 우성4, 한신, 삼성, 아이파크1 강남 일원: 현대4, 개포한신, 래미안개포루체하임 강남 논현: 센트레빌 성동 성수1: 트리마제, LIG건영, 한진타운, 현대그린, 서울숲대림, 금호 성동 성수2: 청구강변1, 강변임광, 힐스테이트 광진 자양: 한강우성, 로얄동아, 한솔리베르, 트라팰리스, 현대강변, 현대3·5·6, 이튼타워리버3·5, 한강성원, 삼성, 현대홈타운7
1,000 ~ 1,500m	송파 신천: 진주 송파 방이: 올림픽카운티, 금강KCC 송파 송파: 한양2, 현대, 래미안, 미성맨션, 성지 송파 가락: 헬리오시티 성동 성수1: 신장미 강남 압구정: 현대1·2·3·4·5·6·7·10·14, 신현대9·11·12 강남 개포: 시영, 주공1, 우성6 강남 도곡: 삼익, 경남, 럭키, 한신엠비씨, 대림 강남 일원: 수서, 한솔마을, 푸른마을, 샘터마을, 목련타운 강남 논현: 마일스디오빌 성동 성수1: 동아, 갤러리아포레 광진 자양: 현대홈타운8·10, 현대2, 한양, 우성1·2·3·7, 한라, 대동 광진 구의: 강변힐하우스, 강변우성

출처: 저자 작성

<표 3> 기술통계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부 vs. 외부

구분	N	mean	sd	min	p25	p50	p75	max
가. 토지거래허가구역(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경계까지 거리(km)	15,363	0.5	0.25	0.02	0.28	0.46	0.75	1.2
매매가(억원)	15,363	16.36	8	1.8	11.2	15.2	19.9	115
전용면적(m ²)	15,363	94.14	37.08	12.45	76.79	84.83	114.7	273.96
건축연도(년)	15,363	1998.7	11.86	1978	1985	2004	2008	2021
나. 서울 내 나머지 지역								
경계까지 거리(km)	520,673	9.5	5.13	0.03	4.86	9.62	13.69	21.32
매매가(억원)	520,673	7.07	5.23	0.11	3.91	5.73	8.5	120
전용면적(m ²)	520,673	77.42	30.39	10.02	59.65	83.05	84.97	424.32
건축연도(년)	520,673	1999.92	9.61	1961	1993	2000	2006	2021
구분	N	mean	sd	min	p25	p50	p75	max
가. 경계 안쪽 0~500m(토지거래허가구역 내부)								
매매가(억원)	8,160	17.08	8.77	1.98	11.65	16	21.05	115
전용면적(m ²)	8,160	98.81	39.46	18.53	76.5	84.95	119.58	273.96
건축연도(년)	8,160	1998.31	11.69	1978	1985	2004	2007	2020
나. 경계 바깥쪽 0~500m(토지거래허가구역 외부)								
매매가(억원)	9,893	15.35	8.27	1.4	9.3	14.05	19.5	72
전용면적(m ²)	9,893	93.73	45.3	15.54	59.88	84.87	122.81	264.3
건축연도(년)	9,893	1997.41	10.55	1977	1988	2001	2006	2018

출처: 저자 작성

2. 분석모형

본고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아래 식 (1)과 같은 이중차분법 모형을 사용하였다.

$$y_{i,t} = \beta Post_t \times Treated_i + X'_{i,t}\gamma + \epsilon_{i,t} \quad \text{식 (1)}$$

i : 개별 아파트

t : 매매계약일

y : ln(매매가)

$Post$: 매매계약일이 2020년 6월 17일 이후인 경우 1(규제 시행 전 1년 대비 시행 후 1년 비교)

$Treated$: 매매된 아파트가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또는 잠실동에 위치할 경우 1

X : $Post, Treated$, 연월 고정효과, 아파트단지 고정효과, ln(전용면적), 층수, 층수²

식 (1)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증가 또는 감소하면서 규제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이중차분법 모형을 식(3)과 같이 사용하였다.

$$y_{i,t} = \left(\sum_{j=2}^8 \beta_{1,j} Pre_t^j \right) \times Treated_i + \left(\sum_{j=1}^2 \beta_{2,j} Post_t^j \right) \times Treated_i + X'_{i,t} \gamma + \epsilon_{i,t} \quad \text{식 (2)}$$

식 (1)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시간에 따른 효과의 변화, 그리고 규제 시행 전 처치군과 대조군 간의 추세(pre-trend)가 유사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적이중차분법 모형을 식 (2)와 같이 사용하였다. 식에서 *Pre* 및 *Post*는 규제 시행 전 또는 후의 6개월 단위기간으로 규제 시행 4년 전부터 시행 후 1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의 기준기간(reference period)은 Pre_i^1 (규제시행 직전 6개월 기간)이다. 즉 추정된 결과값은 규제시행 직전 6개월 기간 동안의 거래 가격 대비 기준시점에서의 거래가격 평균적인 변화분에 대하여 처치군과 대조군을 비교한 값이 된다.

$$y_{i,t} = \left(\sum_{j=1}^2 \beta_{1,j} In_i^j \right) \times Post_t + \left(\sum_{j=1}^4 \beta_{2,j} Out_i^j \right) \times Post_t + X'_{i,t} \gamma + \epsilon_{i,t} \quad \text{식 (3)}$$

식 (2)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규제의 효과를 측정한다면, 식 (3) 공간이중차분법 모형은 경계선을 기준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증가 또는 감소하면서 규제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식에서 *In* 및 *Out*은 거래된 개별 아파트가 허가구역 경계선 안쪽에 있는지, 또는 바깥쪽에 있는지를 500m 단위(0~500m, 500~1,000m, 1,000~1,500m, 1,500~2,000m)로 구분한 변수이다.

분석대상 지역은 실증분석 측면에서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첫째는 외부효과 측면의 장점이다. 재정이 투입되는 대부분의 장소기반 정책은 외부효과를 발생시켜 인근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이효과 또는 대체효과를 실증적으로 식별하기 상당히 어렵게 한다. 즉 외부효과를 통제하지 않으면 전이효과나 대체효과에 의한 규제의 효과가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자체는 재정투입이 수반되지 않는 순수 규제이므로 단기간에 외부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허가구역 내에서의 거래만 규제하므로 허가구역 외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경계에 인접한 규

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외부효과에 대한 기대치 역시 유사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실증분석에서의 대조군 설정 측면이다. 서울 내 기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대상지역으로 인접지역과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실증분석을 통한 정책효과의 식별이 쉽지 않다. 거래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은데, 학술적 연구가 가장 활발한 규제는 중국의 투자목적 주택구매 제한 정책이다. 해당 규제에 대한 많은 학술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규제가 주로 도시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조군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측면에서 정책효과 식별이 어려운 환경이다. 반면 본고의 분석대상인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동단위 시행으로 같은 구 내에 위치한 인접 동과의 비교가 가능하며, 개별 주택 및 주택시장의 특성 측면에서 도시 간 비교에 비해 효과의 식별이 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동단위 시행으로 같은
구 내에 위치한 인접
동과의 비교가 가능하며,
개별 주택 및 주택시장의
특성 측면에서 도시 간
비교에 비해 효과의
식별이 보다 용이하다.**

IV. 분석결과

1.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식 (1) 기본 이중차분법 모형을 이용하여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매매가에 미친 영향을 규제 시행 전 1년 대비 시행 후 1년간의 기간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허가구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규제 시행 후, 나머지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와 비교했을 때(모형 1)는 약 22.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교 대상을 허가구역 경계선에서 외부 0~500m 범위에 위치한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내부 0~500m 범위에 위치한 아파트의 매매가를 비교했을 경우(모형 2)에는 약 14.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월 고정효과와 아파트단지 고정효과를 추가한 모형 (4)에서는 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가가 약 3.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 시행 후, 허가구역 내 가격수준이 높은 아파트단지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줄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투자수요가 더 높으며, 규제 시행에 따라 해당 아파트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본고에서 결과의 해석

규제 시행 후 허가구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모형 (1)에서 약 22.9% 하락했으나, 모형 (4)에서 약 3.7% 하락한 점은 규제 시행 후 허가구역 내 가격수준이 높은 아파트단지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줄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표 4> 허가구역 매매가에 대한 직접효과

종속변수: ln(매매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표본	서울 전역	경계선내외 500m	경계선내외 500m	경계선내외 500m
<i>Post × Treated</i>	-0.260*** (0.0801)	-0.161** (0.0719)	-0.0374*** (0.0141)	-0.0373*** (0.0136)
<i>Treated</i>	0.803*** (0.0312)	0.0751 (0.0665)		
<i>Post</i>	0.225*** (0.00629)	0.128*** (0.0218)	0.174*** (0.00669)	0.0402*** (0.0118)
연월 고정효과			YES	YES
아파트단지 고정효과				YES
Observations	190,813	5,782	5,744	5,744
Adjusted R-squared	0.563	0.635	0.975	0.981

주: 1. 괄호 안의 값은 아파트단지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임
 2. *** p<0.01, ** p<0.05, * p<0.1
 출처: 저자 작성

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으나, 저금리 등 다양한 경제변수의 영향으로 규제지역 내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을 수는 있다. 즉 해당 규제지역의 아파트매매가가 절댓값 기준으로는 상승하였을 수는 있으나, 대조군 지역 아파트 가격상승률과 비교했을 때는 가격상승률이 더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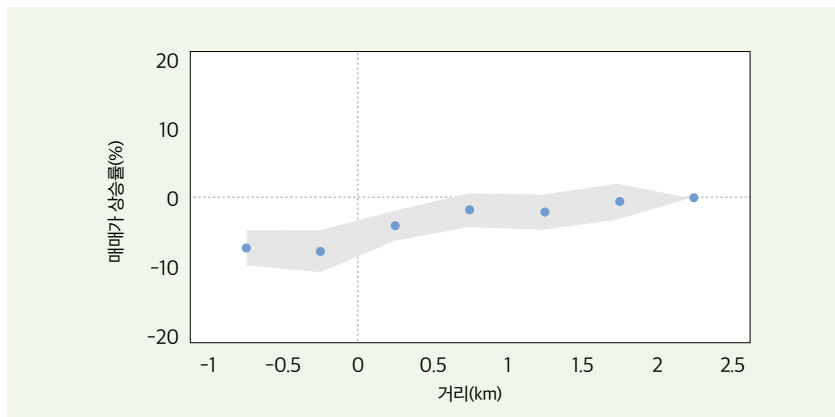
언론 및 유사정책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규제지역 내에서의 부동산가격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지역의 (투자)수요 감소는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결과에서 나타난 가격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효과이다. 따라서 보다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규제 시행이 인접지역 매매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일 것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 식 (3)의 공간이중차분법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해당 분석에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선 바깥으로 거리가 2,500m 떨어진 지역까지의 아파트 거래가 사용되었으며, 거리에 따라 500m 단위로 그룹을 나누어서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대조군 또는 기준그룹(reference group)은 경계선에서 2,000~2,500m 떨어진 지역으로 강남구, 광진

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일부 지역 아파트단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림에 나타난 상승률은 규제 시행 전후 기준그룹에서의 가격 상승률 대비 해당지역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상승했는지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허가구역 내 매매가는 7.2%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가구역 외부 0~500m 범위의 아파트 매매가 역시 4.2%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2,000m 지역의 매매가 상승률은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0~500m 지역에서의 가격 하락은 허가구역 내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은 가격전이효과로 볼 수 있다. 즉 0~500m 지역을 대조군으로 사용한 <표 4>에서의 추정값은 과소추정치로 볼 여지가 크다.

하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허가구역 외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모두 상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그림 3]에서 0~500m 지역을 제외한 비규제지역 가격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림 4]에서는 서울 전체 지역의 아파트 거래자료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대조군은 허가구역 경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인 구로구와 강서구 일부 지역으로 직선거리가 20.0~21.3km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분석 결과 [그림 3]과 마찬가지로 2.0~5.0km 떨어진 지역의 매매가 상승률은 대조군 지역 상승률 대비 통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인접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에 대한 통계적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허가구역 인접지역의 매매가격은 가격전이효과로 인

500~2,000m 지역의 매매가 상승률은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0~500m 지역에서의 가격 하락은 허가구역 내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은 가격전이효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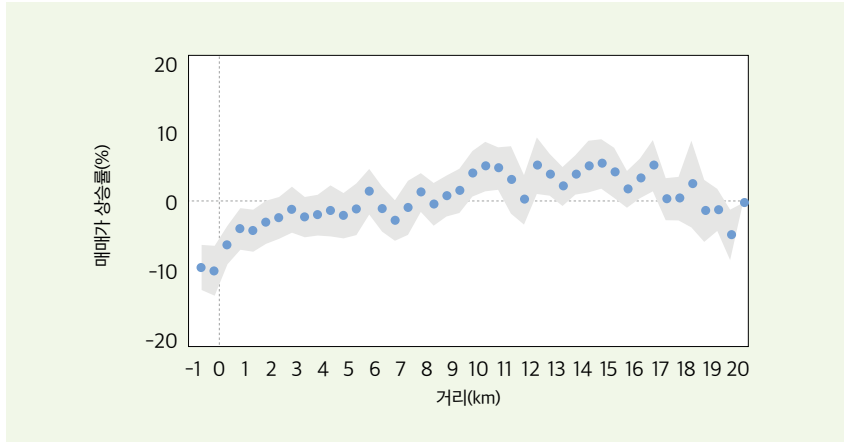
[그림 3] 거리에 따른 가격 상승률 변화



주: 그림에서 음영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허가구역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에 대한 통계적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고, 허가구역 인접지역의 매매가격은 가격전이효과로 인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허가구역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가격 상승률 변화: 서울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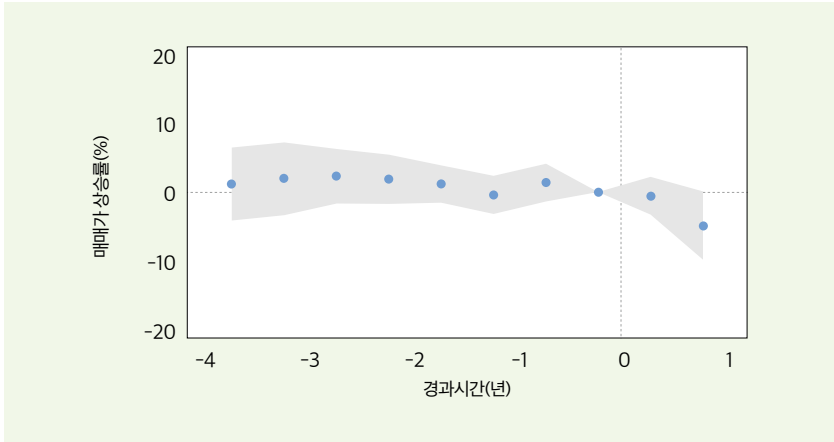
주: 그림에서 음영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상승률 측면에서는 약 10~17km 떨어진 지역들이 분석기간 동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보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해당 지역은 2030세대들의 매수비중이 높다고 알려진 소위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격수준과 생활여건 측면에서 강남지역과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시행이 강남권 수요를 노도강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풍선효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식 (2)의 동적이중차분법 모형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5] 및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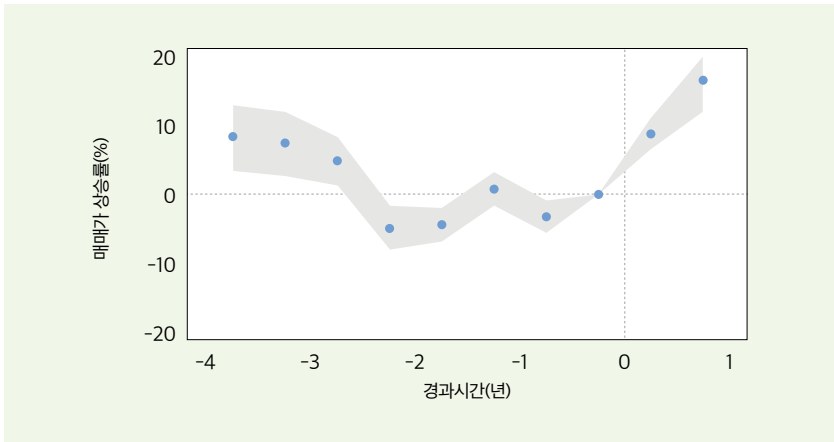
두 그림은 모두 규제 시행 4년 전부터 시행 1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의 매매가 상승률 변화를 6개월 단위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5]에서는 허가구역 내에서의 가격 상승률을 허가구역에서 1.0~1.5km 떨어진 지역의 상승률과 비교하고 있으며, [그림 6]에서는 노도강 지역의 상승률을 동일한 대조군과 비교하고 있다. 허가구역의 경우 규제 시행 전에는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으나, 규제 시행 후 바로 매매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노도강 지역 아파트매매가 상승률은 규제 시행 전 이미 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별화된 가격 추세를 보였으며, 규제 시행 후 나

[그림 5] 허가구역 vs. 1~1.5km



주: 그림에서 음영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그림 6] 노도강 vs. 1~1.5km



주: 그림에서 음영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허가구역의 경우
규제 시행 후 바로
매매가상승률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노도강 지역의 가격상승률
증가추세는 규제 시행
1년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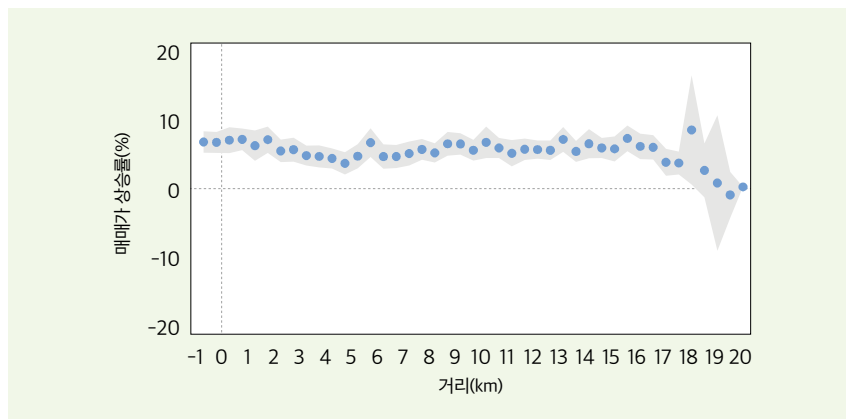
타난 가격상승률 증가추세는 규제 시행 1년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결과는 노도강 지역에서의 가격상승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한 통계적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인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그림 5], [그림 7]과 같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전에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간의 차별화된 추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6·17 대책 이전에 발표된 정책으로 인해 본고의 분석 결과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로 가격 수준이 낮은 노도강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투기억제 등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표 및 시행되었기 때문에 특정 규제의 효과를 식별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그림 4]에서 나타난 패턴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무관하게 나타났을 가능성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 7]에서는 플라시보(placebo) 분석을 시도하였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발표된 2020년 6월 17일보다 1년 전인 2019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과 이후 1년을 비교한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대조군 지역(구로구·강서구 일부 지역) 대비 매매가 상승률은 서울 전 지역에서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그림 4]에서 나타난 노도강 지역의 매매가 상승은 [그림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전에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전후하여 대조군 지역 및 노도강 지역 대비 강남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림 5]와 [그림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전에는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 간의 차별화된 추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6·17 대책 이전에 발표된 정책으로 인해 본고의 분석 결과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그림 7] 거리에 따른 가격 상승률 변화 플라시보(Placebo) 분석 (2018. 6. 17.~2019. 6. 16. 대비 2019. 6. 17.~2020. 6. 16.)



주: 그림에서 음영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6·17 대책에 포함된 다른 규제로 인해 본 분석 결과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020년 6월 17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의 추진 과제는 <표 5>와 같이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 조치 추진의 4가지로 요약된다. 세부 내용 중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보증자 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개인·법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 중부세 과세’ 등은 모두 분석지역의 부동산 가격 및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다. 하지만 해당 규제들은 강남지역 전체 또는 서울지역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본고의 분석대상지역인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인접지역을 비교하는 본고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표 5>의 규제 역시 강남지역 전체 또는 서울지역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본고의 분석대상지역인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인접지역을 비교하는 본고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표 5>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대상지역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인천·대전·청주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인천·대전 17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지역 주담대 및 보증자 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진단 시·도 관리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재 -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재건축부담금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지역 개인·법인사업자 주담대 금지 법인 등 세제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 폐지 -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 중부세 과세 -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및 장기등록임대도 적용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법인 거래 조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가상한제 및 12·16 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공모 사업지구 선정 및 2차 사업지 공모 착수(8월) -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9월) -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9월) - 오피스·상가 주거 용도변경 사업 시범사업 선정(10월)

출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보도자료, 2020. 6. 17.

규제 시행 전·후 1년, 경계선 안·밖 0~500m 지역을 이중차분법 모형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1년간 허가구역 내 아파트단지의 월 거래량은 약 7.3%(모형 1) 하락 또는 월 0.3건(모형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풍선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표 6>에서는 규제 시행이 아파트 거래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 (1), (2), (3) 모두 규제 시행 전·후 1년, 그리고 경계선 안·밖 0~500m 지역을 이중차분법 모형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에서 종속변수는 거래량의 로그값이며, 모형 (2)에서는 거래량을 사용하였다. 거래량 등의 가산변수(count variable) 모형은 이분산성의 특징이 있으며(Cameron and Trivedi, 2013), 이분산성이 존재할 경우, 로그 선형 모형 추정치는 편향되기 쉽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Silva and Tenreiro, 2006). 따라서 모형 (3)에서는 거래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분산성에 보다 강건한 포아송 모형(Poisson pseudo-maximum-likelihood, PPML)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1년간 허가구역 내 아파트단지의 월 거래량은 약 7.3%(모형 1) 하락 또는 월 0.3건(모형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선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서울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이중차분법 모형을 사용하였으나, [그림 8]에서와 같이 거래량 측면에서 수요가 인접지역 또는 노도강 지역 등으로 이동한 통계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풍선효과가 일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9]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규제 시행 후 첫 6개월(2020. 6.~2020. 11.) 동안의 거래량 증가를, [그림 10]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규제 시행 후 다음 6개월(2020.

<표 6> 허가구역 거래량에 대한 직접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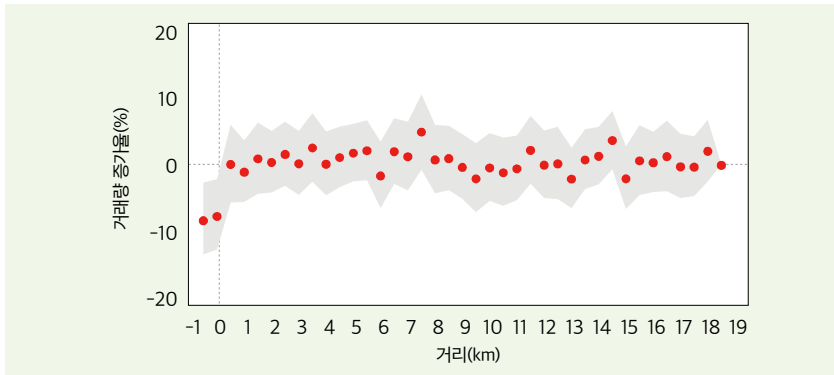
종속변수: ln(거래량+1)	모형 (1): OLS	모형 (2): OLS	모형 (3): PPML
종속변수:	ln(거래량+1)	거래량	거래량
<i>Post × Treated</i>	-0.0758*** (0.0285)	-0.303** (0.128)	-0.413*** (0.151)
연월 고정효과	YES	YES	YES
아파트단지 고정효과	YES	YES	YES
Observations	7,056	7,056	6,072
Adjusted R-squared	0.549	0.491	

주: 1. 괄호 안의 값은 아파트단지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임

2. *** p<0.01, ** p<0.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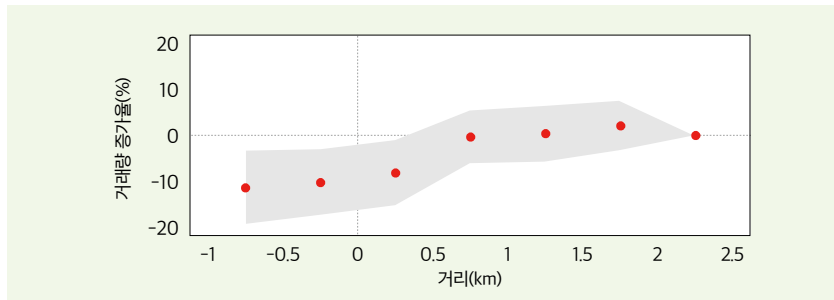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그림 8] 허가구역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거래량 상승률 변화: 서울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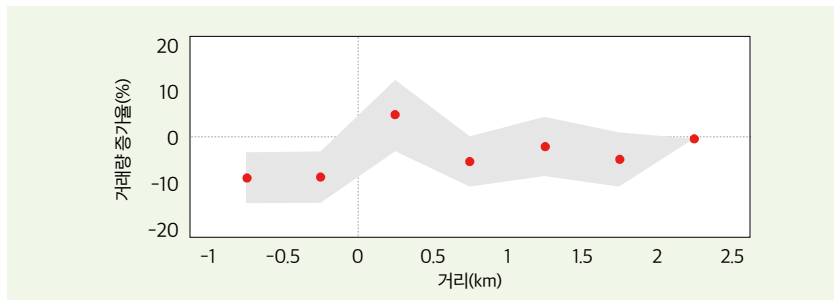
주: 그림에서 음영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그림 9] 규제 시행 후 첫 6개월(전년 동기 대비)
2019. 6.~2019. 11. 대비 2020. 6.~2020. 11.



주: 그림에서 음영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0] 규제 시행 후 다음 6개월(전년 동기 대비)
2019. 12.~2020. 5. 대비 2020. 12.~2021. 5.



주: 그림에서 음영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풍선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서울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이중차분법 모형을
사용하였으나, 거래량
측면에서 수요가
인접지역 또는
노도강 지역 등으로
이동한 통계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고의 분석 결과, 해당 지역에 대한 수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부동산의 가격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상승억제라는 정책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2021. 5.) 동안의 거래량 증가를 공간이중차분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 6개월 동안은 인접지역인 0~500m 지역에서도 거래량이 허가 구역 내부와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규제책은 해당 지역 투자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 대한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규제지역 밖에서도 투자자들이 거래에 소극적이게 하는 효과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림 10]과 같이 그 다음 6개월 동안 인접지역의 거래량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체효과인 경우와 첫 6개월 동안 거래되지 않고 쌓여있던 매물이 해소되면서 거래가 증가한 경우가 모두 가능하나, 본고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그 차이를 구분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은 관찰되지 않았다.

V. 요약 및 시사점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장소기반 및 사람기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2020년 6월 시행된 삼성동·청담동·대치동·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해당지역과 인접지역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토지거래허가제가 부동산시장 안정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자 노력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이중차분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에 대한 수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부동산의 가격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상승억제라는 정책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요가 대체지역으로 이동하여 인근지역 부동산가격을 부풀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통계적 증거는 관찰할 수 없었다. 오히려 수요가 인근 대체지역으로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의 공간의존성 또는 가격전이효과로 인해 인접지역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지역의 특정 아파트단지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상승하였을 가능성 역시 있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최소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강남지역에서는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풍선효과의 통계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부동산시장에서 장소기반 정책, 즉 특정지역에 대한 규제가 정책목표 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에서 주택구매자 또는 투자자의 행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규제지역과 인근 비규제지역의 대체관계가 강할 경우에는 규제로 인해 인근지역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가격전이 효과에 의해서 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기반 정책은 효과적인 시장안정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체관계가 높은 지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지역 부동산의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장소기반 정책이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체관계가 높은 지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을 경우 대체지역 부동산의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장소기반 정책이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보도자료, 2020. 6. 17.
- 김대원·유정석, 「주택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 분석」, 『도시행정학보』, 제27집 제3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4, pp. 191~212.
- 송경호·권성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서울 주택시장, 8.2대책, 9.13 대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0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양완진·김현정,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26집 제1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0, pp.

95~107.

정광호·김원수,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1호, 2005. pp. 287~308.

최종흠,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7.

Angrist, J. D., Imbens, G. W., and Rubin, D. B., “Identification of causal effects using instrumental variabl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1(434), 1996, pp. 444~455.

Blattman, C., D. P. Green, D. Ortega, and S. Tobón, “Place-Based Interventions at Scale: The Direct and Spillover Effects of Policing and City Services on Crime,”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9(4), 2021, pp. 2022~2051.

Braga, A. A., Turchan, B., Papachristos, A. V., and Hureau, D. M., “Hot spots policing of small geographic areas effects on crime,” *Campbell Systematic Reviews*, 15(3), 2019.

Cameron, A. C., and Trivedi, P. K., *Regression analysis of count data*, 2nd edition, Econometric Society Monograph No.53,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Silva, J. S., and Tenreyro, S., “The log of grav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4), 2006, pp. 641~658.

Sobel, M. E., “What Do Randomized Studies of Housing Mobility Demonstrate?,”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01(476), 2006, pp. 1398~1407.

Shiller, R.J., “Comovements in stock prices and comovements in dividends,” *The Journal of Finance*, 44(3), 1989, pp. 719~729.

Szumilo, N., “Prices of Peers: Identifying Endogenous Price Effects in the Housing Market,” *The Economic Journal*, 131(639), 2020, pp. 3041~3070.

Weisburd, D., and Telep, C. W., “Hot spots policing: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know,”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30(2), 2014, pp. 200~220.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¹⁾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chpark@kipf.re.kr)

I. 서론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소득을 보장하고 국가 전반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 정책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1988년 도입된 이래 연평균 8.6%의 인상률로 매년 상승하는 등 현재까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변수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인 가격하한선으로서, 노동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경제에 의도하지 않았던 비효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인상으로 고용자들의 노동수요량이 하락할 경우 경제 전반의 고용량이 시장 균형임금에 따른 균형고용량에 비해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고용 하락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 계층에서 실업이 발생하여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애초의 정책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의 도입 혹은 인상이 실제로 고용 하락으로 이어지는지 규명하는 실증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발견을 한 연구가 다수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 연구들도 존재한다.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최저임금제도를 분석하는 실증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와는 반대로 최저임금이 고용

1) 본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강연 연구원의 도움으로 작성함

에 뚜렷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가 다수인 한편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영향을 발견한 연구들 역시 존재한다.

이론적인 선명함에 비하여 실증연구 결과가 다소 비일관적으로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고용 외에 다른 부문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일정 부분 흡수하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 수준은 유지되는데 임금이 높아진다면 기업의 인건비 지출이 상승하고 이윤이 하락할 것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고용자 측에서 부담하게 된다. 또는 인건비 인상으로 최종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물가상승이 발생한다면 소비자들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나누어 받게 된다. 물론 위의 경로가 모두 작동하여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분담하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경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실증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본고에서는 최저임금의 잠재적 영향권 중에서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시장에 주목한다. 상가 임대료는 인건비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생산비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이윤이 크게 하락하면 기업은 더 이상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이렇게 퇴출되는 기업이 많아지면 상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시장임대료가 낮아질 수 있으며, 혹은 임대 기업의 퇴출을 우려한 임차인이 임대료를 낮춘다면 가시적인 퇴출 없이도 시장임대료가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완전경쟁시장의 제로이윤²⁾에 가까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시장 퇴출 압력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장 퇴출(압력)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요 하락을 견인하여 시장임대료를 낮춘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가설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임대인들이 낮은 임대료를 매개로 분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가 뚜렷하지 않게 나오는 이유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완하며, 또한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설계 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장
퇴출(압력)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요 하락을 견인하여
시장임대료를 낮춘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2) 기업의 진입이 자유로운 완전 경쟁 상태에서는 특정 기업이 초과이윤을 얻는 경우 유사 기업이 동일한 시장에 진입하여 초과이윤을 나누어 가짐. 따라서 시장균형에서 각 기업은 초과이윤을 얻지 못하는 제로이윤 상태에 놓이며, 이 경우 개별 기업은 이윤이 조금만 줄어도 시장에서 퇴출됨

한국의 최저임금은
2000년 중위 노동자
임금의 29% 수준에서
2020년 62% 수준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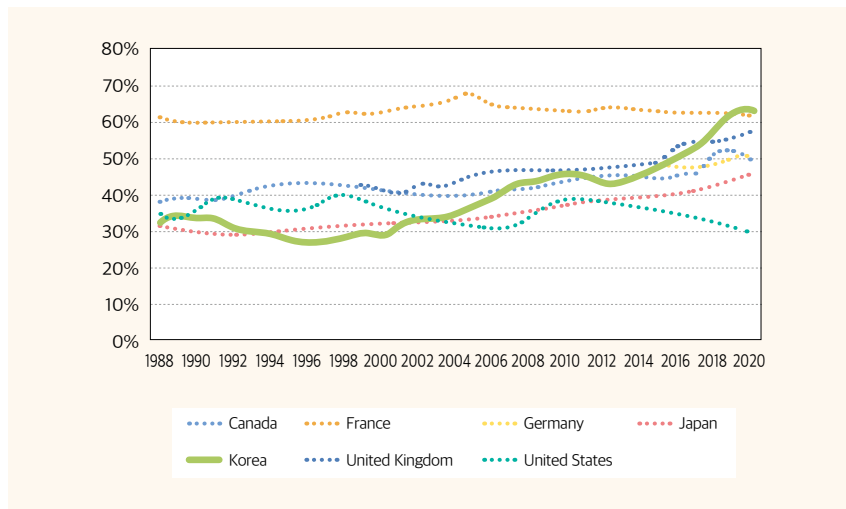
II. 연구 배경

1.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실시 근거가 명시되었으나 당시에는 경제 상황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운용되지는 않았고, 1988년에 신설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처음 도입되었다.³⁾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최저임금법」, 제1조)”으로 두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989년 600원, 2000년 1,600원, 2010년 4,110원 등을 거쳐 2022년 9,160원까지 연평균 8.6%의 인상률로 상승하였다.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중위임금에 비교한 [그림 1]을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2000년 중위 노동자 임금의 29% 수준에서 2020년 62% 수준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지난 30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그림 1] 주요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출처: OECD.Stat, “Minimum relative to average wages of full-time worker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IN2AVE#>(accessed March 28, 202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about/main.do>, 검색일자: 2022. 3. 28.

3년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50%에서 63% 수준으로 올랐는데, 이는 30%에서 40%, 40%에서 50%로의 상승에 각 10년 정도가 걸린 것에 비하여 빠른 변화이다. 한편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0년 EU 국가들의 적정 최저임금으로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제안하였는데, EU 권고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최저임금이 해당 수준에 도달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4), 5)}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2016년 이전에는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민·황승진(2018), 황희영·이종하(2019)는 각각 2006~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0~2016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특정 집단의 경우 악화시킴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평균임금 상승 및 소득분배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환웅·송경호(2021)는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통해 2018~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이 평균임금 상승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였지만 고용효과를 고려한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효과까지 분석하지는 않았다. 문지선(2020)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를 개선하였음을 보였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정민·황승진(2016), 강승복(2017), 윤상호(2018), 조경엽(2018), 김태훈(2019), 김대일·이정민(2019), 이환웅·송경호(2021), 유진성(2021) 등 다수의 국내 연구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인 반면, 홍민기(2018), 홍민기(2019), 황선웅(2019), 양준석·장윤섭(2019)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찾지 못하였다.

최저임금이 소득과 고용 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국내 논문은 제한적이다. 김규일·육승환(2020), 김희창(2020), 이환웅·송경호(2021) 등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오상봉(2015)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원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외의 최저임금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악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연구가 다수이다(<부표 1> 참조).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고용 이외 다른 분야에서 최저임금 상

최저임금이 소득과 고용에 미친 영향은 활발히 연구되었으나 고용 이외 다른 분야에서 최저임금 상승의 충격을 흡수하였는지 살펴보는 국내 연구는 제한적이다.

4)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dequate minimum wages in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20PC0682&from=EN> (accessed March 28, 2022)

5) 이에 따라 독일은 2022년 최저임금을 기존 €9.82에서 €12로 22% 인상하였으며, 비EU 국가인 영국 또한 2024년까지 최저임금을 중위임금의 2/3로 인상할 것을 목표로 삼음

한국부동산원에서 생산한 「**상업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바에 따르면 일부의 인식과 달리 2013년 이후 대체로 전국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가 점차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승의 충격을 흡수하였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Draca et al.(2011), Bell and Machin(2018), Luca and Luca(2019), Harasztosi and Lindner(2019) 등은 최저임금이 기업의 이윤 및 진입과 퇴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Allegretto and Reich(2018), Harasztosi and Lindner(2019), Renkin et al.(2020), Leung(2021) 등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최종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을 보였다. Portugal and Cardoso(2006), Dube et al.(2016), Azar et al.(2019) 등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제한적인 이유로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을 조명하였다. Riley and Bondibene(2017), Coviello et al.(2021) 등은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음을 발견하였다. 다만 최저임금의 충격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흡수하였는지 연구한 논문은 찾을 수 없었다.

2.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현황 및 관련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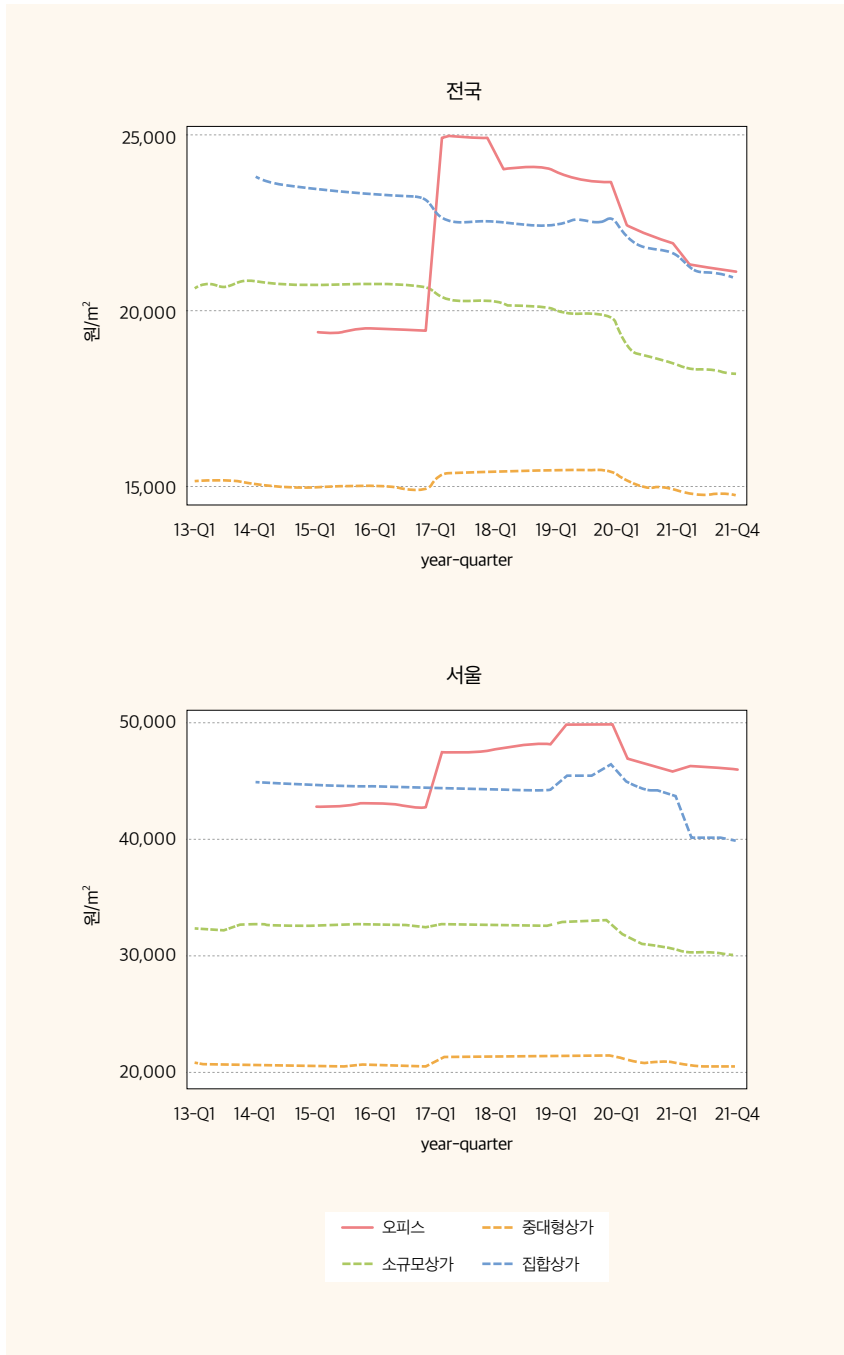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추이를 살펴보고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서 생산한 「상업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바에 따르면 일부의 인식과 달리 2013년 이후 대체로 전국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가 점차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참조). 이는 부동산 시장이 가장 활발한 서울의 자료에 국한해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오피스의 경우 2017년 임대료가 뛰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2017년과 2018년 표본 조정으로 표본수가 대폭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가 확대된 2020년 이후 임대료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현상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의 추이를 상권별로 살펴보면 비상권과 달리 종로·광화문·명동 및 강남대로 일대의 오피스 임대료가 2019년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⁶⁾ 따라서 임대료 부담 상승에 관한 일부의 인식은 이러한 특정 상권의 상황이 확대 해석된 결과일 수 있다. 한편 해당 상권들 역시 감염병 위기 기간에는 임대료 하락을 겪었다.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 등은 일찍부터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하락과 최저임금 인상의 관계에 주목했다. 예컨대 2018년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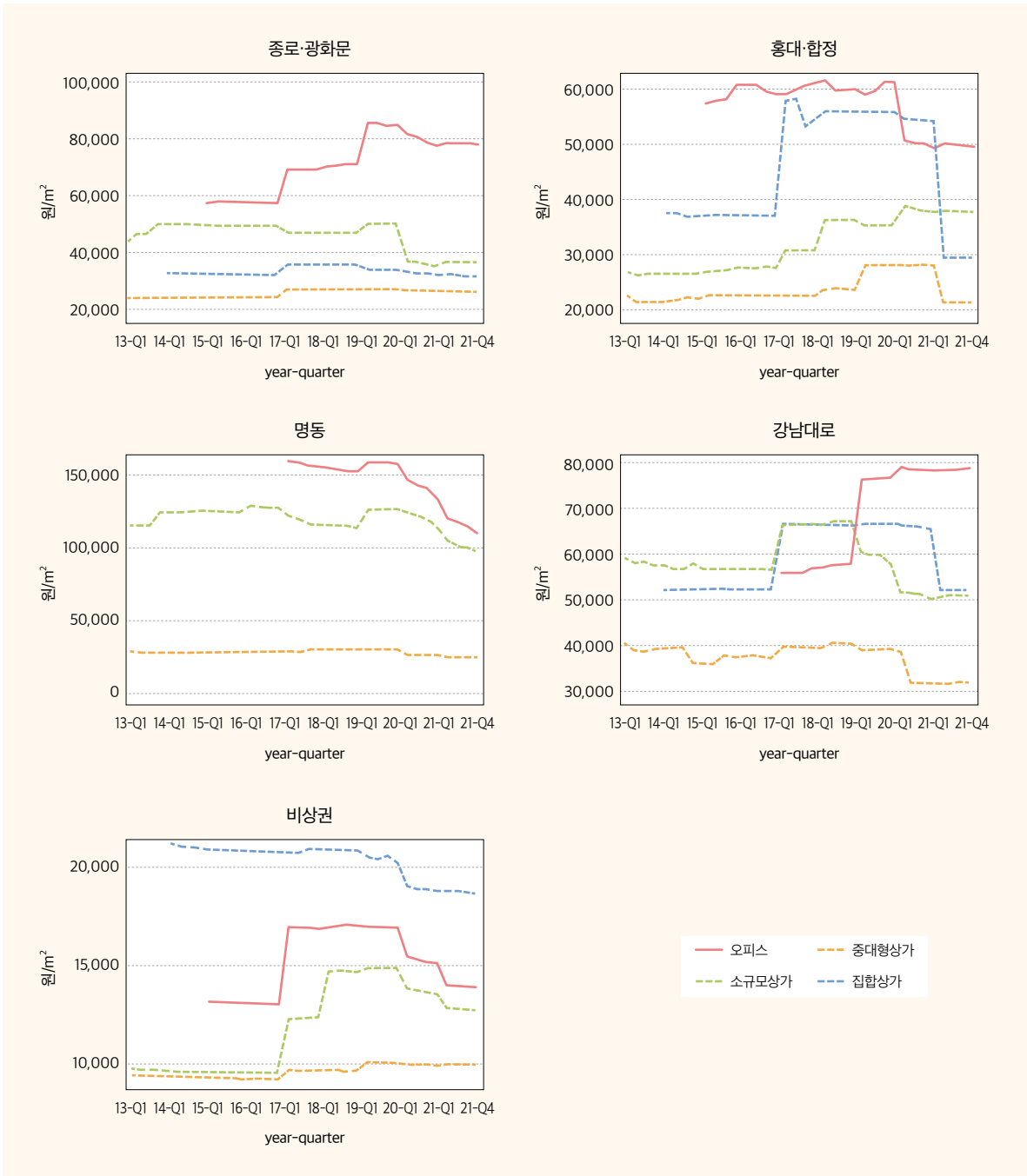
6) 대규모 표본 확대로 인해 2017년과 2018년의 추세는 해석하지 않음

[그림 2]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추이



2017년의 오피스 임대료 상승은 2017년과 2018년 표본 조정으로 표본수가 대폭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감염병 위기가 확대된 2020년 이후 임대료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그림 3] 상권별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추이



출처: 한국부동산원, 「상업용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정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7),8)}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임대료 부담 완화로 보완한다는 취지다. 당시 여당에서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본질적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비싼 임대료”⁹⁾라며 임대료 인하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비판적인 언론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공실률 증가에) 직격탄이 됐을 것”¹⁰⁾ “자영업자 지출비중 보니... 인건비가 25%, 임대료는 8%”¹¹⁾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를 한 축에 두고 비교하였다.

하지만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 최저임금 연구자들은 아직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고려한 바가 없으며 부동산 연구자들 역시 최저임금이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지 않았다. 우선 부동산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주거용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상업용 부동산을 연구한 경우에도 임대료 혹은 권리금을 결정짓는 물리적, 영업적 요인을 연구한 경우가 대다수이다.¹²⁾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를 소상공인의 생산비용 부담 측면에서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 조영식 외(2021)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감염병이 매출과 임대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2019년 대비 2020년 상가의 평균 매출은 줄고 임대료는 유지되어 상대적인 임대료 부담이 늘어났음을 보였다. 해당 연구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임대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감염병 위기 전과 후의 통계량을 단순 비교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심재희·김장호(2018)는 커피전문점의 원가를 분석하여 일반 커피전문점의 경우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5%인 반면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의 경우 인건비와 임대료의 비중이 각각 14%와 28%로 나타났음을 보였다. 이 연구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인건비 부담에 관한 단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지만 연구 범위와 방법론적 한계로 인하여 전반적인 소상공인 비용구조의 실태를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기에는 부족하다.

본고는 인건비와 임대료가 소상공인의 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하여 최저임금과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의 관계를 분석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두 연구 분야 사이의 간극을 메워 소상공인의 경제 여건과 관련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고는 인건비와 임대료가 소상공인의 생산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하여 최저임금과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의 관계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 여건과 관련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7) 기획재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보도자료, 2017. 7. 16.
- 8) 『한겨레』, 「‘최저임금 지원’ 상가 임대료 상승 잡고 10년 장사 보장한다」, 2017. 7. 17.,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3153.html, 검색일자: 2022. 3. 30.
- 9) 『한국경제신문』, 「민주 “소상공인 고통 본질, 최저임금 아닌 임대료”...3대과제 추진」, 2018. 1. 9.,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1090731Y>, 검색일자: 2022. 3. 30.
- 10) 『매일경제신문』, 「상가임대료도 뚝뚝, 꼬마빌딩 ‘직격탄’」, 2019. 1. 30., <https://www.mk.co.kr/news/realstate/view/2019/01/63901/>, 검색일자: 2022. 3. 30.
- 11) 『조선일보』, 「자영업자 지출비중 보니... 인건비가 25%, 임대료는 8%」, 2018. 1. 1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2/2018011200214.html, 검색일자: 2022. 3. 30.
- 12) 관련 선행연구 정리는 이호진(2020) 및 서영천(2021)을 참조

분석을 위해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원자료를 재가공하여
제공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한다.

Ⅲ. 데이터 및 연구방법론

1. 데이터

가.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분기 전국의 오피스·상가건물 약 7,000동(60,000호, 2019년 기준)을 조사하여 임대료, 수익률 등 부동산 시장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는 데 이용하는 자료다. 2002년 최초로 연간 임대사례조사를 실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를 단축하여 2013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는 현재의 조사 형태를 갖추었다.

본고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원자료를 재가공하여 제공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한다. 해당 데이터는 건물 종류에 따라 각각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는 2013년, 집합 상가는 2014년, 소규모 상가는 2015년부터의 자료를 제공하며 모두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의 상가 건물(동) 관련 변수로는 건물의 시군구단위 소재지, 자산가치, 최고층 및 최저층, 토지면적, 연면적, 준공연도, 지하철역/버스정류장/도로로부터의 거리 등이 있으며 각 임대 공간(호) 및 임차인 관련 변수로는 시장임대료(m²당, 월세), 계약임대료, 공실 여부, 층수, 임차인의 업종 소분류, 최초 계약개시년도 등이 있다. 이 중 시장임대료는 실제 해당 호의 임차인이 지급하고 있는 계약임대료가 아닌, 임차인 및 부동산 전문가 등을 조사하여 얻은 해당 임대 공간의 시세 자료이다. 계약임대료 변수는 제공되는 데이터에서 범주화되어 있어 구체적인 변동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에는 시장임대료 자료를 사용한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의 일반균형 효과로 균형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이므로 시세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연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한편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원자료는 건물 및 호 단위의 패널자료이지만 제공되는 마이크로데이터는 동호수 및 건물 관련 식별코드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반복횟단면자료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분석에는 동호수 관련 시간불변변수를 최대한 이용하여 세부적인 고정효과를 도입하거나 건물단위의 패널을 구축하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구체적인 방법론은 제2절 참조).

이 중 건물단위 패널의 경우 건물 관련 시간불변변수를 이용하여 각 연도별 데이터에서 고유한 건물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구축한다. 해당하는 시간불변변수는 시군구 단위 소재지, 건축연면적, 최고층, 최저층, 완공연도, 주차장 면적, 건물구조명, 용도지역명 등이다. 하지만 건물 식별 방식을 위해 데이터 제공자가 수치 변수들을 범주화하였기 때문에 해당 방법으로도 고유한 건물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식별 과정에서 75% 정도의 샘플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와 유사한 패널화 방법론은 오삼일·강달현(2019)과 최인혁·김정환(2022)이 사용한 바 있다. 한편 건물단위 패널을 이용한 분석의 경우 종속변수로 공실률 및 건물의 자산가치를 설정하였는데, 이 중 자산가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각 상가건물의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나. 지역별 고용조사

지역별 고용조사는 통계청에서 시군구 단위의 고용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23만여 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실시하는 설문조사다. 연구의 주된 설명변수인 최저임금 영향도(제2절 참조)를 계산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의 2013년 이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 인원의 임금, 직장의 시군구 단위 소재지, 업종 관련 정보 등을 이용하였다. 관측값 중 임금이 없는 경우나 0인 경우, 월간 노동시간이 없는 경우는 최저임금 영향도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방법론

가. 연구가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경로로 나타날 수 있다(그림 4 참조). 가장 직접적으로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가격하한선으로 작용하여 저임금 노동층의 고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나아가 생산비용(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거나(Draca et al., 2011; Harasztosi and Lindner, 2019; 이환웅·송경호, 2021) 최종 생산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Harasztosi and Lindner, 2019). 또한 비용 상승이 기업의 혁신을 자

**연구의 주된 설명변수인
최저임금 영향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지역별 고용조사의
2013년 이후 자료를
사용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한계 기업의 퇴출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4]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

$$\Pi = pY - wL - rK - lN$$

최저임금 상승($w \uparrow$)의 영향

- $L \downarrow$ 고용 하락
- $\Pi \downarrow$ 기업 이윤 하락
- $p \uparrow$ 생산품 가격 상승
- $Y \uparrow$ 생산성 증가로 인한 생산량 증가
- $\Pi \downarrow \Rightarrow N, l \downarrow$ 기업 퇴출 및 부동산 수요 하락

주: 각 항목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제 변수들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으로, 순서가 연쇄 작용을 의미하지는 않음

출처: 저자 작성

극하여 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는지 분석한 연구(Draca et al., 2011, 김규일·육승환, 2018; 이환웅·송경호, 2021)도 존재하며 특히 Fan et al.(2021)은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의 로봇 도입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Luca and Luca(2019)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이윤 하락이 한계기업 퇴출로도 이어짐을 보였다.

본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한계기업의 퇴출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한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이윤 하락으로 기업이 더 이상 기존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에서 퇴출이 발생하는데, 이때 기존 기업보다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업이 해당 상가에 입점한다면 기존 임대료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기업과 잠재적인 진입 기업 사이에 생산성 격차가 크지 않은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업 역시 기존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상가의 시장임대료가 하락하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아는 상가의 임대인이 굳이 기존 기업이 퇴출되어 새로운 임차인 계약 시점까지 상가를 공실로 유지하는 등의 비용을 감수하지 않고, 기존 기업과의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계약을 유지할 유인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기업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퇴출 압력만으로도 시장임대료가 낮아지게 된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시장 퇴출 압력이 크고 기업 간 생산성 격차

가 크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이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기업보다 높을 수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하락을 야기한다는 가설을 검정한다. 또한 실질적인 퇴출이 이루어지고 공실률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임대료가 떨어지는 경로와 퇴출 압력만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추는 경로가 모두 가능하므로 공실률 분석을 통해 작동 경로를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한편 생산요소 중 노동력과 영업공간이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동수요 하락이 부동산 수요 하락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즉 기업들이 매장에 고용하는 인원을 줄임으로써 영업공간이 큰 매장에 대한 수요 또한 줄어들 수 있는데, 이 경로에 대한 분석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나. 최저임금 영향도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된 경우와 적용되지 않은 경우의 상가 임대료를 비교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가 불가하다. 따라서 대안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장과 적게 받는 사업장을 비교한다. 이미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것이며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특정 사업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수치화한 지표가 최저임금 영향도이며 실증분석에서는 최저임금 영향도가 높은 사업장과 낮은 사업장을 비교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한편 최저임금 영향도가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이 임대료 분석을 위해서 적절한 비교 대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 영향도가 높은 기업이 몰려있는 지역이 우연히 임대료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지역일 경우 최저임금 영향도가 높을수록 임대료가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지만 두 변수가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최저임금 영향도가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이 서로 상반 추세를 보이는 지역에 자리하기 때문에 임대료 분석을 위한 적절한 비교대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사례의 지역과 같은 제3의 변수의 영향을 최소

**이에 본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하락을
야기한다는 가설을
검정한다.**

**최저임금 영향도의
계산에 활용한
필요액 지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을
주기 위해 추가 상승한
금액을 각 임금노동자별로
계산하여 업종 및
지역별로 평균한 값이다.**

화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최저임금 영향도를 연도,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및 지역(시군구)별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론은 계량 모형 소절에 상술한다.

최저임금 영향도의 계산은 조희평·고창수(2021)에서 도입한 필요액 지수에 기반하였다. 필요액 지수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을 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상승한 금액을 각 임금노동자별로 계산하고 이를 업종 및 지역별로 평균한 값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8,0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랐을 경우 시간당 7,000원의 소득을 얻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액수는 시간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 상승하고, 시급 8,200원을 버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필요액은 시간당 0원에서 300원으로 300원 상승한다. 시간당 필요액인 500원과 300원에 각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을 곱한 액수가 두 노동자에 해당하는 최종 필요액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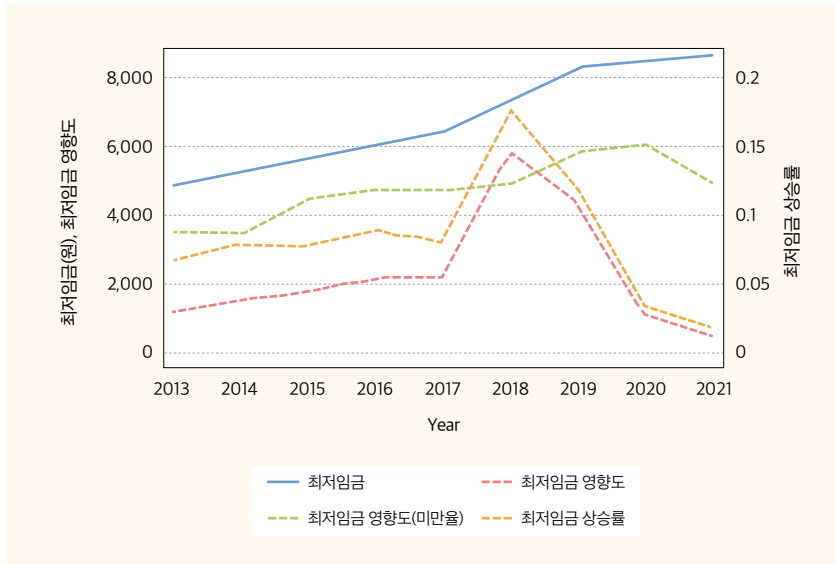
조희평·고창수(2021)에 따르면 이렇게 필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영향도가 기존 연구의 최저임금 미만율¹³⁾을 기반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영향도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더 잘 근사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해당 연구의 발견을 본고에서 사용한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를 보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 액수를, 필요액 기반 최저임금 영향도는 최저임금 상승률을 잘 근사함을 볼 수 있다. 분석에서는 연구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미만율에 기반한 최저임금 영향도를 이용한 결과 또한 제시한다.

이렇게 계산한 최저임금 영향도를 연도, 업종 및 지역에 따라 「상업용 마이크로데이터」상의 각 임대 공간(호)에 할당한다. 즉 각 호의 현재 임차인의 업종, 해당 상가의 지역 및 해당 연도에 따라 호별 최저임금 영향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물론 시장임대료에는 기존 임차인의 업종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영향도가 아닌 잠재적 진입 기업의 업종의 정보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하는 업종이 해당 호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업종이라고 가정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기존 임차인이 퇴출되고 경쟁력이 더 낮은 새로운 업종이 진입할 경우 낮은 생산성을 반영하여 시장임대료가 하락하므로 여전히 기존 업종의 최저임금 영향도가 임대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상업용 마이크로데이터」상의 특정 연도, 업종 및 지역에 해당하는 임금

13) 최저임금 미만율에 기반한 최저임금 영향도는 업종 및 지역별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전년도에 받은 노동자의 비율로 계산함

[그림 5] 최저임금 영향도와 최저임금 미만율 비교



주: 최저임금 영향도는 시군구 및 업종별 노동자 임금에 따라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수치화한 지표임(제3장 제2절 나. 참조)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노동자가 「지역별 고용조사」 데이터에 없어서 최저임금 영향도를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값을 분석 샘플에서 탈락시키는데, 이러한 경우는 전체 샘플의 1% 미만이다.

다음의 <표 1>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2018~2019년의 시·도 및 산업별 최저임금 영향도를 각각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순으로 높았고 서울, 대전, 경기도, 울산, 제주도 순으로 낮았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업과 도소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예술 및 스포츠 분야 서비스업 종사자의 최저임금 영향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업, 전기, 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의 최저임금 영향도는 낮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시장의 경쟁이 활발하고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은 업종의 최저임금 영향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연구 가설의 전제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기업 퇴출압력의 상승과 일치한다.

[그림 5]를 보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 액수를,
필요액 기반
최저임금 영향도는
최저임금 상승률을 잘
근사함을 볼 수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시장의 경쟁이 활발하고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은
업종의 최저임금 영향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연구 가설의 전제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기업 퇴출압력의 상승과
일치한다.

<표 1> 2018~2019년 시·도 및 산업별 최저임금 영향도

시·도	최저임금 영향도	산업(대분류)	최저임금 영향도
경상북도	7471	숙박 및 음식점업	9445
강원도	725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451
전라남도	7001	부동산업	7740
전라북도	659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552
경상남도	65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057
인천광역시	6277	도매 및 소매업	5003
대구광역시	6204	농업, 임업 및 어업	3077
부산광역시	6088	제조업	2708
충청북도	5978	운수 및 창고업	2063
광주광역시	595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69
충청남도	5753	건설업	1667
제주특별자치도	5520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414
울산광역시	5449	교육 서비스업	1412
경기도	535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254
대전광역시	457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03
서울특별시	3916	정보통신업	887
		금융 및 보험업	886
		전기, 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09
		광업	183
		국제 및 외국기관	0

주: 최저임금 영향도는 시군구 및 업종별 노동자 임금에 따라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수치화한 지표임(제3장 제2절 나. 참조)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계량 모형

앞 소절에서 설명한대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변화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영향도와 임대료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개별 업종의 연도별 임대료 및 각 지역의 연도별 임대료를 통제한다.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Log}r_{it} = \beta MW_{rdt} + X_i + \lambda_{rto} + \mu_{dto} + \nu_{roascfp} + \epsilon_{it} \quad \text{식 (1)}$$

이때 r_{it} 는 호(i)와 연도(t)별 시장임대료, MW_{rdt} 는 표준화한 시군구(r), 업종(d), 연도(t)별 최저임금 영향도, X_i 는 상가의 버스 및 지하철역과의 거리, λ_{rto} 는 시군구(r)×연도(t)×상가타입(o)별 고정효과, μ_{dto} 는 업종(d)×연도(t)×상가타입(o)별 고정효과, $\nu_{roascfp}$ 는 시군구(r)×상가타입(o)×건물연면적(a)×용도지역명(s)×건축연도(c)×층수(f)×호전용면적(p)별 고정효과, ϵ_{it} 는 시군구 단위 군집표준오차를 뜻한다. 이 중 $\nu_{roascfp}$ 는 데이터에서 최대한 개별 호를 식별하기 위하여 호 단위 시간불변 변수들을 모두 교차한 고정효과로, 호별 식별코드를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본 모형은 이원고정효과 모형에 기반하고 있으나 호별 고정효과를 호 단위 시간불변 변수의 교차항의 고정효과로 대체하고 연도별 고정효과를 연도와 시군구별, 연도와 업종별 고정효과로 세분화한 점이 특징이다. 시군구와 업종의 연도별 임대료를 각각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연도에 각 지역 내에서만 특별히 나타나는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도의 차이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인과관계 성립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은 각 연도에 특정 업종이 특정 시군구에서만 높거나 낮은 최저임금 영향도를 보이는 경향과 해당 호수의 임대료 변화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제3의 변수가 개입할 여지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점은 고정효과 모형의 한계이며, 최저임금의 지역별 산업별 변화가 없어 최저임금 영향도를 계산하여 최저임금의 효과를 추정해야 하는 한국의 제도적 특징으로 인한 한계 또한 존재한다. 다만 지역과 산업의 연도별 효과 및 각 호의 특수성을 통제한 만큼, 본 모형은 주어진 데이터하에서 인과관계 수립에 영향을 주는 자명한 경로들을 최대한 차단한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분석 기간인 2013-2021년에 코로나19 감염병 유행(2020년)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2018년) 등 노동자의 임금과 상가 임대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어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연도를 포함한 고정효과 모형이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한 통제하고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지역 내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도의 차이와 해당 사건들의 효과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따라서 2020년 이후와 2018년 이후를 각각 제외한 표본으로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여 분석의 강건성을 검증한다.

다음으로 건물단위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종속변수로 건물의 자산가치

식 (1)은 지역과 산업의 연도별 효과 및 각 호의 특수성을 통제한 만큼, 주어진 데이터하에서 인과관계 수립에 영향을 주는 자명한 경로들을 최대한 차단한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표 2>의 (1)열에서
상가 임대공간의
최저임금 영향도가
1표준편차만큼 상승할 때
해당 호의 시장임대료는
1%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및 공실률을 설정한다. 설명변수는 호 단위 최저임금 영향도를 건물 단위에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건물 단위 최저임금 영향도로서, 계산에 이용한 가중치는
각 호의 임대료가 건물 전체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건물단위 패널 고
정효과 모형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_{bt} = \beta MW_{rdt} + \lambda_{rto} + \mu_{dto} + \nu_b + \epsilon_{bt} \quad \text{식 (2)}$$

이때 y_{bt} 는 건물(b)과 연도(t)별 로그 자산가치 및 공실률, MW_{rdt} 는 표준화
한 시군구(r), 업종(d), 연도(t)별 최저임금 영향도, λ_{rto} 는 시군구(r)×연도(t)×상
가타입(o)별 고정효과, μ_{dto} 는 업종(d)×연도(t)×상가타입(o)별 고정효과, ν_b 는
건물(b)별 고정효과, ϵ_{it} 는 시군구 단위 군집표준오차를 뜻한다. 본 모형의 식별
가정은 호 단위 식별을 위한 교차항을 건물단위 고정효과로 대치한 점 외에는
식 (1)의 고정효과 모형의 식별 가정과 동일하다.

IV. 연구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상가 각 호의 시장임대료에 미친 영향을 식 (1)에 따라 계량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한다. 표의 (1)~(3)열의 결과는 설명변수로 필요액
지수 기반 최저임금 영향도를 설정한 모형을 따르며 (4)~(6)열의 결과는 설명변
수로 최저임금 미만율에 기반한 최저임금 영향도를 설정한 모형을 따른다. 이
중 (1), (4)열은 전체 기간 샘플(2013~2021년)이며 (2), (5)열은 코로나 기간 제외
샘플(2013~2019년) 그리고 (3), (6)열은 2018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기간 제외 샘플(2013~2017년)의 분석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본 분석에서 설명변수인 최저임금 영향도는 표준화하고 종속변수인 시장임대
료는 로그화하였으므로, 추정 계수 β 는 최저임금 영향도가 1표준편차 상승할 때
시장임대료는 $e^\beta - 1 \approx 100 \times \beta\%$ 만큼 변화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본고에
서 선호하는 모형인 (1)열의 결과를 해석하면, 상가 개별 호의 최저임금 영향도
가 1표준편차 높아질 때 해당 호의 시장임대료는 1% 낮아진다. 분석 샘플의 평
균 임대료는 월 370만원이므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1표준편차 높게 받은 업장의

월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37,000원 하락하였다. 해당 추정 계수는 (2)~(6)열의 강건성 분석에서도 -0.01에서 -0.02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6)열을 제외한 추정치는 모두 5% 또는 10%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상의 관측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를 낮추었다는 결과를 통계적으로 강건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데이터를 제외할수록 추정치가 커지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건물단위 패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건물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식 (2)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한다. 해당 표의 해석 방법은 <표 2>의 해석과 동일하다. (1)열의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도가 1표준편차 증가할 때 건물의 자산가치는 1% 떨어진다. 이 수치는 호 단위 반복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표 2>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최저임금 영향도가 시장임대료 및 건물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데이터 구축 방법에 상관없이 강건하게 추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의 (1)열에 따르면 건물의 자산가치 역시 최저임금 영향도가 1표준편차 증가할 때 1%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최저임금 영향도가 시장임대료에 미친 영향

설명변수	종속변수					
	로그 시장임대료					
	(1)	(2)	(3)	(4)	(5)	(6)
최저임금 영향도	-0.0109** (0.00477)	-0.0114** (0.00513)	-0.0253* (0.0129)			
최저임금 영향도(미만율 기반)				-0.00895** (0.00424)	-0.00989* (0.00554)	-0.0131 (0.00841)
표본크기	345619	251507	164488	345619	251507	164488
R2	0.835	0.837	0.839	0.835	0.837	0.839
분석기간	2013~2021	2013~2019	2013~2017	2013~2021	2013~2019	2013~2017
고정효과						
산업×연도×상가타입	0	0	0	0	0	0
시군구×연도×상가타입	0	0	0	0	0	0
호(號) 관련 시간불변 변수 교차	0	0	0	0	0	0

주: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및 한국부동산원, 「상업용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 최저임금 영향도가 건물의 자산가치에 미친 영향

설명변수	종속변수					
	로그 자산가치					
	(1)	(2)	(3)	(4)	(5)	(6)
최저임금 영향도	-0.00987** (0.00479)	-0.0119** (0.00571)	-0.00826 (0.0130)			
최저임금 영향도(미만을 기반)				-0.00780 (0.00531)	-0.0143** (0.00578)	-0.00603 (0.00755)
표본크기	28151	16119	11114	28151	16119	11114
R2	0.978	0.975	0.975	0.978	0.975	0.975
분석기간	2013~2021	2013~2019	2013~2017	2013~2021	2013~2019	2013~2017
고정효과						
산업×연도×상가타입	0	0	0	0	0	0
시군구×연도×상가타입	0	0	0	0	0	0
건물	0	0	0	0	0	0

주: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및 한국부동산원, 「상업용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4> 최저임금 영향도가 건물의 공실률에 미친 영향

설명변수	종속변수					
	공실률					
	(1)	(2)	(3)	(4)	(5)	(6)
최저임금 영향도	0.00120 (0.00120)	0.000654 (0.00196)	-0.00139 (0.00224)			
최저임금 영향도(미만을 기반)				-0.000110 (0.00101)	-0.000256 (0.00121)	-0.000473 (0.00114)
표본크기	32075	18335	12499	32070	18335	12499
R2	0.484	0.480	0.480	0.484	0.480	0.480
분석기간	2013~2021	2013~2019	2013~2017	2013~2021	2013~2019	2013~2017
고정효과						
산업×연도×상가타입	0	0	0	0	0	0
시군구×연도×상가타입	0	0	0	0	0	0
건물	0	0	0	0	0	0

주: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및 한국부동산원, 「상업용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표 4>에는 식 (2)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건물의 공실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이 공실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앞서 제Ⅲ장 제2절에서 연구 가설을 도출할 때에 기존 기업이 퇴출되지 않으면서 임대료가 낮아지는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는데, 본 회귀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추정치가 일관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이 임대료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엄밀한 분석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이 공실률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 해 전의 최저임금 영향도가 공실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역시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V. 결론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두고 정치, 언론 및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심에는 주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은 고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윤, 최종 생산품의 가격, 기업의 생산 기술 변화 등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저임금이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이에 따라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만큼 최저임금과 관련한 분석은 각 부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흡수할 가능성을 가늠해보았다. 상가 임대료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만큼이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시장 퇴출 압력으로 상가 임대료가 하락한다면, 노동자 및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었던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영향을 임대업자들이 일부 분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연구 결과, 2013년에서 2021년 사이의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추었음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상가 임대공간

**연구 결과,
2013년에서
2021년 사이의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추었음을 발견하였다.**

**본고의 결과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
부동산 임대료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추후 소상공인 혹은
저임금 노동자 관련
정책 설계 시 정책 변수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세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 최저임금 영향도가 1표준편차만큼 상승할 때 해당 호수의 시장임대료는 1%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인건비 상승의 충격이 컸던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를 통해 그 충격을 다소 완화하였고 대신 그 부담의 일부가 임대업자에게 전가되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다소간 흡수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귀착효과의 수준은 추후 구조모형 등을 통하여 보완하여 연구할 대상이다.

한편 본고의 결과는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 부동산 임대료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건비 인상과 같은 사업장 퇴출 압력이 상가 임대료 하락을 유도한다면 반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상가 임대료 상승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대업자가 정책 효과를 일부 흡수하게 된다. 물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실제로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또 다른 실증연구를 통하여 분석해야 할 주제이다. 추후 소상공인 혹은 저임금 노동자 관련 정책 설계 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연구 등을 통하여 정책 변수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세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승복, 「도구변수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노동경제논집』, 제40권 제3호, 2017, pp. 105~131.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1조.

기획재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보도자료, 2017. 7. 16.

김규일·육승환,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경제분석』, 제26권 제1호, 2020, pp. 1~33.

김대일·이정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경제학연구』, 제67권 제4호, 2019, pp. 5~35.

- 김태훈,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효과」, 『노동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2019, pp. 135~174.
- 김희창,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33권 제6호, 2020, pp. 2015~2043.
- 문지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계층별 임금 상승 효과」, 『경제와 사회』, 제128권, 2020, pp. 266~311.
- 서영천,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상가 통상임대료를 중심으로 -」, 『부동산경영』, 제24권, 2021, pp. 33~49.
- 심재희·김장호, 「한국과 중국의 프랜차이즈커피 원가구성 비교 연구」, 『인문사회 21』, 제9권 제1호, 2018, pp. 161~171.
- 양준석·장윤섭,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 미친 영향: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67권 제4호, 2019, pp. 37~67.
- 오상봉,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기업의 원가 부담 증가」, 『노동리뷰』, 제122호, 한국노동연구원, 2015. 5.
- 오삼일·강달현, 「노동이동(worker flows) 분석: 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 『조사통계월보』, 제73권 제6호, 2019, pp. 16~34.
- 유진성,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영향 분석과 시사점」, 『규제연구』, 제30권 제1호, 2021, pp. 9~28.
- 윤상호,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한국경제연구원, 2018.
- 이정민·황승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제39권 제2호, 2016, pp. 1~34.
- _____,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제24권 제2호, 2018, pp. 1~28.
- 이호진, 「서울시 상가 권리금과 임대료 결정요인의 비교연구」, 『주거환경』, 제18권 제2호, 2020, pp. 87~97.
- 이환웅·송경호, 『최저임금이 기업행태에 미치는 효과분석 및 일자리 재정정책

- 에의 함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조경엽,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KERI 브리프, 한국경제연구원, 2018.
- 조영식·김진우·김승희, 「코로나 팬데믹이 상가 매출과 임대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주거환경』, 제19권 제3호, 2021, pp. 361~381.
- 조희평·고창수, 『임금상승이 노인의 노동시장과 공적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최인혁·김정환,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방향 연구: 노동시장 내 상태의존성 추정을 기반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 홍민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노동리뷰』, 제158호, 한국노동연구원, 2018. 5.
- _____,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추정」, 『경제발전연구』, 제25권 제2호, 2019, pp. 1~28.
- 황선웅,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초래했는가?: 비판적 재검토」, 『경제발전연구』, 제25권 제2호, 2019, pp. 29~55.
- 황희영·이종하,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28권 제3호, 2019, pp. 175~205.
- Adam-Smith, D., G. Norris, and S. Williams, “The Impact of the National Minimum Wage in the hospitality sector: A case study investigation,” Low Pay Commission, 2001.
- Ahlfeldt, G., D. Roth, and T. Seidel, “The regional effects of a national minimum wage,” Working Paper Series 6924, Center for Economic Studies and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2018.

- Aitken, A., P. Dolton, and R. Riley,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Living Wage on employment, hours and wages*, Discussion Papers 501,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2019.
- Allegretto S. and M. Reich, “Are local minimum wages absorbed by price increases? Estimates from internet-based restaurant menus,” *ILR Review*, 71(1), 2018, pp. 35~63.
- Azar, J., E. Huet-Vaughn, I. Marinescu, B. Taska, and T. von Wachter, “Minimum Wage Employment Effects and Labor Market Concentration,” *NBER Working paper*, NO. 26101, 2019.
- Bailey, M., J. DiNardo, and B. Stuart, “The economic impact of a high national minimum wage: Evidence from the 1966 Fair Labour Standards Act,” *Journal of Labor Economics*, 39(S2), 2021.
- Bell, B. and S. Machin, “Minimum wages and firm value,” *Journal of Labor Economics*, 36(1), 2018, pp. 159~195.
- Belman, D. and P. Wolfson, “The new minimum wage research,” *Employment Research*, 21(2), 2014, pp. 4~6.
- Bossler, M. and H. Gerner, “Employment effects of the new German minimum wage: Evidence from establishment-level micro data,” *ILR Review*, 73(5), 2020, pp. 1070~1094.
- Cengiz, D., A. Dube, A. Lindner, and B. Zipperer, “The effect of minimum wages on low-wage jobs: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using a bunching estimator,”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4(3), 2019, pp. 1405~1454.
- Coviello, D., E. Deserranno, and N. Persico, “Minimum wage and individual worker productivity: Evidence from a large US retailer,” Working Paper, 2021.
- Derenoncourt, E. and C. Montialoux, “Minimum wage and racial inequali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21, pp. 169~228.

- Dickens, R., R. Riley, and D. Wilkinson, *The employment and hours of work effects changing National Minimum Wage*, Low Pay Commission, 2009.
- _____, “A re-examination of the impact of the UK National Minimum Wage on employment,” *Economica*, 82(328), 2015, pp. 841-864.
- Dolton, P., C. Rosazza-Bondibene, and M. Stops, “Identifying the employment effect of invoking and changing the minimum wage: A spatial analysis of the UK,” *Labour Economics*, 37(C), 2015, pp. 54-76.
- Doucouliagos, H. and T. Stanley, “Publication selection bias in minimum-wage research? A meta-regression analysis,” *The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7(2), 2009, pp. 406-428.
- Draca, M., S. Machin, and J. Van Reenen, “Minimum wages and firm profitability,”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3(1), 2011, pp. 129-151.
- Druker, J., C. Stanworth, and G. White, *Impact of the National Minimum Wage on the hairdressing sector*, Low Pay Commission, 2002.
- Dube, A., *Impacts of minimum wages: review of the international evidence*, Independent Report, 2019a.
- _____, “Minimum Wages and the Distribution of Family Income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11, 2019b, pp. 268-304.
- Dube, A., T. W. Lester, and M. Reich, “Minimum wage shocks, employment flows, and labor market friction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4(3), 2016, pp. 663-704.
- Dustmann, C., A. Lindner, U. Schönberg, M. Umkehrer, and P. vom Berge, “Reallocation effects of the minimum wage: Evidence from German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7(1), 2022, pp. 267-328.
- Fan, H., Y. Hu, and L. Tang, “Labor costs and the adoption of robos in China,”

-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86, 2021, pp. 608~631.
- Georgiadis, A., “Is the minimum wage efficient? Evidence of the effects of the UK National Minimum Wage in the residential care homes sector,” Working Paper Series 06/160, Centre for Market and Public Organisation, 2006.
- Godoy, A. and M. Reich, “Are minimum wage effects greater in low-wage areas?,” *Industrial Relations*, 60(1), 2021, pp. 36~83.
- Harasztosi, P. and A. Lindner, “Who pays for the minimum wag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9(8), 2019, pp. 2693~2727.
- Heyes, J. and A. Gray, “Homeworkers and the National Minimum Wage: Evidence from the textiles and clothing industry,”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5(4), 2001, pp. 863~873.
- Jardim, E., M. Long, R. Plotnick, E. Van Inwegen, J. Vigdor, and H. Wething, “Minimum wage increases and individual employment trajectories,” *NBER Working paper*, NO. 25182, 2018.
- _____, “Minimum wage increases and low-wage employment: Evidence from Seattle,”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4(2), 2022, pp. 263~314.
- Leung, J., “Minimum wage and real wage inequality: Evidence from pass-through to retail pric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03(4), 2021, pp. 754~769.
- Low Pay Commission, *National Minimum Wage: Low Pay Commission autumn 2016 report*, Low Pay Commission, 2016.
- Luca, D. L. and M. Luca, “Survival of the fittest: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on firm exit,” *NBER Working paper*, NO. 25806, 2019.
- Lucas, R. and M. Langlois, “Anticipating and adjusting to the introduction

- of the National Minimum Wage in the hospitality and clothing industries,” *Policy Studies*, 24(1), 2003, pp. 33-50.
- Machin, S., A. Manning, and L. Rahman, “Where the minimum wage bites hard: Introduction of minimum wages to a low wage sector,”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1), 2003, pp. 154-180.
- Machin, S., and J. Wilson, “Minimum wages in a low-wage labour market: Care homes in the UK,” *Economic Journal*, 114(494), 2004, pp. C102-C109.
- Manning, A., “The elusive employment effect of the minimum wag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5(1), 2021, pp. 3-26.
- Monras, J., “Minimum wages and spatial equilibrium: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Labor Economics*, 37(3), 2019, pp. 853-904.
- Nadler, C., S. Allegretto, A. Godoy, and M. Reich, “Are local minimum wages too high?” Working Paper 102-19, Institute for Research on Labor and Employment, 2019.
- Neumark, D., M. Schweitzer, and W. Wascher, “Minimum wage effects throughout the wage distribution,” *Journal of Human Resources*, 39(2), 2004, pp. 425-450.
- Portugal, P. and A. R. Cardoso, “Disentangling the minimum wage puzzle: an analysis of worker accessions and separation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4(5), 2006, pp. 988-1013.
- Reich, M., S. Allegretto, and A. Godoy, “Seattle’s minimum wage experience 2015-16,” CWEB Policy Brief, Centre on Wage and Employment dynamics, 2017.
- Renkin, T., C. Montialoux, and M. Siegenthaler, “The pass-through of minimum wages into US retail prices: evidence from supermarket scanner data,”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020, pp. 1-99.
- Riley, R. and C. Bondibene, “Raising the standard: Minimum wages and

firm productivity,” *Labour Economics*, 44(C), 2017, pp. 27~50.

Stewart, M.,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National Minimum Wage,” *Economic Journal*, 114, 2004, pp. C110~C116.

『매일경제신문』, 「상가임대료도 뚝뚝, 꼬마빌딩 ‘직격탄’」, 2019. 1. 30.,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1/63901/>, 검색일자: 2022. 3. 30.

『조선일보』, 「자영업자 지출비중 보니… 인건비가 25%, 임대료는 8%」, 2018. 1. 1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2/2018011200214.html, 검색일자: 2022. 3. 30.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about/main.do>, 검색일자: 2022. 3. 28.

『한겨레』, 「‘최저임금 지원’ 상가 임대료 상승 잡고 10년 장사 보장한다」, 2017. 7. 17.,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3153.html, 검색일자: 2022. 3. 30.

『한국경제신문』, 「민주 “소상공인 고통 본질, 최저임금 아닌 임대료”...3대 과제 추진」, 2018. 1. 9.,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1090731Y>, 검색일자: 2022. 3. 30.

한국부동산원, 「상업용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dequate minimum wages in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20PC0682&from=EN>(accessed March 28, 2022)

OECD.Stat, “Minimum relative to average wages of full-time worker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IN2AVE#>(accessed March 28, 2022)

<부표 1>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 정리

국가	저자	임금에 미친 영향	고용에 미친 영향	특징
미국	Belman and Wolfson(2014)	인금 없음	↔	- 최저임금 효과가 최저임금 근로자 그룹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23개 선행연구들을 조사함 - 23개 선행연구들의 최저임금 고용탄력성(MWE)은 양수와 음수 모두 존재했지만, 0에 가깝게 수렴했으며, 중위값은 -0.05. - 최저임금 인상이 통계적으로 혹은 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한 고용상실을 초래하지 않다고 결론
미국	Doucouliagos and Stanley(2009)	인금 없음	↔	- meta-analysis 수행, 최저임금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결론 - 연구들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쪽으로 biased)에 over-publish하는 특징 발견
미국	Cengiz et al.(2019)	↑	↔	- 현재까지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저임금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일 잘 보여줌 - 전체 임금 상승의 40%가 임금 파급효과로 인한 것
미국	Dube(2019b)	인금 없음	↔	- 전체 임금 상승의 50% 이상이 파급효과로 인한 것
미국	Monras(2019)	인금 없음	↓	- 강한 고용 동향(strong positive pre-existing employment trend) 주장 - 그러나, 연구의 가정이었던 신형 트렌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연구에서 사용했던 임금추정치가 너무 적어 연구 결과가 충분히 정확한지 알 수 없음
미국	Neumark et al.(2004)	인금 없음	인금 없음	- 최저임금 기준 10% 이하로 받는 노동자 그룹을 대상으로 단기(1년) 효과 조사
미국	Bailey et al.(2021)	↑	↔	- 1966 expansion of Fair Labor Standards Act(FLSA)의 효과를 분석
미국	Derenoncourt and Montieloux(2019)	↑	↔	- 1966 expansion of Fair Labor Standards Act(FLSA)의 효과를 분석
다국가	Godoy and Reich (2021)	↑	↔	- 여러 국가(미국 포함)를 비교한 연구
미국	Jardim et al.(2022)	인금 없음	↓	- Seattle 도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Seattle 최저임금 상승이 최저임금 직업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미국	Jardim et al.(2018)	인금 없음	↔	- Seattle 도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Seattle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고용률 연구
미국	Reich et al.(2017)	인금 없음	↔	- 레스토랑 분야의 저임금 노동자를 Seattle과 다른 US 지역들을 비교하여 조사
미국	Nadler et al.(2019)	↑	↔	- Reich et al.(2017) 방법론을 Seattle을 포함한 6개 도시로 확대해서 연구
영국	Low Pay Commission (2016)	인금 없음	↔	- NMW 영향 연구 - 연구들을 광범위하게 review 하였음
영국	Stewart(2004)	인금 없음	↔	- NMW 영향 연구 -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근로자들을 비교 - 많은 수의 다른 연구들(Dickens and Draca(2005), Bryan, Salvatori & Taylor(2013) 포함)도 본고와 비슷하게 결론 내림
영국	Dickens et al.(2015)	인금 없음	↔	- NMW 영향 연구 -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근로자들을 비교 - 전반적인 영향은 작았지만,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의 고용 감소는 컸다고 주장함

국가	저자	인근에 미친 영향	고용에 미친 영향	특징
영국	Dickens et al.(2009)	인근 없음	↔	- NMW 영향 연구 - 임금수준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비교
영국	Dolton et al.(2015)	인근 없음	↔	- NMW 영향 연구 - 임금수준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비교
영국	Manning(2021)	↑	↔	- NMW 영향 연구 - NMW의 장기간 효과(1997년-2007년) 연구
영국	Druker et al.(2002)	인근 없음	↔	- NMW 영향 연구 - 산업군별 연구(hairdressing)
영국	Heyes and Gray(2001)	인근 없음	↔	- NMW 영향 연구 - 산업군별 연구(textiles)
영국	Lucas and Langlois(2003)	인근 없음	↔	- NMW 영향 연구 - 산업군별 연구(hospitality and clothing)
영국	Adam-Smith et al.(2001)	인근 없음	↔	- NMW 영향 연구 - 산업군별 연구(hospitality)
영국	Machin et al.(2003)	인근 없음	↔	- NMW 영향 연구 - 산업군별 연구(residential home)
영국	Machin and Wilson(2004)	인근 없음	↔	- NMW 영향 연구 - 산업군별 연구(residential home)
영국	Georgiadis(2006)	인근 없음	↔	- NMW 영향 연구 - 산업군별 연구(residential home)
영국	Aitken et al.(2019)	↑	↔	- NLW 영향 연구 -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를 사용
영국	Dube(2019a)	↑	↔	- NLW 영향 연구 - NLW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많은 그룹에서 평균 임금이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 관측되었으며, 고용에 관해서는 영향이 미미했음
독일	Bossler and Germer(2020)	인근 없음	↓	- 높은 임금과 낮은 임금을 주는 회사를 비교했는데, 약간의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찾아냄 - 해당 연구는 직업상 손실을 과대평가할 수 있음. 저임금 회사에서의 직업 상실 시 고임금 회사로의 직업 발생분으로 대체되어 결국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함
독일	Ahlfeldt et al.(2018)	인근 없음	↑	- 지역 간 변화 폭을 활용했는데, 약간의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찾아냄
독일	Dustmann et al.(2022)	↑	↔	- 개인별 최저임금 도입 후 임금수준과 지역 간 변화 폭을 모두 고려하여, 현재까지 가장 포괄적 평가를 제공 - 최저임금 이행을 받던 그룹이 최저임금 이행을 받던 그룹보다 확인히 더 높은 임금인상률이 관측되었으며, 고용 여부는 두 그룹 간 차이가 거의 없었음
헝가리	Harasztosi and Lindner(2019)	인근 없음	↓	- 정책의 폭넓은 평가를 제공 - 회사간 임금 변동 폭을 활용하여 고용에 약한 부정적인 효과를 찾았음 - 지역 간 인구 변화 폭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좀 더 작은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회사 간 차이를 보정한 결과라고 추측 - tradable 제조 회사에서는 고용의 감소 폭이 더 컸으며(sector에 따라서 고용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Cengiz et al. 2019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함). 상대적으로 tradable 분야에서 최저임금 근로자가 적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충격이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음을 암시

출처: Dube(2019a)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정책연구 |



- 주택가격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강동익·송경호
-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
안종석·정재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임홍래·한동숙
- 근로장려세제 확대의 경제적 효과: 노동공급과 납세행태에 미친 영향
권성오·홍우형
- 재정여력 및 건전성 관련 지표 개선 방안
김종면·박윤진

주택가격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고에서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Panel-SVAR 모형을 통해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혼인율 및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자면, 상세한 가정에 따라 추정계수 값의 크기는 다소 달라졌지만 모든 모형에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은 혼인율과 합계출산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매매가격 충격의 경우 최초의 충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며 장기적인 효과와 단기적인 효과의 크기가 매우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단기적으로는 혼인율과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누적된 효과의 크기는 상당히 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시장의 경기변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분석 결과 축약형(reduced form) 분석으로는 주택가격이 혼인 및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전대상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미시분석 결과,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출산 인원이 0.1~0.3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0.15~0.4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소유할 예정(부담 능력 등의 이유로)이 없는 경우 주택가격이 혼인 결정에 큰

B5변형/ 148면
2021. 12.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1년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2013년에서 2019년 사이 주택가격이 100% 상승하였을 경우 혼인하였을 확률이 4~5.7% 사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가격이 아닌 이전 자체의 효과를 살펴볼 경우, 기관 이전으로 인하여 혼인할 확률이 2~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Panel SVAR 분석을 통한 지역 단위 분석 결과와 정부 및 공공기관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미시분석 결과를 종합할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은 혼인 및 출산에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인관적인 관계성을 갖는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

부분 소멸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정부의 투기 관련 주택정책을 활용하여 주택 가격의 외생성을 확보하고자 한 분석에서는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충분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약한 도구변수(weak instrument) 문제에 직면하여 혼인 및 출산에 미치는 명확한 효과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관련 주요 정책이 주택가격에 큰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맥을 같이 하였다.

반면 지방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을 통하여 가구들이 경험하는 주거비용을 낮추는 정책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분석에서 드러났듯 주택가격 감소가 출산의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요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및 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방균형발전 및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라는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으나, 그 추진 과정은 상당히 신중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경우, 혼인 및 출산 제고를 위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지원정책 방향 일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 이상으로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신혼부와 소형저가주택에 대한 지원은 혼인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보다 더욱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출산 및 양육 단계의 가구들에 대한 주택지원이 부족할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상대적으로 더

넓고 고가의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와 정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1-14 『주택가격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이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연구 개요

본고에서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필요성, 특징, 예상되는 효과를 정리하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최저소득보장제도(GMI)와 부의 소득세제(NIT)를 비교하여, 기본소득제의 예상 효과와 다른 제도의 예상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및 필요한 재원규모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반응을 점검하였다. 다음에서는 연구결과를 이슈별로 정리한다.

2. 기본소득 규모에 대한 논의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기본소득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매우 다양하게 설명한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저생계 보장이 라고 할 수 있다. 최저생계 보장이 되지 않으면,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유노동을 들 수 있는데,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노동은 요원한 이야기가 된다. 생계비 중 기본소득으로 충족



B5변형/ 208면
2021. 12.

되지 않는 부분을 자유롭게 못한 노동을 통해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선별적 복지제도의 문제점인 낙인효과, 행정의 복잡성,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한 전략적 행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최저생계의 보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본소득으로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않으면, 기존의 선별적 최저생계 보장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최저소득계층을 더 가난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낙인효과, 행정의 복잡성,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한 전략적 행태 등 선별적 복지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3. 기본소득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논리적으로 기본소득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자원조달 방안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지출 측면에서는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의 재원을 지급하므로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제의 재분배 효과는 누진적인 세금 징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고 소득세를 중심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본소득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10분위 구분 중 상위 두 개의 분위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그 외 80%에서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소득보장제도의 경우에, 최하위 분위인 1분위에서만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그 재원은 2분위부터 분담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경우에, 최저소득계층의 생계보장 외에 최고소득계층으로부터 중간계층으로 상당한 규모의 소득이 재분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위 20~40%에 해당하는 계층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 재분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저소득계층의 생계보장과 달리 최고소득계층에서 중간소득계층으로의 소득재분배에 대해서는 구성원에 따라 선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소득계층으로부터 중간소득계층으로의 소득재분배를 합리화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는 사회적 배당 논리이다. 개인의 사적 수익 중에 사회적 공유 자산의 기여로 발생한 부분이 있으며, 그 부분은 모든 구성원이 똑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각 개인은 사적 소득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와 지방정부는 그 세금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가 세금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는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도 포함되며,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지원을 받는 교육·보건 등 보편적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행 제도하에서도 고소득층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그 세금 중에는 사회적 수익의 환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은 어느 정도의 배당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도 그중 하나일 것이며,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소득지원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적 배당을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사회적 배당이 없으므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보다는 현재의 세금이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배당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규모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는 편이 더 호소력이 있다. 이에 더하여 기본소득제는 그 추가적인 배당을 현행 공공재 공급방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모든 구성원이 똑같이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슈, 즉 사회적 배당이 현재보다 증가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증가되는 배당은 현금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기본소득제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본소득의 자원조달 방안

기본소득제도가 지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자원조달 방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가 중요

한 이슈가 된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본소득제도의 도입과 함께 폐지되는 복지제도와 조세지원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재원을 일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재원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세금을 더 징수해야 할 것인바, 그때 어떤 세목에서 세금을 징수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보유세로 구분하여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각 세목을 활용할 때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소득재분배 관점에서는 소득세와 재산세가 우월한 위치에 있으며 법인세는 재분배 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전반적으로 비례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최저소득구간과 최고소득구간에서 역진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소득세는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므로 잠재적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귀속임대료(imputed rent)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재산보유세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지만 재산보유세는 세수입의 충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나 보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재산세와 부가가치세가 우월하지만, 소득재분배 문제와 세수입의 충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산세와 부가가치세를 기본소득제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수입 규모는 크지만 신장성은 낮은 편이다.

법인세는 세수 신장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정치적 의사결정 왜곡 가능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법인의 소득도 궁극적으로 주주에게 배분되어 과세되며, 또한 법인세 부담이 근로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주주의 경우에는 법인세율 인상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나 소비자가 법인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귀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표에 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5. 필요재원 규모에 대한 논의

본고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에서 18~65세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같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그 외 연령에는 그 금액의 70%를 보장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시장소득의 30% 수준에 해당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제도는 개념상 지출과 자원조달이 분리되어 있다. 즉 기본소득제도는 정부가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된 대안이 없다. 소득세로 재원을 조달하면 기본소득을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세금을 징수하고, 그 세금에서 기본소득을 공제하며 공제해야 할 기본소득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기본소득제도는 부의 소득세제와 정확하게 같다. 이때 정부가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추가 징수해야 하는 세금은 세액 환급을 받는 자들의 환급금액을 합한 금액과 같다. 이 금액을 순이전이라고 하면, 본고에서 추정된 순이전 재원은 총필요재원의 40% 수준이다. 이는 제도 도입 이전에 납부하던 세금의 3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득세 외에 다른 재원으로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총필요재원은 같더라도 순이전 재원

의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기본소득 중 소득세로 상쇄되는 부분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6. 기본소득 재원 부담에 대한 인식

본고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소득제 도입 이후의 가처분소득 변화 전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7% 정도만 기본소득제 도입 이후 가처분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모의실험 결과 상위 20%의 가처분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또한 기본소득이 증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비용 부담에 대해 응답자들이 비교적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소득의 지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재원부담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내가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부담하겠지’ 하는 막연한 인식도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문제, 즉 기본소득제의 재원부담에 대한 인식부족 문제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할 때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제도를 고안할 때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세부담 증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제 도입을 시도할 때, 재원 마련을 위한 세계개편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작업이 미비한 상태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그 후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계개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7.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본고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탈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을 축소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순서형 로짓 모형을 추정하고,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이탈 및 근로시간 조정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노동시장 이탈에 대해서는 연령 대별로 반응에 차이가 있는데, 50대 이하에서는 12% 정도 이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서는 이탈 가능성이 25%로 나타났다. 한편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은 50대 이하에서는 66%, 60대 이상에서는 46%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탈 가능성을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구분해 보면, ‘매우 그렇다’는 5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각각 1%와 3%로 상당히 낮다. 이는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이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기보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것으로 응답한 자들에게 근로시간 감축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연령별 격차가 크지 않았다. 대체로 15% 내외가 근로시간을 감축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을 하였고, 감축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감축 가능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중은 1%였다.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경우에 얼마나 감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0~29%라는 응답이 40.5%, 30% 이상이라는 응답이 31.4%, 10~19%라는 응답이 23.8%를 차지하였다.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응답과 감축하고자 하는 시간에 대한 응답을 결합해 보면, 근로시간 감축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경우 여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조사하였다. 노동시장 이탈의 경우, 휴식·운동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52.3%를 차지하였으며, 취미 활동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32.1%를 차지하였다. 적성에 맞는 다른 일을 한다는 응답은 8.6%였으며, 적성에 맞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겠다는 응답은 1.6%였다. 그리고 가족돌봄에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5.4%였다.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여유 시간 활용의 경우에는 취미 활동이 45.5%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휴식·운동 40.9%, 다른 일 7.0%, 가족돌봄 4.1%, 교육·훈련 2.4%의 순이었다.

노동시장 이탈이나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여유 시간의 활용에 대해 90% 정도가 휴식·운동과 취미 활동에 응답을 하고, 교육·훈련에 응답한 비율이 낮다는 점은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장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1-10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임흥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동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 요약

본고는 ‘지식의 과소 생산이라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이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데 기여하였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기업(처리집단)과 비대상기업(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책의 효과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는 지식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를 의미하는 특허 수와, 기술혁신의 질을 나타내는 인용가중 특허 수를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집단에 관한 자료,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기업 재무 자료, 한국 특허청의 특허 자료를 연계한 후 성향점수매칭을 하여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이중강건추정법을 활용하여 통제변수가 각 연도의 처리를 받을 확률에 미치는 영향,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책의 효과 추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다기간 이중차이모형을 활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가 연구개발비, 특허 수, 인용가중 특허 수에 미친 효과를 각각 분석한 결과를 전체 효과와 동적 효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전체 기업의 연

구개발비를 약 3억 4천만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를 9억 3천만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약 3억원 증가시킨 효과가 있었다. 전체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평균이 12억 7천만원이고 전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평균이 2억 4,9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평균에 비해 약 73%의 연구개발비 증가 효과를 가져왔으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평균에 비해 약 136%의 연구개발비 증가 효과가 있었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동적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처리 시점 이후부터 처리 이후 16년이 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증가시켰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전체 기업의 특허 수를 약 0.52건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세분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특허 수를 약 1.74건, 중소기업의 특허 수를 약 0.36건 증가시켰다. 전체 대기업의 특허 수 평균이 약 2건이고 전체 중소기업의 특허 수 평균이 0.41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특허 수 평균에 비해 약 87%의 특허 수 증가 효과를 가져왔으며, 중소기업의 특허 수 평균에 비해 약 86%의 특허 수 증가 효과가 있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특허 수에 미친 동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효과는 처리 시점이

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처리 이후 14년이 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허 수를 증가시켰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전체 기업의 인용가중 특허 수를 약 1.2건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인용가중 특허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인용가중 특허 수를 0.76건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전체 중소기업의 인용가중 특허 수 평균이 1.8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인용가중 특허 수 평균에 비해 약 38%의 인용가중 특허 수 증가 효과가 있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인용가중 특허 수에 미친 동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처리 후 6년 차에만 유일하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인용가중 특허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다른 연차에는 모두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요약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 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효과의 크기는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인용가중 특허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일부 있었으나, 다수의 처리 연도에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연구개발의 성과는 일부 특허로 출원되기도 하지만, 질이 높은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2. 정책적 시사점

기술혁신정책의 하나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B5변형/ 124면
2021. 12.




의 정책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정책 목적이 단순히 연구개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정책 목적이 지식의 창출과 공유 혹은 기술혁신이라면, 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정책 목적이 선도기술 혹은 질 높은 기술혁신을 달성하는 것이라면 그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한국 연구개발의 역설에 기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정책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가 연구개발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정책의 목적이 연구개발비 증가인지, 기술혁신 촉진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분리하여 각각의 정책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활동과 기술혁신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교육훈련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실질적인 연구개발비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자체)연구개발비의 인정 요건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이다. 즉 인적·물적 요건의 외형적 충족 여부가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인적·물적 요건은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로 지적되기도 하였으며(김학수 외, 2018), 조세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연화·손혁, 2021). 2020년에 도입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확대하거나, 사후적으로 기업이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성과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기업은 실적보고 의무에 따라 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활동 조사의 내용에는 일반 현황,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비, 지역별 구분만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성과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에서도 세액공제 제도를 통하여 창출된 성과를 조사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1-1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의 경제적 효과: 노동공급과 납세행태에 미친 영향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우형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교수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EITC는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되어왔다. 특히 2019년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소득 및 재산 요건 기준금액 상향, 지급액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지급액이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지급가구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EITC가 취약계층 지원정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본고에서는 국내에서 연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 부분에 집중하고자 한다. 첫째, 조세지출 규모의 급격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확대개편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세수 및 재분배효과에 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지만(신상화, 2019; 홍우형, 2019), EITC 분석의 핵심이 되는 노동공급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9년 확대개편의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한다. 둘째,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사업소득자에게서 EITC에 대한 행태반응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들에 초점을 둔 국내 연구는 미미하다. 사업소득자는 분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행태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EITC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종류, 근로형태 등 EITC 수급자 특성 변화를 살



B5변형/ 109면
2021. 12.

펴보고, EITC에 대한 납세자의 행태반응을 분석한다.

제II장의 제도 현황에서는 수혜자 중 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자, 특히 인적용역 종사자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근로소득 수혜가구 중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2008~2019년 기간에 50~60% 수준이고, 상용근로소득 없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비중은 40~50% 수준이다. 일용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고 근로제공 시간 또는 일수 등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용근로소득과 구분된다. 2014년부터 대부분의 사업자가 EITC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수혜가구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전체 수혜가구 중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40%에 이르며, 그중 60% 이


상이 배달원, 강사 등 인적용역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용역에 종사하는 수혜가구의 비중은 2014년 38%에서 2019년 64%로 크게 증가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재정패널자료와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2019년 확대개편의 노동공급효과를 분석한다. 재정패널은 과세흐름에 따라 소득 및 자산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식별하는 데 용이하며, 응답자에게 소득증빙서류를 수집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세청 과세자료에 없는 가구의 인적정보와 노동 참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제도의 노동공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제Ⅳ장에서는 국세청의 EITC 미시자료와 집군추정법(bunching estimation)을 이용해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납세자의 행태반응을 분석한다. 집군추정법은 경제주체가 경제적 유인을 결정하는 기준변수를 조작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유인이 변하는 단절점 부근에 분포가 몰린 정도를 이용하여 행태반응의 크기를 추정한다. Saez(2010)와 Chetty et al.(2013)에서는 미국의 경우 EITC 지급율이 변하는 단절점 부근에 집군이 나타남을 보였다.

실증분석 결과, 일부 모형과 집단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EITC에 대한 유의미한 행태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재정패널과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수급 여부에 따라 정의할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에서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급 여부가 아닌 자격요건 충족 여부로 집단을 구분할 경우 유의미한 노동공급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ITC 과세 미시자료를 이용한 집군분석에서는 소득종류, 신고유형, 업종, 연령 등 다양한 납세자 특성별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는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를

감안하여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9년 확대개편으로 EITC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경제주체가 이를 바로 인지하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제도의 구체적인 체계와 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행태반응이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분석의 경우 제도 변화시점에 실험군과 대조군에 차별적인 영향을 준 다른 정책적·비정책적 요인의 효과가 적절히 통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ITC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정책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에서는 Bastian and Jones(2021)와 같이 경제주체의 행태반응을 반영하여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빈곤정책에 대한 미시자료가 연계되어 연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행정적인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의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부담을 고려하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판단된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1-12 『근로장려제 확대의 경제적 효과: 노동공급과 납세행태에 미친 영향』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재정여력 및 건전성 관련 지표 개선 방안

김종면 고려대학교 국제대학·국제대학원 특임교수
박윤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통계팀장

재정압박이 가중되면서 재정여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기존의 논의에서와 같이 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 인구 연령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연금 및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 기타 사회분야 정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 계속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일련의 위기 상황이 재정압박을 계속 악화시켜왔다. 경제적 위기로는 2008년의 세계금융 위기와 그 직후의 유럽재정위기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세계적인 감염병인 코로나 사태가 의료·사회·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위기를 불러와 재정에도 심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재정지출의 증가를 정부가 어느 선까지 부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나 평가는 다소 미흡했다고 사료된다.

정부의 재정여력에 대한 기존의 지표는 주로 채무와 부채의 총량 위주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널리 알려진 EU의 재정준칙이 일반정부 채무를 GDP 대비 60%로 제한하는 사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도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의 비율이 재정여력의 지표로 거의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표는 채무의 총계만 집계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적으로 조망하는 부채라는 지표 역시 현재는 사실상 모든 국가에서 총계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채무·부채에 상응하는 채권 또는 자산으



B5변형/ 115면
2021. 12.

로서 채무·부채 등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러한 지표들이 감안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재정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면서 각 국가별로 총계보다는 순계에 근거를 두고 정부의 정확한 재무상태 및 이에 따른 재정여력을 판단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으며, 이에 본 보고서는 총계보다는 순계의 개념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정부의 재정여력을 보다 정확히 가늠해볼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한다.

우선 국제 논의에서 재정여력을 나타내는 지표에 대한 논의의 현황을 보기로 한다. 국제비교를 통하여 각 국가별로 시도하고 있는 지표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지표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순채무, 순재무가치, 순가치 등이 EU 국가를 위주로 펼쳐지고 있으며, 후자의 2개 지표는 채무보다는 자산과 부

채의 순계를 측정한다. 즉 순채무는 정부의 채무와 부(負)의 채무인 채권의 순계를 집계하는데, 채무란 갚아야 할 금액과 시기가 확정된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부채는 금액이나 변제의 시기에 다소라도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채무나 부채와 달리 주식 등은 빌리거나 갚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이므로 채무나 채권과 다른 자산이다. 즉 위에서 말한 3가지 유형의 지표 중 순채무는 소유권이 아니라 차입과 이에 따른 변제 의무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며, 자산과 부채의 관계를 보는 다른 2개의 지표는 이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국가별 대안 지표 이외에 국제기구의 권장 사항을 보면 현재 9개 유력 국제기구 모두가 합의하여 순채무에 대한 기준이 채택된 지 오래다. 그러나 이 모든 지표들은 국제적으로 공통의 기준으로 인정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가별 기준은 개별 국가 모두 위의 3가지 범주 안에서 각 국가별로 상세한 집계기준이 상이하며, 국제기구의 통합 기준인 PSDS의 경우에는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발표하는 국가가 아직 없다는 문제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 기준 설정의 배경 및 특성의 비교를 통해 각각의 장단점 분석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어서 이렇게 제안된 4개 기준을 우리의 정부회계 통계에 대입하여 시산을 시도함으로써 우리의 재정 통계에 도입하는 경우의 잠재적 문제점과 시사점을 점검한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단순히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일반정부의 순채무를 재정여력 또는 재정건전성의 척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정여력이 자칫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보이기 쉽다는 점이다. 단순하게 일반정부의 순채무를 계산하면 0이나 연도에 따라서는 작은 규모이나 부(負)의 수치가 집계된다. 일견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부에서 지적하는 우려와는 달리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로 확대해도 무방하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채무나 채권의 내역뿐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도 내역은 물론 주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재정여력의 판단에 주는 함의를 보다 자세히 분석한다.

정부회계의 기준에서 정부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는 국가별로 선택의 여지가 있으며, 주로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반정부에 비하여 공공부문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일반정부의 의사결정에서도 재정부담의 일부를 공공부문으로 전가할 유인도 있음이 지적되는데, 이 경우에 공공부문의 누적된 채무나 부채도 작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므로 일반정부 이외에도 광의의 정부로 공공부문의 재무상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실제로 일부 공기업의 경우 상당히 큰 규모의 부채가 누적되어 왔으며 국가의 재무상태를 판단할 때 이것이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수차 지적되었음을 상기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단순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만 정부의 재정여력이 잘 측정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공공부문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 다른 비교대상 국가와 달리 공공부문이 안고 있는 부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유의할 사항은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 관리재정수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 부문의 순채무(채권)나 순자산을 재정여력에 포함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발생주의적 관점에서 판단할 때 현재의 대규모 순자산은 미래에 연금 및 사회보장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급될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발생주의 관점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채무가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회계 기준에서 발생주의 원칙을 반영하더라도, 장래의 불확실성이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 것인지에 따라 장래의 부채 추정치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중 정부회계 원칙상 가장 엄격하게 장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대안을 취하더라도 연금의 장기추계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보다 연금의 장래 지출 압박요인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시산 결과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정부회계 부문에서 집계·발표하는 정보를 보면 중요한 정보가 대부분 공개되고 있기는 하나, 비망항목으로 분류되어 발표되는 경우가 많으며, 위와 같이 다른 대안 지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소 산재되어 발표되는 여러 지표를 수요자가 다시 취합하여 산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각 지표나 통계치의 정확한 의미 및 집계 방식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일반독자가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현재 발표되고 있는 정부회계 통계를 기반으로, 각 통계치의 정의와 의미, 또는 각 통계치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해설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부의 재정여력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몇 가지의 대표적인 대안 지표를 설정하여 추정치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1-13 『재정여력 및 건전성 관련 지표 개선 방안』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2 KIPF-AMRO
JOINT WORKSHOP**
*The Impact of COVID-19 on Regional Economies and
Policy Responses*
July 4, 2022 | Seoul, Korea



정책토론포트 |



- KIPF-AMRO 공동연구 워크숍:
주요 아시아 국가의 코로나19 경제충격과 재정대응의 평가



KIPF-AMRO 공동연구 워크숍: 주요 아시아 국가의 코로나19 경제충격과 재정대응의 평가

개요

- 행사명 2022 KIPF-AMRO 공동연구 워크숍
- 주제 주요 아시아 국가의 코로나19 경제충격과 재정대응의 평가
- 일시 2022. 7. 4. (월) 9:30 ~ 17:00
- 장소 밀레니엄 힐튼 서울 토파즈룸
- 주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 주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본 원고는 2022년 7월 4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 토파즈룸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개최한 「2022 KIPF-AMRO 공동연구 워크숍」의 요약자료입니다. 본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 아태재정협력센터(Center for Asia-Pacific Fiscal Affairs, CAPF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정제도 및 재정관리에 관한 연구와 재정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함

■ 코로나19가 주요 아시아 국가에 미친 경제적 영향과 재정대응을 파악하기 위하여 KIPF와 AMRO가 2021년부터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워크숍에서 발표함. 연구는 9개 국가¹⁾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 국가 분석과 총괄 분석을 포함함

개회

개회사

·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과 효과적인 정책 대응에 대한 이번 연구의 시의적절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해당 공동연구는 9개 주요 아시아 국가별 코로나19 발생과 현황, 정책 대응, 정책 평가 및 제언을 포함하고 있음
- 이번 연구의 결과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정책에 대한 주요 참고문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세션 1:

연구 대상 9개 국가 개괄 및 한국 사례

발표 ① 코로나19 확산 및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

· 한종석(아주대학교)

■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

- 연구 대상 국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것은 2020년 1분기이며,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해외 유입을 통해 발생함
- 국가별 누적 확진자 수는 델타·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함
- 각국의 검역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지침을 따르지만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세부 사항이 조정됨
- 코로나19 백신은 2021년 2월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2021년 여름까지 대부분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음

■ 팬데믹이 경제에 미친 영향

- 팬데믹으로 인해 연구 대상 국가의 2020년 실질 GDP 성장률은 평균 1.7% 하락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고, 브루나이, 중국, 라오스, 베트남의 GDP 경제성장률은 2~5%p로 팬데믹 전 해보다 낮음
- 2022년도 농업 부분의 성장률은 2.3%이었고, 산업

1) 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브루나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부문 평균 성장률은 -1.2%로 실질 GDP 성장률과 비슷함. 서비스 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 등 방역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2020년 성장률은 -3.2%로 실질 GDP 성장률보다 더 떨어짐

- 신속하고 유연한 재정 대응을 위해 유연한 재정 체계와 관리가 필요함
- 정부 정책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접근성을 개선하여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함

발표 ②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 홍승현(AMRO-ASIA)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재정 정책

- 전대미문의 글로벌 팬데믹 타격을 받은 정부들은 빠른 봉쇄조치와 경기부양책을 통해 전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 전문가들은 3T(Timely, Temporary, Targeting) 재정 지원을 제안함

■ 코로나19 대응 평가 및 향후 과제

- 봉쇄 조치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대가로 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함.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경제 활성화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
- 초기 정부 지원 조치들은 신속하게 발표되었지만 종종 수혜자들이 제대로 목표되어 있지 않아 남용되기 쉬웠다고 평가됨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정부의 재정적자는 증가하였고, 재정여력 또한 부족하게 됨. 따라서 정부는 중장기 정책을 준비해야 하며 재정여력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함
- 지출 프로그램의 확대는 인적자원과 제도적인 환경이 함께 개선되어야 함

발표 ③ 한국 사례

• 한종석(아주대학교)

■ 코로나19 확산 및 대응

- 2020년 첫 번째 확진 사례 이후, 한국은 5건의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함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세 가지로 구분됨: (1) 3T(Testing, Tracing, Treating), (2) 사회적 거리두기, (3) 백신 접종 (2021년 말 기준 86%가 백신 접종 완료)

■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실질 GDP 성장률은 2020년 2분기에 가장 많이 하락했으나 2020년 3분기부터 2021년까지 회복세가 이어짐
-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분기 서비스업 감소 폭이 2.5%로 가장 컸고, 제조업 성장률 감소 폭은 2020년 2분기 9.4%로 나타남
- 전체 소비 증가율은 2020년 1분기에 -4.56%로 가장 많이 하락했지만, 2020년 2분기부터 반등함
-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021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은 2020년 2분기 이후 상승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의 재정정책

-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5%로 조정함
- 전염병 대유행으로 수출과 내수가 감소하자 금융위원회에서 175조원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대책을 마련함
-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4차재(총 66조 8000억원 규모), 2021년 2차재(총 48조원 규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함

■ 코로나19 대응 평가 및 향후 과제

-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며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7%, 2021년에 4.4%로 급격히 증가함
-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는 2020년 43.8%, 2021년 47.3%에 달함
- 최근의 경제 상황과 특히 코로나19 이후 인구 변화를 고려하면 한국은 중기적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출 검토와 삭감이 필요함

세션 2: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사례

발표 ① 캄보디아 사례

- Ky Sereyvath
(Royal Academy of Cambodia)

■ 코로나19 확산 및 대응

- 2020년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확진자가 크게 늘었으나, 2022년에는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캄보디아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과 세계 관행에서 배운 국제 차단 접근법과 지역 차단 접근법의 두 가지 접근법을 사용함: 특정 국가 여행 금지, 감염 지역 차단, 전국적 봉쇄, 백신 접종 확대 등

■ 코로나19가 캄보디아 경제에 미친 영향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캄보디아의 GDP는 -3.1%에 달했고, 1인당 GDP는 4.4% 감소했으며,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초래함
- 물가상승률은 2019년 1.8%에서 2020년 2.8%, 2021년 3.7%로 확인됨. 특히 봉쇄로 인한 식료품 공급 어려움으로 인해 큰 물가상승률이 있었음
- 서비스 산업의 위축, 실업률 상승, 중소기업 생산 문제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침
- 캄보디아 실질 GDP 성장률은 2022년에 4.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GDP는 305억 4,400만달러, 1인당 GDP는 1,842달러로 추정됨

■ 코로나19에 대한 캄보디아 정책 대응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위해 통화정책 완화 및 대출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함
- 정부는 2021년 국가예산을 사회 문제(Social Affairs) 11.3%, 일반 행정 6.4% 등 올해 국가예산보다 약 50% 감소한 40억달러 수준으로 삭감할 계획임
- 경제 활성화를 위해 캄보디아 정부는 세 개의 핵



심적인 정책을 내세움: 복구(Recovery), 개혁(Reform), 회복력(Resilience)

- 가계의 소비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는 기술 투자, 고품질 인프라 투자, 녹색 투자, 디지털 인프라 등의 항목에 지출함

■ 코로나19 대응 평가 및 향후 과제

- 재정 및 통화정책 대응은 2022년 첫 두 분기에 효과적으로 나타남. GDP 성장률은 2022년까지 5.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업 회복으로 2022년에는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이 1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캄보디아의 재정정책은 2022년과 2023년에 계속 확장될 것이며 팬데믹 관련 개입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예정임
- 새로운 변이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함

발표 ② 라오스 사례

• Phouphet Kyophilavong (National University of Laos)

■ 코로나19 확산 및 대응

- 라오스 정부는 봉쇄, 여행 제한, 백신 투여 등 다양한 조치를 활용하여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하였으며 2022년 5월 23일 기준, 209,823명의 확진자와 754명의 사망자를 기록함

■ 코로나19가 라오스 경제에 미친 영향

- 라오스의 2020년 및 2021년 GDP 성장률은 약 3%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자연재해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농업 부문 성장이 저하되었고, 의류와 산업부품 등 수출 산업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서비스 부문은 예년의 약 9%에서 감소한 -1.6%의 마이너스 비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7년 재정적자는 5.2%였으며 2021년에는 4.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동시에 전체 공공부채는 2019년 58.2%에서 2020년 62.1%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66.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높은 부채 상환 부담, 부적절한 세금 징수, 제한된 자금 조달 방식, 낮은 외환 보유고 때문에 라오스는 유동성과 상환 능력 문제를 겪고 있음

■ 코로나19에 대한 라오스의 정책 대응

- 라오스 정부는 예산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재정 대응을 실시함: (1) 현금 지원, (2) 중소기업펀드 저금리 대출, (3) 소득세 면제, (4) 이득세 면제, (5) 관세 면제, (6) 세금 지급연기, (7) 전기요금 인하, (8) 실업수당, (9) 관리 비용 절감, (10) 백신 및 의료 장비 조달을 위한 기부금 수령
- 반면 재정 제약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실행되지 않음: (1) Cash-for-work 프로그램, (2) 사업 보조금, (3) 기술 교육 프로그램
- 라오스 중앙은행(BoL)은 은행 시스템과 경제의 유동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Decision(제238호/BOL)을 발표함. 자세한 정책은 다음과 같음: (1) 예비소요 감소, (2) 기준금리 인하, (3) 저금리

제공, (4) 금리 및 수수료 절감, (5) 채무 조정

■ 코로나19 대응 평가 및 향후 과제

- 라오스의 경제는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같은 수준을 달성하는 데 약 3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됨. 라오스는 대외 부채뿐만 아니라 재정적자도 크며,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하였고, 정부가 경제를 더 도와야한다고 주장함
- 재정정책이 비효율적인 주된 이유는 (1) 한정된 예산, (2) 비상시를 대비한 재정저축 부족 등이 라고 함
- 라오스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1) 물가 및 환율 안정, (2) 부채 위기 회피, (3) 라오스-중국 간 열차 운영 극대화, (4) 민간 부문 지원 확대, (5)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한 FDI 육성 등

발표 ③ 베트남 사례

• **Giang Thanh Long(National Economics University of Vietnam)**

■ 코로나19 확산 및 대응

- 베트남은 4차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2021. 4.) 확진자가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며 약 970만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43,000명이 사망함

■ 코로나19가 베트남 경제에 미친 영향

- 코로나19 사태는 2021년 3분기까지 베트남 경

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2021년 경제성장률은 2.6%에 그쳐 코로나 이전 보다 훨씬 낮았고, 이로 인해 1인당 GDP도 소폭 증가함
- 2020년과 2021년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2010~2021년 중 가장 낮음
- 통화 부문에 있어서는 2020년의 통화량 증가율이 코로나19 이전 기간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GDP 대비 통화량 증가율이나 GDP 대비 민간 부문 신용(credit for private sector) 모두 미세하게만 증가함

■ 코로나19에 대한 베트남 정책 대응

- 베트남 정부는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19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주요 경기부양책을 시행함: 정부 결의안 R42/NQ-CP(2020. 4. 9.)와 정부 결의안 R68/NQ-CP(2021. 7. 1.) 등
- R42는 전쟁 유공자, 빈곤층 가구 등 연간 수입이 적은 가구 및 기업에게 3개월간(4월, 5월, 6월)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R68은 경제발전 지원과 소외 계층(R42와 같은)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생산 및 사업 안정화를 목표로 설계됨

■ 코로나19 대응 평가 및 향후 과제

- 대부분의 정책은 인구 규모가 다른 도/군, 산업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설계 및 구현되었고, 한정된 예산과 광범위한 수혜자로 인해 지원액은 제한적임



- 정책 추진과정에서부터 정책 수혜자 선별을 중시하여 추진에 오랜 기간이 걸렸으며, 정책적 지원을 받는 절차가 번거로워 국민과 기업이 접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지 못함
- 현행 기업지원 재정정책은 비과세, 세금 감면·연기뿐 아니라 수수료·부담금·토지 임대료 등의 감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 지출의 진전이 더딤
- 원칙적으로 재정 부양 정책은 정부의 새로운 전략에 따라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소득 재분배 원칙을 보장해야 하고, 사회를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 대한 생산 자원의 재분배 원칙을 보장해야 함
- 실질적으로 생산과 사업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취약한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프로그램, 그리고 사회 보호 시스템 관리의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함

세션 3: 브루나이, 중국, 필리핀 사례

발표 ① 브루나이 사례

• Wee Chian Koh(Centre for Strategic and Policy Studies)

■ 브루나이의 코로나19 발생과 진행

- 코로나19 유행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확산 초기에는 곧바로 엄격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초기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였음. 그러나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2차, 3차 대유행이 진행됨

- 초기에는 백신 접종률이 낮았으나, 점차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여 낮은 사망률과 대유행 기간에도 비교적 적은 확진 사례로 이어짐
- 현재 4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에 좀 더 집중하는 등 이전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방역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이 브루나이 경제에 미친 영향

- 확산 초기 시행된 엄격한 봉쇄조치로 인해 서비스 분야, 특히 여행과 관광에 의존하는 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음
- 반면 기존에 말레이시아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던 소비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내수 시장에 집중되면서 확산 초기에는 소매 유통 분야가 증가세를 보였으나,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2021년도 3~4분기에는 소매 산업이 다시 급격하게 축소되었음
- 브루나이 경제는 특히 코로나19 2차 대유행 발생 후 심각한 영향을 받았는데, 점차 회복해 가던 서비스 부문은 엄격한 방역 대책의 재도입으로 다시 위축되었으며, 소규모 사업체들은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았음
- 2021년 4분기에는 경제활동 회복이 나타났으나 2022년 1분기는 다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브루나이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국가이나, 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기도 함

- 브루나이의 주요 수출원이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국제 석유와 가스 가격의 변동을 반영하는데, 2021년에는 석유와 가스로 인한 수입의 증가로 재정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됨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브루나이의 정책 수단

- 브루나이의 조기의 결단력 있는 정책 개입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공중 보건 관련 정책 대응의 핵심 요소는 진단 테스트 확대, 감시 및 접촉 추적, 치료와 관리, 백신 등 의료용품 공급 및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이었음
- 민간 부문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재정적 조치로써 세금, 공공요금 및 사회보장 공제 또는 연기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통화정책은 주로 대출 원금 상환 연기에 관한 것이었음
- 이러한 경기부양책은 4억 5천만브루나이달러로 GDP의 약 2.7%에 달하는데, 이는 아세안 등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작은 규모로, 대부분 보건 관련 조치에 지출됨

■ 정책 대응 및 향후 과제에 대한 평가와 제언

- 브루나이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백신 수급 등 성공적인 보건 정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 적극적인 팬데믹 방역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초기의 성공적인 억제 정책에 안주함에 따라 심각한 2차 대유행을 초래하기도

하였음

- 경제에 있어서는 신속한 경제 지원과 경기부양책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부문의 회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됨
- 행정적 병목현상으로 인해 재정 지원을 위한 지출이 다소 지체되었으며, 내국인의 일자리 보전을 위한 대책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력이 대거 유출되어 경기 회복에 차질을 빚게 되기도 함. 또한 7년 연속 재정적자로 인해 재정 대응의 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제한적이었음
- 브루나이 정부는 향후 과제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에너지 자원에 제한된 수출원을 확장하는 등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함

발표 ② 중국 사례

• Gary Ng(Natixis CIB)

■ 중국의 코로나19 발생과 진행

-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중국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봉쇄 및 격리를 포함하는 ‘제로-코로나 정책’을 적극 시행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이동을 통제하고 격리 정책을 적용하였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백신의 접종도 적극 추진함

■ 코로나19 팬데믹이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



-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국가 봉쇄에 대한 비용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출 수 있었고,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덕분에 서비스 산업의 위축을 상쇄하기도 함
- 또한 정치적 상황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봉쇄 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빠르게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전 세계의 경제활동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동안, 중국은 세계적인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출 실적을 끌어올림
- 그러나 2022년 2월 오미크론 변이의 발생으로 3차 대유행이 시작되어 봉쇄를 재개함에 따라 중국 시장은 새로운 불확실성과 경제 회복 지연에 직면함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 수단

-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및 수수료 인하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했으며,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가계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늘림
-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부가가치세 인하와 사회보장기여금 중단, 중소기업들의 조세 납부 기한 연기 등이 있고, 많은 도시에서 재산세와 토지세를 면제하거나 줄이기도 하였음
- 가계를 위한 주요 재정 지출 지원책으로는 실업 급여,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빈곤 구제,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 및 지역 간 취업 장려금

이 있음

- 중국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지방 정부로 하여금 도로와 다리 건설 등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뿐 아니라 에너지, 농업, 임업 및 수자원 관리, 환경 보호, 민생 안정에 투자하고, 은행의 자본을 보충할 수 있도록 장려함
- 또한 국유 기업의 자원을 보다 용이하게 동원할 수 있는 점이 중국 정부의 특수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공금융기관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이익률의 일부를 포기하여 재정정책을 지원하는 ‘이자 양보 정책(policy of interest concessions)’을 시행하고 수수료를 인하함

■ 정책 대응 및 향후 과제에 대한 평가와 제언

- 중국 정부의 대응 정책은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기업 규모 간의 회복 속도 차이가 뚜렷하고, 소비 회복도 업종 별로 일정치 않은 등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
- 향후 경기부양 효과의 증진을 위해 지방 정부 특별채권을 조기에 배정하여 사용처를 확대해야 하며, 경기부양책은 전통적 기반 시설과 새로운 기반 시설 모두를 포함해야 함
- 또한 부동산 산업의 위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사전에 관리해야 하며, 중국 내 기업들이 중립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소비의 완만한 회복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발표 ④ 필리핀 사례

• Margarita Gonzales(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 필리핀의 코로나19 발생과 진행

- 몇 차례의 코로나19 대유행과 장기화된 격리 정책 이후 2022년 1분기 하반기부터 확진자 수가 안정되기 시작함
- 현재는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팬데믹 초기의 지역 봉쇄와 국경 폐쇄 등의 엄격한 정책에 비해서는 느슨해졌으나, 필리핀의 방역 정책은 여전히 주변 지역에서 가장 엄격한 편에 속함
- 코로나19 규제의 장기화로 최근에서야 근무 환경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등 장기간 지역사회 이동성이 낮았으며, 백신 접종률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의 목표인 70%를 달성하지 못함

■ 코로나19 팬데믹이 필리핀 경제에 미친 영향

- 필리핀은 엄격한 봉쇄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최악의 불황을 경험했으며, 코로나19의 불확실성과 반복적인 제재는 2021년까지도 경기 회복을 어렵게 함
- 2020년부터 수요 측면에서는 가계 소비가 무너졌고, 정부는 지출을 가속화하여 팬데믹에 대응하기 시작함. 순수출은 2020년에 잠시 증가했지만 단지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빨리 감소했기 때문이었음. 공급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산업 생산량도 과거의 경제 위기 때 처럼 붕괴되었음
- 2021년에는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부분적

인 회복만 이루어졌음

- 보건 부문 피해를 제외하면 노동 시장이 팬데믹의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음.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소득 및 고용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노동자가 비공식 부문으로 편입되거나 자영업으로 전환함
- 한편 팬데믹 기간 동안 비교적 제한된 공공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경제로 인해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어 국가 재정 상태는 크게 악화되었고, 재정적자의 증가는 국내외 차입금 증가와 공공부채 비율의 증가로 이어짐
- 공공부채의 증가는 또한 부채 상환액을 늘렸는데, 이는 정부 지출의 제약이 되어 미래의 성장을 제한할 수도 있음
- 필리핀 경제는 점차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2022년에는 GDP 성장률이 약 6.7%대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됨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필리핀의 정책 수단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리핀의 통화 정책은 국내 유동성 완화, 금융기관 규제 완화, 중소기업 대출 지원 등으로 구성됨
- 필리핀 정부의 재정 대응은 대통령에 의한 국가 예산의 재편을 허용하는 두 개의 법률로 뒷받침됨
- Bayanihan I법은 빈곤 가구를 위한 현금 보조금, 소규모 기업을 위한 임금 보조금, 해외 필리핀 근로자 포함 소외된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포함하는 구제책을 제공함
- Bayanihan II법은 보다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을



도입하여 추가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 패키지를 포함함

- 그러나 필리핀은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 및 경제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조차도 재정 긴축에 더욱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지출을 하였고, 법인세 인하 정책이 국가 재정 부양책의 핵심 요소로 선전되었음

■ 필리핀의 코로나19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

- 팬데믹에 대한 국가의 공중 보건 대응이 불안정하여 경제에 특히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됨
- 필리핀의 강력한 통화정책은 재정 압박을 해소하고 금융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높은 불확실성과 낮은 기업 및 소비자 신뢰로 인해 은행 대출의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함
-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신중한 접근으로 팬데믹의 재정적 부담은 줄었지만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약세를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공 투자가 필요함

■ 포스트 코로나19를 위한 향후 과제와 제언

-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추세이지만 필리핀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재유행과 또 다른 전염병의 출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 정책입안자들은 거시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대한 출구 전략의 시점을 최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거시 경제적 안정을 위해 건전한 재정 전략 또한 수립해야 함

세션 4: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례

발표 ① 인도네시아 사례

• Abdurrohman(MOF of Indonesia)

■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발생과 진행

- 코로나19 발생 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양한 보건 관련 조치를 추진하였고, 2021년 4분기에는 백신 공급에 속도를 올리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급격히 감소함
- 델타 변이로 인한 대유행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응급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백신 접종을 촉진하는 등 코로나19에 철저히 대비하여 2022년 초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되었을 때 비교적 낮은 병상 점유율과 낮은 사망률을 기록할 수 있었음

■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도네시아 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

- 인도네시아 경제는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었으나, 엄격한 코로나19 대응 조치는 경제를 현저히 위축시킴
- 팬데믹은 2020년 1분기부터 경제를 압박하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영향은 2020년 2분기에 시작됐는데, 경제가 5.3% 수축하는 등 지난 2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함
- 특히 서비스업과 관광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음
- 경제활동의 위축은 실업률과 빈곤율 증가로 이어졌고, 금융 부문에서는 갑작스러운 자본 이탈로 투자 심리 또한 위축되었음
-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인도네

시아 경기는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다소 안정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활동의 증가로 실업률과 빈곤율도 감소하였음

- 이러한 회복세는 코로나19 변이 발생과 대유행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되긴 했으나 과거의 경제 위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는 것이 고무적이며, 백신 접종률 증가 등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경제 회복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코로나19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재정적 대응

- 인도네시아는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비상 시 가능한 조치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 대담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2022년까지 일시적으로 GDP의 3% 이상으로 재정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발행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특징임
-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PC-PEN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재정 투입을 늘리고,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보건 관련 조치, 취약 계층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에 집중함. 기업들을 위한 세금 혜택 제공과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금융 조달 지원 및 이자 보조금 지급, 자동차 산업의 생산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여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함
- 이러한 긴급 조치들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으나, 델타 변이 등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PC-PEN 예산을 더욱 늘리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

■ 인도네시아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

- 인도네시아의 재정 확장은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세입이 급감하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상당한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자는 최근 5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함
- 한편 정부와 중앙은행이 긴밀히 협력하여 부담 분담 전략을 활용하는 등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시너지를 도모함
- 이러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중앙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은 빈곤 계층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게 했을 뿐 아니라 실업률도 하락시켰음. 인도네시아는 팬데믹 이전의 실질 GDP 수준으로 되돌아간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임
- 잇따른 변이로 인한 재유행으로 속도가 다소 느려지긴 했으나 2021년에도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었음
- 2022년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과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대한 긴장감이 있었음에도 소비와 생산 지표 모두 비교적 강세를 유지하였고, 확진 세도 줄어들어 2022년에도 경기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출구 전략 등 향후 과제에 대한 분석

- 향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증가할 예산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함
-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재정적자가 확대되었지만 팬데믹 상황 개선과 경제 회복으로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실질적인 경기 회복과 상품 가격 상승 및 재정 건전화 전략으로 세입 징수가 목



표치를 초과하여 예산 적자와 재정 압박이 감소하였음

- 팬데믹 위기는 세계 개편 등 재정 구조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2023년부터 재정 건전화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발표 ② 말레이시아 사례

• Yeah Kim Leng(Sunway University)

■ 코로나19 확산 및 대응

- 말레이시아는 비허가 모임, 지방선거 등의 이유로 총 6차례의 대유행을 겪음. 2021년 말 기준 확진자는 27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4%를 차지했고, 사망자는 31,487명으로 치사율은 1.2%임
- 2022년 4월, 정부에서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다룰 것을 발표함

■ 코로나19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 경제활동 위축으로 2020년 말레이시아의 성장률은 -5.6%를 기록함. 건설업(-19.4%), 광업 생산(-10.6%), 서비스업(-5.5%)의 급격한 감소가 주효했고 제조업과 농업 부문은 각각 -2.6%와 -2.2%로 소폭 감소함
- 2021년 수출지향제조업이 원만한 회복을 하며 성장률이 3.1%를 기록함
- 전국 실업률은 2020년 평균 4.5%, 2021년 평균

4.7%로 코로나 유행 이전 평균인 3.3%에 비해 급등함

- 2020년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침체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 하락하면서 지난 2년(2018년 1.0%, 2019년 0.7%) 추세보다 낮아짐

■ 코로나19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정책 대응

- 정부는 2020~21년 동안 8번의 경기부양책(GDP 대비 35%)을 발표하여 가계, 기업을 구제하고 금융 불안을 완화하고자 함
- 공공보건 시설 확충과 백신 프로그램에 예산을 분배하여 경제 피해를 방지함


■ 코로나19 대응 평가 및 향후 과제

- 팬데믹 초기 WHO가 권고하는 지침 등에 따라 정책 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음
- 2020~21년에 걸쳐 발표한 8번의 경기부양책은 정부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킴. 정부의 재정 상태는 2020년 세입이 -14.9%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지원 및 경기부양책에 대한 추가 지출을 포함한 총지출은 -1.0% 소폭 줄어들어 재정적자가 2019년 -3.4%에서 2020년 -6.2%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
- 사업 및 생산 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를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코로나19 재정 대응을 통해 국가의 재정여력이 약화되어 미래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됨. 따라서 추후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 및 구조 개혁 가속화가 요구됨

폐회

폐회사

· 허경선(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

- 아태재정협력센터 허경선 센터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19가 9개 주요 아시아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 및 각국의 재정대응에 대한 분석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함. 팬데믹 이후 첫 대면 회의인 이번 KIPF-AMRO 공동연구 워크숍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였음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 2022년 하반기 표준마일리지 요율 인상 발표]

■ 미국 국세청은 2022년 6월 9일, 표준마일리지 요율을 인상한다고 발표함¹⁾

- 최근의 유가인상을 반영하기 위해 국세청이 표준 마일리지 요율을 조정하였음
 - 새로 조정된 요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 IRS는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마일리지 요율을 업데이트하므로 이번과 같은 표준마일리지 요율의 중간인상은 드문 경우임
- 연료비는 마일리지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감가상각비, 보험, 기타 고정비용 및 변동비용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마일리지 산출됨

■ 납세자는 표준마일리지 요율을 사용하여 사업 및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해 자동차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의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음

- 표준마일리지 요율은 실제비용을 추적하지 않고 사업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손금을 계산하는데 사용됨
 - 납세자는 표준마일리지 요율을 사용하는 대신 차량 사용에 대한 실제 비용을 계산하여 적용

할 수 있음

- 출장에 대한 표준마일리지 요율은 2022년 상반기 적용되었던 요금보다 4센트 인상된 마일당 62.5센트²⁾임
- 의료 또는 이사비용(현역 군인에게 적용)에 적용될 새로운 요율은 2022년 상반기 적용되었던 요금보다 4센트 인상된 마일당 22센트³⁾임

<자료수집 및 조사: 이나현 변호사>

[캐나다 - 캐나다 와인에 대한 소비세 면제 폐지]

■ 캐나다 국세청은 2022년 5월 17일, 캐나다에서 재배된 농산물로 캐나다에서 생산한 와인에 대한 소비세 면제를 폐지함⁴⁾

- 현재 100% 캐나다 와인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 2022년 4월 7일 캐나다 재무장관은 캐나다에서 재배된 농산물로 캐나다에서 생산된 와인에 대한 소비세 면제를 폐지하기 위해 2001 소비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캐나다 와인에 대한 소비세 면제 폐지 조항이 포함된 2001 소비세법 개정안이 2022년 6월 30일부터 발효됨

■ 2022년 6월 30일 이후에 캐나다에서 포장된

1) IRS, "IRS increases mileage rate for remainder of 2022," <https://www.irs.gov/newsroom/irs-increases-mileage-rate-for-remainder-of-2022>, 검색 일자: 2022. 6. 20.

2) 2022년 7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15원임

3) 2022년 7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87원임

4) CRA, "Repeal of Excise Duty Exemption for 100% Canadian Wine,"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edn75/repeal-excise-duty-exemption-canadian-wine.html>, 검색일자: 2022. 6. 22.

100% 캐나다 와인은 다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소비세가 부과됨

- 와인에 대한 소비세 책임은 와인이 소비세창고에 들어갈 때 와인 면허소지자에서 소비세창고 면허소지자에게로 이전됨
- 와인이 시장으로 유통되기 위해 소비세창고에서 반출될 때 소비세창고 면허소지자가 소비세를 지불해야 함
 - 소비세창고는 장관이 지정한 포도주 면허소지자의 창고를 말함⁵⁾
- 적용 세율은 소비세를 납부할 당시의 유효한 세율이고 와인이 포장되어 소비세창고에 들어갈 때와 소비세창고에서 반출되는 시간 사이에 세율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 세율이 적용됨
- 와인에 대한 소비세율은 와인 1리터당 부과되며 알코올 함량에 따라 다름
 - 와인에 대한 소비세율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매년 4월 1일 조정됨
 - 2022년 4월 1일 조정된 와인에 대한 소비세율은 1.2% 이하의 순수 에틸알코올을 함유한 와인의 경우 1리터당 0.022캐나다달러⁶⁾임
 - 2022년 4월 1일 기준, 1.2% 이상 7% 이하의 순수 에틸알코올을 함유한 와인은 1리터당 0.33캐나다달러⁷⁾임

- 2022년 4월 1일 기준, 순수 에틸알코올 7% 이상 함유한 와인은 1리터당 0.688캐나다달러⁸⁾임

<자료수집 및 조사: 이나현 변호사>

[영국 - 에너지 기업에 25%의 초과이윤세 부과 발표]

- 영국 정부는 2022년 5월 26일,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세율을 기존 40%에 25%를 추가로 부과하는 초과이윤세(Windfall tax)를 발표함⁹⁾
- 초과이윤세(Windfall tax)¹⁰⁾는 정부의 필요성에 따라 일시적으로 추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석유·가스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를 기술혁신 등을 통해 거둔 성과가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규정하면서 초과이윤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임
- 이에 기존의 최고세율인 40%에 25%의 초과이윤세율을 더해, 에너지기업들은 최고 6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됨
 - 2022년 5월 26일 이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될 예정임
- 다만 에너지기업들의 이익 재투자율 유도를 위해 에너지기업의 신규 자본지출에 80%의 세

5) CRA, "Excise Warehouse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edm8-1-1/excise-warehouses.html#_Toc368467224, 검색일자: 2022. 6. 20.

6) 2022년 6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원임

7) 2022년 6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8원임

8) 2022년 6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84원임

9) IBFD, UK Chancellor Announces 25% Windfall Tax on Oil and Gas Companies, 2022. 5.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5-27_uk_2.html, 검색일자: 2022. 6. 14.

10) Windfall tax는 '횡재세'로도 번역됨



금공제 혜택(new Investment Allowance)을 줄 것이라고 밝힘¹¹⁾

■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향후 50억파운드¹²⁾의 추가 세수가 견힐 것으로 예상됨

- 동 추가 재원은 영국의 전력가격 폭등에 따른 가계의 비용 상승분을 보조하여,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계획임

■ 영국 정부는 추후 석유·가스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귀하면 단계적으로 초과이윤세 부과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4일까지 국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음¹⁴⁾

- 동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50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필라2가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전 준비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특히 기존의 계획대로 2023년 상반기부터 필라2를 영국 내에서 이행할 경우, 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지 못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기업 환경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에 따라 영국 재무부는 필라2 이행에 관한 법률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이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겠다는 방침임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영국 - 필라2 이행 연기 발표]

■ 영국 정부는 2022년 6월 14일, 필라2의 자국 내 이행을 2023년 12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발표함¹³⁾

- 이는 기존의 이행 계획이었던 2023년 4월 1일에서 8개월 이상 연기되는 조치임

■ 영국 정부는 필라2 이행과 관련하여 지난 2022년 4월

[룩셈부르크 - DAC7 관련 법안 의회 제출]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22년 6월 13일, DAC7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¹⁵⁾

11) HM Treasury, Policy Paper - Energy Profits Levy Factsheet, 2022. 5. 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st-of-living-support/energy-profits-levy-factsheet-26-may-2022>, 검색일자: 2022. 6. 14.

12) 2022년 6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8조원임

13) IBFD, United Kingdom to Delay Pillar Two Implementation, 2022. 6.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6-15_uk_1.html, 검색일자: 2022. 6. 16.

14) HM Treasury, Closed consultation - Letter from the Financial Secretary to respondents of the OECD Pillar 2 implementation consultation, 2022. 6. 14.,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oecd-pillar-2-consultation-on-implementation/letter-from-the-financial-secretary-to-respondents-of-the-oecd-pillar-2-implementation-consultation>, 검색일자: 2022. 6. 16.

15) Chambre des députés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N 8029, Session ordinaire 2021-2022," https://www.chd.lu/wps/PA_RoleDesAffaires/FTSByteServletImpl?path=0FE98F97FB01089180231E197D501E5F430D0D7CF61A918A3E77D1CF7A12AC666C52070C7AFE6D9831A0CBCFAD4B311353A7FCCC07685F57D7BAAFEBE7B39991, 검색일자: 2022. 6. 21.; IBFD, "Government Submits DAC7 Bill for Parliamentary Approval," 2022. 6.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6-16_lu_1.html, 검색일자: 2022. 6. 21.

- DAC7 지침은 EU 내외에 위치한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에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보 수집·확인·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EU 회원국에게 관련 정보 교환을 강제함¹⁶⁾
 -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정보 수집 및 확인 의무
 -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사용하는 판매자들에 대한 정보보고 의무
-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협동조사(joint audit) 관련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스위스 - '넷플릭스법' 국민유권자 투표 통과]

- 스위스 국민 유권자들은 2022년 5월 15일, 넷플릭스·디즈니와 같은 글로벌 TV스트리밍서비스사가 스위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4%를 현지 영화 제작에 투자하도록 하는 넷플릭스법(Lex Netflix)을 승인함^{17), 18)}
- 스위스 국민 투표자의 58.4%가 찬성하여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글로벌 스트리밍서비스사가 스위스 수익의 4%

이상을 현지영화제작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스위스 연방 문화재청에 납부해야 함

- 매년 스위스에서 발생하는 총수입의 4%를 투자해야 하며, 4년이 지난 후에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연방문화재청에 납부해야 함
- 모금액은 스위스 영화 제작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¹⁹⁾

■ 또한 유럽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스위스 내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함

- EU의 2018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을 좇아 자국법에 반영함
 - 한편 EU회원국은 의무적으로 2020년 9월까지 동 조항을 자국법에 반영해야 했으며, 스위스는 EU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조항을 입법화함

■ 한편 유럽국가들의 '넷플릭스세' 법안 등은 디지털서비스세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디지털 경제의 과세 협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우

16) IBFD, "European Union Introduces New Reporting Obligations for Digital Platforms and Other Amendments to the Exchange of Information (DAC7) - Details," 2021. 3.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3-24_e2_1%23tns_2021-03-24_e2_1, 검색일자: 2022. 6. 29.

17) Tax Notes International, Switzerland's 'Lex Netflix' Tax Law Survives Referendum, 2022. 5. 23.

18) 스위스 연방문화청, Le peuple dit « oui » à la révision de la loi sur le cinéma(영화법 개정예 국민 '찬성'), <https://www.bak.admin.ch/bak/fr/home/creation-culturelle/cinema/referendum-aenderung-filmgesetz.html>, 검색일자: 2022. 6. 27.

19) 스위스 제작 영화는 제작진과 출연진의 총 인원 중 최소 50%가 스위스인으로 구성된 영화를 말함



려도 제기되고 있음²⁰⁾

- OECD/G20 디지털 경제의 과세 협정(필라 1)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는 폐지하기로 약속했으며, 추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음²¹⁾
- 2022년 2월 Tax Notes International에서 국제 세금개발센터(ITCD)의 관계자는 덴마크의 넷플릭스세 및 유럽국가들의 유사한 법안이 필라1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음
 - 덴마크정부는 지난 2월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에 5%의 세금(넷플릭스세)을 도입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포르투갈, 폴란드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존재함

<자료수집 및 조사: 서희진 회계사>

[스페인 - NFT 과세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규칙 발표]

- 스페인 국세청은 2022년 3월 10일 구매자에게 기본 디지털 미술품의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NFT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규칙 binding ruling V0486-22을 발표함^{22), 23)}
- NFT의 공급장소가 스페인 영토로 간주되는 경우 NFT의 판매에 대해 예술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10%의 감면 세율이 아닌, 21%의 일반세

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스페인 국세청은 EU의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제7(1)조에 근거하여 NFT 판매를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로 간주함
- NFT는 일러스트 파일의 물리적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매자에게 개별화된 고유한 디지털 파일에 연결되는 '디지털 정품인증서'임
- 또한 NFT의 판매는 물리적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므로, NFT의 양도를 상품 인도와 같은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와 함께 NFT는 화폐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암호 화폐 및 기타 디지털 통화와 유사할 수 있다는 특성 역시 배제함

- 본 규칙에서 NFT 판매에 스페인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매자의 조건과 위치에 따른 공급장소 규칙도 함께 설명하고 있음
- NFT가 부가가치세 목적의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공급장소는 구매자가 사업체를 설립한 곳이 됨
- 구매자가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이고, 판매

20) Tax Notes International, EU Streaming Levies Aren't Digital Taxes, Official Says(February 21, 2022)

21)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제13차 총회(2021. 10. 8.) 필라 1 최종합의사항 내용에 따름

22) IBFD, "Tax Authorities Classify NFT Sales as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 for VAT Purpos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5-31_es_1, 검색일자: 2022. 6. 21.

23) JDSUPRA, "First Spanish ruling on the VAT treatment of the sale of NFTs(May 17, 2022)," <https://www.jdsupra.com/legalnews/first-spanish-ruling-on-the-vat-8369351>, 검색일자: 2022. 6. 21.

자의 사업체가 스페인에 설립된 경우 공급장소는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사업체가 설립되거나 구매자의 영구 주소가 있거나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됨

- 구매자가 스페인에 거주하는 경우 스페인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구매자가 다른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연도 구매액이 1만유로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한 구매자의 국가 내에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됨을 의미함
- 또한 구매자가 EU 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사용 및 향유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스페인의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서 제외됨

■ 그러나 NFT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구매자의 소재지와 과세대상 거래가 수행되는 장소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 EU 규정 No 282/2011에서 가상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사용하는 장치의 IP 주소 등 고객의 위치 판정에 대한 지침 및 추정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침을 사용하더라도 NFT 판매 시 판매자가 구매자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포르투갈 - 신규 개인소득세 규정 도입]

■ 포르투갈은 2022년 5월 27일 2022년 국가 예산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새로운 개인소득세 규정도 도입됨²⁴⁾

- 개인소득세 관련 조치 외에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2022년 하반기에 형성된 특정 유형자산, 비소모성 생물학적 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비용공제를 허용하고, 산업재산권의 일시적 사용 또는 판매로 인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함²⁵⁾
- 또한 재산양도세의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과세표준이 상향되는 등 과세액 평가기준에 변화가 있었으며,²⁶⁾ 부가가치세 면제 및 감면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도 이루어짐²⁷⁾

■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7개에서 9개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구간이 분화되고 세율이 변화한 구간이 발생함

- 기존 28.5%의 세율이 적용되던 세 번째 구간이 2개로 분화되고 상한액이 20,322유로²⁸⁾에서 19,696유로²⁹⁾로 낮아졌으며, 각 구간에 26.5%

24) IBFD, "Portugal Introduces New Personal Income Tax Rules Following Approval of 2022 State Budget,"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6-02_pt_1, 검색일자: 2022. 6. 20.

25) IBFD, "Portugal Introduces New Tax Credit to Support Recovery of Companies, Confirms Patent Box Regime Chang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6-02_pt_2, 검색일자: 2022. 7. 4.

26) IBFD, "Portuguese Budget Offers Mix of Heavier and Lighter Property Tax Rule Chang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6-03_pt_2, 검색일자: 2022. 7. 4.

27) IBFD, "Portuguese Budget Eases VAT Rules While Aggravating Other Indirect Tax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6-03_pt_1, 검색일자: 2022. 7. 4.

28) 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72만원임

29) 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87만원임



와 28.5%의 세율이 적용됨

- 기존 45%의 세율이 적용되던 여섯 번째 구간도 2개로 분화되고 상한액이 75,009유로³⁰⁾로 낮아졌으며, 각 구간에 43.5%와 45%의 세율이 적용됨
- 이에 따라 48%의 세율이 적용되던 과세표준 최대 구간 역시 80,882유로³¹⁾에서 75,009유로로 낮아짐

■ 부양가족의 범위가 축소되고, 공제한도는 증가함

- 가계를 담당하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사람의 보호를 받으며, 연간 수입이 납세자의 최저 월급보다 높지 않은 만 25세 이하인 자에 한해 세액공제 목적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됨
- 두 번째 부양가족부터는 첫 번째 부양가족의 연령에 관계없이 1~3세는 최대 300유로,³²⁾ 4~6세는 최대 150유로³³⁾로 공제액이 증가함

<표 1> 2022년 스페인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편 내용

기존 ¹⁾			개편 ²⁾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유로)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유로)		
1	7,112유로까지	14.5	0	1	7,116유로까지	14.5	0
2	7,112유로 초과~10,723유로까지	23	604.54	2	7,116유로 초과~10,736유로까지	23	604.86
3	10,732유로 초과~20,322유로까지	28.5	1,194.80	3	10,736유로 초과~15,216유로까지	26.5	980.63
				4	15,216유로 초과~19,696유로까지	28.5	1,284.99
4	20,322유로 초과~25,075유로까지	35	2,515.63	5	19,696유로 초과~25,076유로까지	35	2,565.21
5	25,075유로 초과~36,967유로까지	37	3,017.27	6	25,076유로 초과~36,757유로까지	37	3,066.79
6	36,967유로 초과~80,882유로까지	45	5,974.54	7	36,757유로 초과~48,033유로까지	43.5	5,455.84
				8	48,033유로 초과~75,009유로까지	45	6,176.56
7	80,882유로 초과~	48	8,401.21	9	75,009유로 초과~	48	8,426.51

출처: 1) PwC, Portugal - Individual - "Taxes on personal income," <https://taxsummaries.pwc.com/portugal/individual/taxes-on-personal-income>, 검색일자: 2022. 6. 20.

2) IBFD, "Portugal Introduces New Personal Income Tax Rules Following Approval of 2022 State Budget,"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6-02_pt_1, 검색일자: 2022. 6. 20.

30) 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33만원임
 31) 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034만원임
 32) 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만 9,260원임
 33) 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만 4,630원임

- 주식 등 부동산 외 자산 매각으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해 납세자의 잔여소득 합산과 누진세율 인상, 양도차익금액 평가와 관련한 선입선출(FIFO) 규칙을 적용하는 등 동산 매각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이 적용됨
- 2023년 1월 1일부터 주식 및 기타 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납세자의 잔여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는 기존의 28%³⁴⁾에서 인상된 48%의 누진세가 부과됨
 - 자산의 매각 전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며, 해당 자본이득을 포함한 납세자의 총과세소득이 75,009유로³⁵⁾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됨
- 양도차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신용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선입선출(FIFO) 규칙이 적용됨
 - 이때 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신용기관 및 금융기관은 매각 시 각각의 금액, 취득일, 취득가액 및 매도액 등의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납세자에게 전달해야 함
 - 취득일 및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매각 전 2년간 확인된 가장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기부를 통해 인지세가 면제된 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는 기부 전 최대 2년 이내에 인지세 목적으로 고려되었을 가치에 부합해야 함
- 특정 영업으로 인한 자본손실은 향후 5년 이내에 획득하는 자본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이때 특정 영업에는 ① 주식 및 기타 동산의 매각, ② 양도인이 원 소유자가 아닌 상업, 산업 또는 과학 분야로부터 획득한 지식재산 또는 경험의 매각, ③ 파생금융상품의 운용, ④ 자율신주인수권(autonomous warrants)의 운용, ⑤ 자금을 수령할 권리를 증빙할 수 있는 특정 기초자산의 운용, ⑥ 과세부담이 큰 신용장의 양도 및 추납 등이 포함됨
- 청년근로자 특별세제와 과거 조세 목적 거주자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세제가 확대됨
 - 중등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2년 이후부터 일을 시작한 18~26세 청년근로자는 근로 및 자영업 소득에 대한 부분 비과세 혜택을 선택할 수 있음
 - 본 혜택은 첫 근로 후 5년간 적용되며, 박사과정을 마친 자는 28세까지 선택 기한이 연장됨
 - 부분 비과세 혜택은 첫 2년간 받은 소득의 30%와 이후 2년간 받은 소득의 20% 그리고 마지막 1년간 받은 소득의 10%³⁶⁾에 적용됨
 - 원천징수 세율을 결정할 때에는 비과세 부분을 포함한 소득 전액을 고려하고, 실제 원천징수 시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과세함
 - 2020~2021년에 이미 다른 혜택이 부여된 납세자의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이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
 - 현재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포르투갈에 귀국

34) 조세피난처에 상장된 경우 35%였음

35) 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33만원임

36) 마지막 1년간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경우 상한액이 존재함



한 일부 과세 목적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및 자영업 소득의 50%에 대한 부분적 비과세 혜택을 2021~2023년 귀국자에게까지 확대함

- 비과세 혜택은 ① 이전 3년간 포르투갈의 과세 목적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고, ② 앞서 언급한 3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는 포르투갈의 과세 목적 거주자였던, ③ 세무상의 문제가 없는 자에게 5년간 적용됨
- 원천징수세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부과됨
- 비거주자 과세제도와 중복 혜택이 허용되지 않으며, 2021년 귀국하여 비거주자 과세제도 등록을 요청한 자의 경우 2021년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표시하여 본 세제혜택을 적용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음

- 이 밖에도 환경친화적이라고 판단되는 특정 상품 및 서비스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중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함³⁷⁾

- 세수입 증대 및 국민보건을 위한 수요를 교정할 목적으로 2단계에 걸쳐 인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및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 (주류세) 2017년 이후 첫 세금 인상으로, 맥주와 와인에 대한 소비세를 5%p이상 인상하기로 결정함³⁸⁾

- 맥주와 와인에 대해서 2023년에 5%p, 2024년에 8%p의 소비세를 인상할 계획임
- 기타 주류에 대해서는 2023년에 1%p, 2024년에 추가 1%p의 소비세를 인상할 계획임

- (담배세) 담배세는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에 따라 매년 재계산되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물가지수에 추가 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담배에 대해서 2023년에 3%p, 2024년에 추가 1%p의 소비세를 인상할 계획임
- 전자액체 및 기타 니코틴 함유 제품에 대하여 2024년에 1%p 소비세를 인상할 계획임

<자료수집 및 조사: 이미현 세무사>

[스웨덴 - 소비세법 개정안 발표]

- 스웨덴 정부는 2022년 5월 25일, 주류세 및 담배

[중국 - 차량구치세 감면 발표]

- 중국 재무부는 2022년 5월 31일, 코로나19로 인

37) News IBFD, "Sweden to Increase Excise Duties on Alcohol and Tobacco," 2022. 5.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5-27_se_1.html, 검색일자: 2022. 6. 20.

38) 스웨덴정부, "Regeringen har beslutat om förslag på höjda skatter på alkohol och tobak,"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2/05/regeringen-har-beslutat-om-forslag-pa-hojda-skatter-pa-alkohol-och-tobak/>, 검색일자: 2022. 6. 20.

한 봉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침체된 신차구매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차량구치세(车辆购置税)³⁹⁾ 감면을 발표함⁴⁰⁾

- 중국은 2015~2016년 두 차례 차량구치세 감면을 실시했는데, 이때 총 520만대의 신차구매 효과가 나타났음⁴¹⁾
 - 이번 차량구치세 감면으로 250만대 이상의 신차구매 수요를 창출해 2,000억위안⁴²⁾ 이상의 소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구매 시에만 차량구치세를 절반으로 감면함⁴³⁾
 - 기존에는 옵션 등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액의 10%를 차량구치세로 부과했지만, 이번 발표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구매 시 5%의 차량구치세가 적용됨
 - 일정요건은 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구매가격이

30만위안⁴⁴⁾ 미만, ② 2.0리터 이하의 소형엔진 또는 저공해(low-emission)엔진을 장착, ③ 9인승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승용차임

<자료수집 및 조사: 김치을 연구원>

[인도 - 물가안정을 위한 유류세 등 지원 강화]

- 인도 재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인하함⁴⁵⁾
 - 휘발유는 리터당 8인도루피⁴⁶⁾를, 경유는 리터당 6인도루피⁴⁷⁾를 인하함
 - 이러한 유류세 인하로 인도 정부는 연간 1조인도 루피⁴⁸⁾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인도는 앞선 2021년 11월에 소비증진과 물가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한 차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함

39) 차량구치세란 중국 국내에서 규정된 차량의 구매에 대해서 징수하는 세목으로 행위세에 속하며, 중국 국세청에서 징수 및 관리하고 그 수입은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교통사업 건설 등에 사용됨(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중국편-」, 2009, pp. 278-282.

40) Bloomberg Tax, "China Considers More Electric-Car Tax Exemptions; EV Shares Jump," 2022. 6. 23.,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72D5VPO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b21iZXJnbGF3LmNvbS9wcm9kdWNOL3RheC9zZWYyY2gvcmlvdWw0cy80MTNiNmZmYWM3MjE3OGQ0MzhhYWY1NDYyZmUxOGI5OCJdXQ-54c2dbb894f1853eb2ec7c300e78133edbf67b64&criteria_id=413b79fac72178d438aaf5462fe18b98&search32=CocN1QmdTuosGjQvBnerLQ%3D%3DHkP Ntf0FlgH4lmRGxBJnsBNfZtTzc-AKObvwoiWbw8GurG_dg29TfBh-z9aDpbETnQGC4Siy4IFKPEyQGMOurS8CVax99pWLqMMsKXzuuXze4gKmd2CZgTmrX2dcwVdoGy168ojgAuZnY-pKtVFN8XZbZTpDulrO2JIDZvd_ocqGUpFk5XJi1xLU_49k40w, 검색일자: 2022. 6. 29.

41) Bloomberg Tax, "China Automakers Join Government With Incentives to Boost Sales," 2022. 6. 2.,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RCTUO6T1UM0W>, 검색일자: 2022. 6. 29.

42) 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조 4,980억원임

43) IBFD, "China to Halve Purchase Tax on Small-Engine Vehicles," 2022. 6.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6-01_cn_1.html, 검색일자: 2022. 6. 22.

44) 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75만원임

45) Kiarra M. Strocko, "India Clarifies Income Tax Exemption For Investment Funds," taxnotes international Volume 106, Number 9, p. 1183.

46) 2022년 06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2.32원임

47) 2022년 06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9.24원임

48) 2022년 06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조 5,404억 8,765만원임



- 당시에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는 리터당 5인도루피,⁴⁹⁾ 경유는 리터당 10인도루피⁵⁰⁾를 인하함

■ 또한 인도 정부는 현지 시장수요에 대한 원자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연탄, PCI 석탄 및 코킹 석탄에 대한 수입관세를 폐지함⁵¹⁾

<자료수집 및 조사: 권순오 세무사>

[싱가포르 - GST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 협의 개시]

■ 싱가포르 국세청은 2022년 6월 13일, 2022년 예산안 및 정기검토 등에서 건의된 GST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 협의를 개시함⁵²⁾

- 예산안에 포함된 GST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⁵³⁾
 - 기존 세율 7%에서 2023년에는 8%로 1%p 인상하고, 2024년에는 9%로 기존 세율 대비 2%p 인상함
 - 여객의 국제적 운송 및 관련 보험, 숙박 등의 제공 또는 예약 등 여행 관련 서비스(travel

arranging services)가 계약(contractually)에 의하여 싱가포르 GST법에 등록된 개인 또는 싱가포르 국외에 소속된 개인에게 직접 혜택(directly benefit)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zero-rating)을 적용함

- 정기검토 등에서 건의된 비예산안에 포함된 GST법 개정안은 MTF(Missing Trader Fraud)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내용 외에는 GST법을 명확화(clarity)하기 위한 내용임⁵⁴⁾

- MTF는 신디케이트⁵⁵⁾가 사용하는 사기수법으로, 판매자가 싱가포르 국세청에 GST를 지급하지 않고 환급을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싱가포르 국세청은 MTF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할 예정임

- 새로운 형사처벌은 2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세수손실(loss of public revenue)을 초래하거나 야기하는 주모자(masterminds), 공모자(conspirators)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2단계는 이러한 사기수법을 실시한 사업체와 특수관계자를 처벌하는 규정임⁵⁶⁾

49) 2021년 11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9.3원임

50) 2021년 11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8.6원임

51) REUTERS, "Indian government trims tax on fuel, essential commodities to fight inflation,"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n-government-trims-tax-fuel-fight-inflation-2022-05-21/>, 검색일자: 2022. 6. 15.

52) MOF, "Public Consultation on Draft Goods and Services Tax(GST) (Amendment) Bill 2022," 2022. 6. 13., [https://www.mof.gov.sg/news-publications/public-consultations/public-consultation-on-draft-goods-and-services-tax-\(gst\)-\(amendment\)-bill-2022](https://www.mof.gov.sg/news-publications/public-consultations/public-consultation-on-draft-goods-and-services-tax-(gst)-(amendment)-bill-2022), 검색일자: 2022. 6. 22.

53) IBFD, "Singapore Announces Details of GST Hike and Raises Property, Vehicle and Carbon Taxes in Budget 2022," 2022. 2.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2-25_sg_4%23tns_2022-02-25_sg_4, 검색일자: 2022. 6. 29.

54) IBFD, "Singapore Launches Public Consultation on Proposed Amendments to Goods and Services Tax Act," 2022. 6.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6-16_sg_1.html, 검색일자: 2022. 6. 22.

55) 신디케이트(syndicate)란, 기업 독점 형태의 하나로 몇 개의 기업이 하나의 공동 판매소를 두고 가맹 기업의 제품을 공동 판매 또는 공동 구입을 하는 조직을 말함

56) 1단계에서 유죄 성립 시 최고 50만싱가포르달러(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 6,768만원임)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고, 2단계에서 유죄 성립 시 최고 5만싱가포르달러(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676만원임)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됨

- 공개 협의는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치울 연구원>

[뉴질랜드 - 2022/23 예산안 발표]

■ 뉴질랜드 정부는 2022년 5월 19일,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Wellbeing Budget 2022 - A Secure Future) 및 경제·재정 전망 보고서를 발표함⁵⁷⁾

- 2022/23 예산안은 생활물가 안정화, 보건시스템 개편, 기후위기 대응, 기업성장 지원, 마오리·퍼시픽계 지원 등 5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함

■ 다만 금번 예산안에는 조세 관련 정책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으며, 주로 재정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되었음⁵⁸⁾

-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및 공급망 차질 등

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간 연장하는 등 총 10억뉴질랜드달러⁵⁹⁾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함

-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3월 14일, 유류세를 3개월간 리터당 25센트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하 바 있음⁶⁰⁾

- 이외에도 연소득이 7만뉴질랜드달러⁶¹⁾ 미만인 성인을 대상으로 1인당 350뉴질랜드달러⁶²⁾의 한시적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재정 관련 정책이 포함됨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EU - 글로벌 최저한세 최종합의 실패]

■ 유럽연합 경제금융이사회(ECOFIN)는 2022년 6월 17일, 헝가리의 반대로 글로벌 최저한세 지침에 대한 최종합의가 무산됨⁶³⁾

57) New Zealand Government, Wellbeing Budget 2022 - A Secure Future, <https://budget.govt.nz/budget/2022/wellbeing/index.htm>, 검색일자: 2022. 6. 15.

58) IBFD, New Zealand 2022/23 Budget Adjusts for Cost-of-Living Amid Inflation, Continues R&D Tax Funding, 2022. 5.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5-19_nz_1.html, 검색일자: 2022. 6. 16.

59) 2022년 6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시 약 8,100억원임

60) Bloomberg Tax, New Zealand Cuts Fuel Tax to Temper Surging Gasoline Prices, 2022. 3. 14.,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E1O9GFC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l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mVbS9wcm9kdWNOL3RheC9zZWZyY2gvcmluZD00cy85NTM0OWFky2MzMDg3ZjM5NjMxZmYyYjhhOTIwOGQ4ZCJdXQ-77f8b8ea9740c1e198c99eced1f363805b07a534&criteria_id=95349adcc3087f39631ff2b8d9208d8d&search32=JTJe31W6jx4aQDcx06dMw%3D%3D0sC6QoeRFZ_hC7wx_RcUHeUA7pxd1QhECNP_2zvZd96dEAnmpLCBYtWc3lmgDnO-900EftYawebAQsrmUspahDvSgo-CMxVyydJhkQI0132DFhSDelq1YuuGeVnRetHeakRib0r70mdE2PlrX0khc9iHzw83TBhu3EqojoQPb9xPnri4h3Xbmv9W-rC7zHu3GGg5eVA6d95h7Gk9cxVzRlsKMBY0Kzci9KsMAFmlsdaCUTVXeVeYEBafujhp0L7oCBa_DHtR1lJlilGRpMQPepBPXOWU1FEMrBKL9QSGRprcr8WpW3SPcKyRYGvQX5B_xFsbEX9qkX3-QY9cfDxZ6Tepe5slBK2p2FHxw9UescVHg7_98LdD6cGp1O_hxPEH0QUHRLvmko1z2LeQiqUkt2ax2RW1wSMD1pv0jir3VvEm6h89amQy5KuV-zvgVkivn-Ze9WU5HuD67OYsRwxVIOGgrzBO31sDb3-0Vs9eHc%3D, 검색일자: 2022. 7. 4.

61) 2022년 6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시 약 5,700만원임

62) 2022년 6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시 약 283,490원임

63) IBFD, "Hungary Opposes Minimum Taxation Directive during ECOFIN but French Presidency Is Still Determined to Reach an Agreement,"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6-17_e2_4.html, 검색일자: 2022. 6. 21.



- EU 내 글로벌 최저한세 지침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함

-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기 우려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EU 글로벌 최저한세 지침 상 문구(text)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부 사유를 밝힘

- ECOFIN 현재 의장은 EU 내 글로벌 최저한세 지침에 대한 헝가리의 거부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차기 의장 역시 합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힘

<자료수집 및 조사: 서희진 회계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 EU 집행위, 2023년 EU 예산안 발표(2022. 6. 7.)¹⁾
 - (방향) 2023년 예산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촉진하고 유럽을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끌며 일자리를 보호·창출하고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유럽 및 인접국의 시민·기업·피해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단일시장 강화, 미래지향적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
 - 이와 동시에 유럽 녹색협약 등 유럽의 정치적 우선순위를 계속 지원
 - EU 집행위원장이 EU의 6가지 주요 목표로 제시한 ① 유럽 녹색협약, ②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럽, ③ 모두를 위한 경제, ④ 유럽식 생활 방식의 증진, ⑤ 세계에서 더 강한 유럽, ⑥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이행
 - (규모²⁾) 2023년 EU 예산안으로 승인기준 1,856억

유로, 지급기준 1,663억유로를 편성

- 전년 대비 승인기준으로는 2.1% 증가, 지급기준으로는 2.6% 감소
- 정확한 수요 평가를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에 대한 추가 지출안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
- 여기에 더해 최대 8,070억유로의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중 대출을 제외한 보조금 운용안도 함께 편성되어 2023년 1,139억 유로가 추가 지원될 예정
- (주요 내용³⁾)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분야에 216억유로, 결속, 회복력 및 가치분야에 700억 유로 등을 편성
 - (Heading 1-연구 및 혁신) EU의 핵심 연구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⁴⁾에 123억유로(NGEU에서 18억유로 추가 보조) 등 136억유로 편성
 - (Heading 1-유럽 전략적 투자) InvestEU⁵⁾ 3억 유로(NGEU에서 25억유로 추가 보조), 유럽 연결 시설(Connecting Europe Facility)⁶⁾ 29억유로, 디지털 유럽(Digital Europe)⁷⁾ 13억

1) EU 집행위, EU budget 2023: Empowering Europe to continue shaping a changing world, 2022. 6. 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3473, 검색일자: 2022. 6. 20.; _____, Questions and answers: Draft annual budget 2023, 2022. 6. 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3474, 검색일자: 2022. 6. 20.; _____, Statement of estimat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financial year 2023, 2022.,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about_the_european_commission/eu_budget/wd_0_final_web_v4_kvao22002enn.pdf, 검색일자: 2022. 6. 20.

2) 승인기준(commitments)은 특정 프로젝트, 계약, 연구 등을 위해 승인된 해 혹은 그 이후에 지급하기 위한 법적 약속을 의미. 지급기준(payments)은 주어진 해에 실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

3) 승인기준 금액

4) 기후 변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지원, EU의 경쟁력 및 성장 촉진 등을 위해 기후 변화 적응, 암, 해양과 강 복원, 기후 중립 및 스마트 도시, 토양 회복 등 5개 부문에 대한 연구를 지원

5) 연구 및 혁신, 그린 및 디지털 전환, 보건 분야, 전략 기술 관련 프로그램

6) EU 회원국 간의 교통, 에너지, 디지털 등 세 부문의 유럽 내 연결성을 강화하는 인프라 투자

7)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디지털 기술 강화,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을 지원



- 유로 등 48억유로 편성
- (Heading 2-지역 개발 및 결속) 경제, 사회, 지리적 통합과 친환경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461억유로 편성
- (Heading 2-회복 및 복구) 팬데믹 경제 회복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문제 대응을 위해 NGEU에서 회복복구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⁸⁾에 1,035억유로 지원
- (Heading 2-사람, 사회적 결속 및 가치) 교육 이동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Erasmus+⁹⁾에 35억

- 유로, 유럽 전역의 예술가와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Creative Europe¹⁰⁾에 3억유로, 정의, 권리 및 가치 증진을 위해 2억유로 등 48억유로 편성
- (Heading 3-농수산업정책) 유럽 농어민 지원, 농수산 부문 회복력 강화, 글로벌 식량 공급 위기 관리를 위해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¹¹⁾에 536억유로, 유럽해양양식기금(European Maritime, Fisheries and Aquaculture Fund)에 11억유로 등 549억유로 편성

<표 1> 2023년 EU 예산안과 NGEU 기금안

(단위: 백만유로, %)

구분	승인기준			지급기준		
	금액	전년대비 변화율(%)	Next Generation EU	금액	전년대비 변화율(%)	Next Generation EU
1.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21,568	-1.0	4,299	20,901	-2.7	2,983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70,087	3.6	104,149	55,841	-10.0	125,109
2.a. 경제·사회·지역적 통합	62,923	2.6	3	49,131	-12.8	15,532
2.b. 회복력 및 가치	7,164	13.2	104,146	6,709	17.7	109,577
3. 천연자원 및 환경	57,223	1.0	5,472	57,445	1.5	2,597
4. 이주 및 국경관리	3,727	10.9	-	3,067	-5.7	-
5. 안보 및 국방	1,901	4.9	-	1,111	-10.2	-
6. 파트너 및 세계	16,782	-2.3	-	13,774	6.6	-
7. 유럽 공공 행정	11,449	7.8	-	11,449	7.8	-
기타 특수 기금	2,855	2.0	-	2,680	2.2	-
합계 (EU27 GNI 대비 %)	185,591 (1.14%)	2.1	113,921	166,268 (1.02%)	-2.6	130,689

출처: EU 집행위, *Statement of estimat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financial year 2023*, 2022, Policy highlights, pp. 12~15, 99~100.

8) EU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인 Next Generation EU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6,725억유로(2018년 불변 가격), 7,238억유로(경상 가격) 규모 자금을 회원국에 보조금과 대출 형식으로 지원. 회원국들이 수행하는 개혁 및 공공투자에 대규모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녹색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잘 대비하도록 함

9) 교육, 훈련, 청소년 및 스포츠 분야의 인력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10) 유럽의 문화적·언어적 다양성과 문화유산을 보호·발전시키고 문화·창조 분야의 경쟁력과 경제적 잠재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11) 농민 소득 지원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직불금 지원, 농촌 개발, 시장 조치를 시행하는 프로그램

- (Heading 6-대의 정책) 인근국 지원, 개발원 조 및 국제협력(NDICI) 120억유로, 인도적 지원 16억유로 등 143억유로 편성
- (향후 일정) 집행위가 이사회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사회와 의회(7월), 의회의 공식 입장 발표(가을)가 이뤄지며, 이사회와 의회의 입장 조정을 위한 위원회가 10월 25일~11월 14일, 21일간 열릴 예정

■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개최(2022. 6. 9.)¹²⁾

- 전쟁의 영향으로 에너지 및 식품 물가가 급증하면서 5월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했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확대·강화됨
 - 인플레이션 전망이 2022년 6.8%, 2023년 3.5%, 2024년 2.1%로 모두 3월 전망¹³⁾(각각 5.1%, 2.1%, 1.9%)보다 상승
 -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도 2022~2024년 각각 3.3%, 2.8%, 2.3%로 3월 전망(각각 2.6%, 1.8%, 1.9%)보다 상승
- 기 발표¹⁴⁾한 바와 같이 자산매입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의 순매입을 7월 1일 종료하고 긴급매입프로그램(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 순매입은 2024년 말까지 재투자할 계획

-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0.0%, 한계대출금리 0.25%, 수신금리 -0.50%)를 0.25% 인상할 예정이며, 이는 2011년 7월¹⁵⁾ 이후 11년 만의 인상임
-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지속되거나 더 악화된다면 9월에 더 큰 폭의 인상(a larger increment)이 적절하다고 발표



IMF

■ IMF와 아르헨티나 당국, 확대 신용 금융에 따른 첫 번째 검토 합의(2022. 6. 8.)¹⁶⁾

- IMF와 아르헨티나 당국은 아르헨티나의 30개월 확대 신용 금융(EFF)¹⁷⁾ 협정에 따른 첫 번째 검토에 대해 합의함
 - 이 합의는 IMF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검토가 완료되면 아르헨티나는 약 40억 3,000만달러(30억 SDR)를 인출할 수 있음
 - 아르헨티나는 2022년 1분기의 모든 양적 프로

12)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2. 6. 9.,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2/html/ecb.mp220609-122666c272.en.html>, 검색일자: 2022. 6. 20.; _____, Press conference, 2022. 6. 9., <https://www.ecb.europa.eu/press/pressconf/2022/html/ecb.is220609-abe7c95b19.en.html>, 검색일자: 2022. 6. 20.

13) 유럽중앙은행, Combined monetary policy decisions and statement, 2022. 3. 10., <https://www.ecb.europa.eu/press/pressconf/shared/pdf/ecb.ds220310-c4c5a52570.en.pdf>, 검색일자: 2022. 6. 20.

14) 자산매입프로그램을 조기 종료하기로 결정한 3월 통화정책회의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3월호, 2022를 참고 바람

15) 유럽중앙은행, Key ECB interest rates,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2. 6. 20.

16) IMF staff and Argentine Authorities Reach Staff-Level Agreement on the First Review Under the Extended Fund Facility Arrangement,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6/08/pr22189-argentina-imf-and-reach-staff-level-agreement-on-the-first-review>, 검색일자: 2022. 6. 9.

17) EFF(Extended fund Facility, EFF),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심각한 중기적 국제수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 쿼터의 연간 145%로 제한되며(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2021년 말까지 쿼터의 245%로 일시적 증가) EFF에 따라 인출된 금액은 4~10년에 걸쳐 12회 균등분할 상환하게 됨



그럼 목표를 달성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성장 강화 개혁도 진행 중임

- 약정 승인 시 설정된 연간 목표, 특히 재정적자, 통화 자금 조달 등과 관련된 목표 변경은 없을 것이며, 아르헨티나는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정책을 시행할 예정

- 국내 폐소 자금 조달, 조세 시스템 준수 강화, AML/CFT¹⁸⁾ 프레임워크 강화, 전략적 부문에 대한 투자 장려 조치 등

- 아르헨티나는 2022년 재정 목표인 GDP의 2.5%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한편, 약정 승인 시 계획대로 통화 자금 조달을 GDP의 1%로 낮출 계획임

■ IMF 집행이사회, 감비아에 672만달러 지출 승인 (2022. 6. 10.)¹⁹⁾

- IMF 집행이사회는 감비아에 대한 확장 차관 제도(ECF)²⁰⁾ 계약에 따른 네 번째 검토를 완료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해결하며 팬데믹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감비아에 500만SDR(약 672만달러)의 즉시 지출을 승인
- 감비아에 대한 ECF 협정은 2020년 3월 23일

IMF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초기 총 접근액은 3,500만SDR(쿼터의 56.3%)에서 5,500만SDR(쿼터의 88.4%)로 확대됨

- 또한 2020년 4월 15일에 1,555만SDR의 IMF 신속금융지원금(Rapid Credit Facility, RCF)²¹⁾의 혜택을 받았으며 CAC(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²²⁾에 따라 총 790만SDR의 채무 탕감을 받음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감비아 경제는 2021년에 4.3% 성장했으며 2022년에는 5.6% 성장할 것으로 예상

■ IMF 집행위원회, 바베이도스 EFF 마지막 검토 완료(2022. 6. 16.)²³⁾

- IMF 집행위원회는 바베이도스 당국과 일곱번째이자 최종 EFF(Extended Fund Facility) 검토를 마침
- 검토가 완료되면 바베이도스는 1,700만 SDR(약 2,300만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 가능하게 되며, 총지출액은 4년 연장 약정의 총액인 3억 2,200만SDR(약 4억 3,500만달러)이 됨

18) AML(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테러자금조달금지)

19) IMF, "Executive Board Completes Fourth Review under the Extended Credit Facility Arrangement for The Gambia and Approves US\$ 6.72 Million Disbursement,"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6/10/pr22194-Gambia-IMF-Executive-Board-Completes-Fourth-Review-under-ECF>, 검색일자: 2022. 6. 13.

20) Extended Credit Facility, ECF. 저소득국가를 위한 IMF의 양허성 차관제도 중 하나로 국제수지 적자를 보정해 줌

21) 긴급한 국제수지요구에 직면한 저소득 국가(LIC)에 신속한 양허적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22) 재해예제 및 부채경감 기금. IMF가 재난적 자연재해나 공중보건 재해로 타격을 입은 취약한 국가에 채무구제를 위한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채무 서비스 상환 완화를 통해 재해로 인한 예외적인 국제 수지 요구를 충족하고 억제 및 복구에 필요한 추가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2015년 2월 에볼라 발생 당시 설립되어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 수정된 CCRT는 빈곤 감소 및 성장 신탁(PRT)을 통해 IMF 양허적 대출을 지원

23) IMF, "Executive Board Completes the Seventh and Last Review under the IMF's Extended Fund Facility with Barbados,"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6/16/pr22205-barbados-imf-executive-board-completes-the-7th-and-last-review-under-the-imfs-eff>, 검색일자: 2022. 6. 17.

- 어려운 글로벌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바베이 도스는 4개년 프로그램에 따라 개정된 증양은 행법 도입, 국유기업(SOE) 개혁, 관세청 개혁, 2018년과 2019년의 포괄적인 국가 부채 구조 조정 등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과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음

- IMF 집행위원회, 소말리아에 대한 확대 차관 제도에 대한 2차 및 3차 검토 완료(2021. 6. 17.)²⁴⁾
 - IMF는 소말리아의 ECF에 대한 두 번째 및 세 번째 검토를 완료하고 1,400만SDR(약 1,880만 달러)의 즉시 지출을 승인하여 ECF(Extended Credit Facility) 및 EFF(Extended Fund Facility)에 따른 소말리아의 총 지출은 2억 7,140만SDR(약 3억 8,430만달러)이 됨
 - 소말리아의 ECF 협정은 2020년 3월 25일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ECF와 EFF에 따른 3년 혼합 협정의 일환으로 ECF에서는 2억 5,286만SDR(쿼터의 155%), EFF에서는 3,957만SDR(쿼터의 24%)의 인출이 가능함
 - 지난 18개월 동안 소말리아의 IMF 지원 프로그램은 국내 세입 강화, 공공 재정 관리 강화 및 중

앙은행 역량 강화, 거버넌스 강화를 포함한 주요 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음



■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2 발표 (2022. 6. 8.)^{25), 26)}

- (세계경제전망) 세계 GDP 성장률은 2022년 3.0%, 2023년 2.8%로 전망되며, OECD 평균 물가 상승률은 2022년 8.5%, 2023년 6.0%로 예상됨
 -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zero-COVID policies)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식품 및 에너지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2022년 세계 GDP 성장률은 2021년 11월 전망대비 1.5%p 하향, 2022년 OECD 평균 물가 상승률은 2021년 11월 전망대비 4.3%p 상향 조정되었음
- (주요국 경제전망) 러시아 대외무역 의존도, 각 국가별 원자재 생산 여부 등에 따라 경제충격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전망

24) IMF, "Executive Board Completes the Second and Third Reviews of the Extended Credit Facility for Somalia,"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6/20/pr22215-somalia-imf-executive-board-completes-second-and-third-reviews-of-ecf>, 검색일자: 2022. 6. 20.
 25) OECD,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2 Issue 1: Preliminary version*, OECD Publishing, Paris, 2022., 2022. 6. 8., <https://www.oecd-ilibrary.org/sites/62d0ca31-en/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62d0ca31-en>, 검색일자: 2022. 6. 20.
 26) OECD는 일반적으로 3월과 9월에 중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5월과 11월에 정식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경제전망보고서는 세계 및 주요국의 경제 동향 및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재정동향은 1장 "General 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문 보고서 및 추후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본을 참고 바람



-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조치로 공급 차질 심화, 유가상승,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요인이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성장률은 2022년 2.5%, 2023년 1.2%로 전망
- (일본) 2022년 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오미كرون) 확산, 약한 외부수요, 주요 원자재 수입가격의 상승 등이 단기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에 따른 민간소비의 반등에 힘입어 경제성장

- 률은 2022년 1.7%, 2023년 1.8%로 예상됨
- (유로지역)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 둔화로 각각 2.6%, 1.6%로 전망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조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추가 자극을 가하고 실질가계소득과 기업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음
-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 2023년 2.5%로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며,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으나 민간소비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세계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13~2019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1 Q4	2022 Q4	2023 Q4
실질 GDP 성장률 ¹⁾								
세계 ²⁾	3.3	-3.4	5.8	3.0	2.8	4.3	1.9	3.0
G20 ²⁾	3.5	-3.0	6.2	2.9	2.8	4.3	1.9	2.9
OECD ²⁾	2.2	-4.6	5.5	2.7	1.6	4.8	1.5	1.6
미국	2.4	-3.4	5.7	2.5	1.2	5.5	1.2	0.7
유로 지역	1.9	-6.5	5.3	2.6	1.6	4.6	1.2	1.8
일본	0.8	-4.6	1.7	1.7	1.8	0.3	2.5	0.9
한국	-	1.3	4.1	2.7	2.5	-	-	-
Non-OECD ²⁾	4.3	-2.3	6.1	3.3	3.8	3.8	2.3	4.2
중국	6.8	2.2	8.1	4.4	4.9	3.9	4.9	4.5
인도 ³⁾	6.8	-6.6	8.7	6.9	6.2	-	-	-
브라질	-0.4	-4.2	5.0	0.6	1.2	-	-	-
실업률 ⁴⁾	6.5	7.1	6.2	5.2	5.3	5.5	5.3	5.3
인플레이션 ^{1), 5)}	1.7	1.5	3.7	8.5	6.0	5.2	8.9	5.2
재정수지 ⁶⁾	-3.2	-10.4	-7.4	-5.0	-3.8	-	-	-
세계 실질 무역성장률 ¹⁾	3.4	-8.1	10.0	4.9	3.9	8.5	2.6	4.1

주: 1) % 변화

2) 구매력을 감안한 명목 GDP의 가중평균(moving nominal GDP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ties)

3) 회계연도 기준

4) 노동인구 대비 %

5) 민간소비가치출 디플레이터(private consumption deflator)

6) GDP 대비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10 database;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2. 6., Table 1.1. 재구성

- 높은 면역수준, 거리두기 해제, 추경의 효과, 가계저축률 정상화에 따라 민간소비가 회복될 전망이며, 핵심 산업의 대규모 투자와 수출 등으로 기업 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내수시장의 하방위험으로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상승, 예상보다 높은 금리 인상 등을 지적
- (중국)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엄격한 조치 및 강화된 규제, 부동산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4.4%, 4.9%로 예상
- (주요 경제지표 전망) 세계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교역 또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물가)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의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어 2023년 OECD 국가의 인플레이션은 2021년 12월 전망치 대비 2배 수준인 8.5%로 전망
 - (고용) OECD 국가들의 실업률은 지난 2022년 5.2%, 2023년 5.3%로 전망되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
 - 일부 국가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팬데믹 이후 국제 이주가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높은 인플레이션은 실질 임금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역) 중국의 봉쇄조치, 유럽의 수요 둔화, 미국의 소비전환(재화에서 서비스로)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세계 실질 무역성장률이 4.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재정수지)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2년 -5.0%, 2023년 -3.8%로 예상됨
- (주요국 재정 전망) 각 국가별 재정건전화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재검토되고 있으며, 팬데믹 관련 지원조치는 점차 철회되고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미국) 가계와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지출로 2021년 종료된 팬데믹 관련 지원조치의 효과 일부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긴축 재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022년 및 2023년 재정수지는 각각 GDP의 -6.7%, GDP의 -5.3%로 전망됨
 - (일본) 재정 및 통화지원 정책을 유지 할 예정이며, 재정수지는 2022년 GDP의 -6.9%, 국가채무는 GDP 대비 244.7%로 전망됨
 - (영국) 2021년 말 코로나19 재정지원 조치가 단계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적절한 재정지원과 점진적인 재정긴축 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2022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5.3%, 국가채무는 GDP 대비 139.2%로 전망
 - (유로지역) 유로 지역 내 국가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2022년 재정기조는 대체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함
 - 팬데믹 대응 조치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부터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국가



들은 추가 재정지원을 도입하고 있음

- (독일) 재정적자는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에 대한 단기 보조금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지원 프로그램은 6월 말 단계적으로 중단되나 에너지 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GDP의 약 1.1% 수준의 지원 조치)가 2022년 추경에 포함될 예정
- (한국)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를 통화정책 목표로 해야 하며, 보편적 재정지원을 축소하고 취약계층 등을 위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

- 2022년 및 2023년 재정수지는 각각 -2.5%, -1.9%로 예상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4.8%, 2023년 3.8%, 일반정부 총채무는 2023년 GDP의 51.1%로 증가할 전망
- (중국) 세금 삭감 및 예비비(reserve funds) 지출의 형태로 재정정책은 보다 확장적일 것으로 예상됨
- (리스크 요인)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및 장기화, 통화긴축으로 인한 금융시장 및 신흥국의 취약성 노출 등 위험요인이 존재
- (정책권고) 백신 및 식량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거시여건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등을 권고함
- (코로나19) 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지원을 통해 신규 변이바이러스 확산 가능성 차단, 식량 공급관련 물류 장벽 완화 및 국제원조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
- (물가) 기대인플레이션의 관리를 목표로 하고, 각 국가별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여건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의 강도와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재정) 재정적 지원 정책은 유연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경제회복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함
 -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탄소중립으로 전환, 높은 에너지 가격 등의 영향에 대응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이후 부채상환의 부담이 늘어 공공

<표 3> OECD 주요국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재정수지					
미국	-6.4	-15.4	-11.8	-6.7	-5.3
일본	-3.0	-9.0	-5.7	-6.9	-4.6
영국	-2.3	-12.8	-8.3	-5.3	-4.1
유로지역	-0.7	-7.1	-5.1	-4.1	-3.0
프랑스	-3.1	-8.9	-6.4	-5.4	-4.7
독일	1.5	-4.3	-3.8	-3.4	-1.8
중국	-3.7	-6.9	-6.6	-6.5	-6.6
한국	1.0	-2.3	-3.0	-2.5	-1.9
국가채무					
미국	108.6	134.1	127.6	126.1	126.8
일본	223.5	240.9	240.5	244.7	244.7
영국	118.5	149.1	143.1	139.2	138.6
유로지역	103.1	121.1	115.7	115.0	114.0
프랑스	97.3	114.7	112.6	114.1	114.9
독일	58.8	68.9	69.5	70.5	69.6
중국	-	-	-	-	-
한국	44.2	45.4	47.9	49.9	51.1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2. 6., Ch.3의 국가별 경제 및 재정전망 표 재구성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재정프레임워크를 통한 공공지출에 대한 개혁이 필요

- (에너지 및 기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공급망 체계 구축 등이 필요

■ 2022년 OECD 각료이사회²⁷⁾ 회의 개최(2022. 6. 9. ~ 10.)^{28), 29)}

- ‘우리가 원하는 미래: 다음 세대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더 나은 정책(The Future We Want: Better Policies for the Next Generation and a Sustainable Transition)’을 주제로 개최됨
- 각료 성명이 채택되고 OECD 탄소 저감 접근에 대한 포괄적 포럼(IFCMA)³⁰⁾이 출범함



미국

■ 예산·결산 등

■ 의회예산처(CBO), 2022~2032 예산기준선 수정

전망(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2 to 2032) 발표(2022. 5. 25.)³¹⁾

- (재정수지) '22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63% (1.7조달러) 감소한 약 1.0조달러(GDP 대비 4.2%)로 전망
- 올해('22)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작년('21) 7월 전망 대비 2022~2031 기간의 총누적 재정적자는 확대(\$12.1조 → \$14.5조) 전망
- 한편 재정적자 감소는 코로나19 대응 지출의 감소와 수입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규모 약 1.6조달러 전망
- (수입) '22년 연방수입은 전년대비 19.5%(7,890억 달러) 증가한 4.8조달러 전망(GDP 대비 19.6%)
- 수입 증가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되나, 수입증가율은 GDP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GDP 대비 수입 비중은 올해('22년) 19.6% → '25년에는 17.6%로 감소 전망
- 한편 2017 세금감면법(P.L. 115-97)의 많은 조항들이 '25년에 만료되면서 개인소득세율, 법인세율 등이 기존체제로 복귀함에 따라 이후 연도를 기점으로 GDP 대비 연방수입은 재차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27) OECD 각료 이사회는 38개 회원국 최고위급 포럼으로 국제기구 대표, OECD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의 재무·경제·외교장관급 각료들이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고 1년 동안 OECD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연례행사임

28) OECD 각료이사회, <https://www.oecd.org/mcm/>

29) OECD 각료이사회 회의 결과, 2022. 6. 10., <https://www.oecd.org/newsroom/oecd-2022-ministerial-statement-and-outcomes.htm>, 검색일자: 2022. 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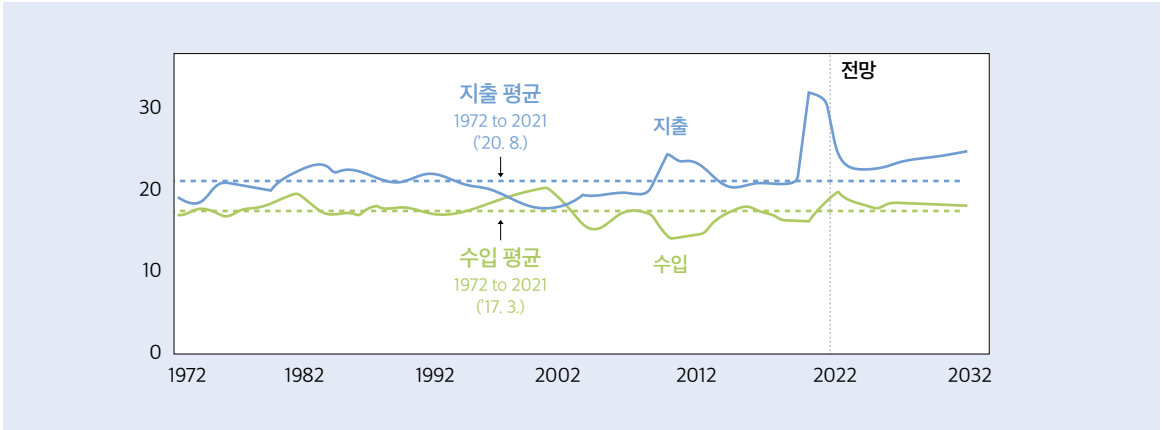
30) OECD 탄소 저감 접근에 대한 포괄적 포럼(The OECD's 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IFCMA)은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G20-OECD의 포괄적 프레임 워크의 성공 모델을 기본으로 다자간 정보 교환이 용이하고, 탄소완화 및 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됨

31)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2 to 2032*, 2022. 5., <https://www.cbo.gov/publication/57950>, 검색일자: 2022. 6. 15.



[그림 1] 미국 연방정부 수입/지출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2 to 2032*, 2022. 5. 25.

<표 4> 미국 예산 전망 비교 - OMB 예산안(3월) vs CBO 기준선(5월)

재정 전망	실적		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	2031	2032	
예산총량(십억달러)												
수입	OMB	3,421	4,047	4,437	4,638	4,874	5,076	5,406	5,696	...	6,795	7,083
	CBO			4,836	4,890	4,924	4,982	5,280	5,548	...	6,402	6,662
지출	OMB	6,550	6,822	5,852	5,792	6,075	6,406	6,734	7,048	...	8,477	8,867
	CBO			5,872	5,874	5,980	6,300	6,643	6,958	...	8,469	8,915
재정 적자	OMB	3,129	2,775	1,415	1,154	1,201	1,330	1,328	1,352	...	1,682	1,784
	CBO			1,036	984	1,056	1,318	1,364	1,409	...	2,067	2,253
연방 채무 ¹⁾	OMB	21,017	22,284	24,836	26,033	27,271	28,644	29,988	31,368	...	37,727	39,542
	CBO			24,173	25,193	26,217	27,561	28,925	30,326	...	37,949	40,213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OMB	16.3	18.1	18.3	18.1	18.3	18.3	18.7	18.9	...	19.1	19.1
	CBO			19.6	18.6	18.0	17.6	18.0	18.3	...	18.1	18.2
지출	OMB	31.2	30.5	24.1	22.7	22.8	23.1	23.3	23.4	...	23.9	23.9
	CBO			23.8	22.4	21.9	22.3	22.7	22.9	...	24.0	24.3
재정 적자	OMB	14.9	12.4	5.8	4.5	4.5	4.8	4.6	4.5	...	4.7	4.8
	CBO			4.2	3.8	3.9	4.7	4.7	4.6	...	5.9	6.1
연방 채무 ¹⁾	OMB	100.1	99.6	102.4	101.8	102.2	103.1	103.7	104.3	...	106.3	106.7
	CBO			97.9	96.0	96.1	97.5	98.8	100.0	...	107.5	109.6

주: 1) 연방채무는 정부 내부거래를 제외한 채무 규모를 의미

출처: OMB,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2. 3. 28., Table S-3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2 to 2032*, 2022. 5. 25., Table 1-1

- (지출) '22년 연방지출은 코로나19 대응 지출의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13.9%(9,500억달러) 감소한 5.9조달러 전망(GDP 대비 23.8%)
 - 연방지출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올해('22년) 감소를 제외하고는 이후 지속 증가
 - GDP 대비 기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모두 '24년까지 감소세를 보일 전망
- (국가채무) 연방정부 채무³²⁾ 수치는 2020년에 GDP 대비 100%를 기록했던 채무가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2021년부터 소폭 감소를 시작으로 2022년과 2023년의 GDP 대비 규모 모두 순차적으로 감소
 - 2024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된 후, '27년에는 다시 100% 재진입 전망
- (경제) 실질성장률은 2020년에 -3.5%까지 하락하였으나, 2021년 5.7%로 회복된 후, 올해(2022년) 약 2%p 하락한 3.8%로 전망되며, 이후 향후 몇 년간 감소 추세 전망
 - (물가) 높게 상승한 물가는 강한 수요와 노동 및 상품·서비스의 공급 제한이 맞물려 2022년에도 지속되다가 공급 차질 현상 소산(dissipate), 에너지 가격 하락과 덜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진정(subside)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2022년에도 고용시장은 개선되면서 일자리가 410만개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며, 중반 정도에 팬데믹 이전 수준(2020년 2월)을

<표 5> 미국의 경제전망

(단위: %)

구분 (CY ¹⁾)	실적				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26
실질 GDP 성장률	3.0	2.2	-3.5	5.7	3.8	2.8	1.6	1.5
CPI (Urban) ²⁾	2.4	1.8	1.2	4.7	6.1	3.1	2.4	2.3
실업률	3.9	3.7	8.1	5.4	3.8	3.5	3.7	3.9

주: 1) CY = Calendar Year

2) 도시소비자 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2 to 2032*, 2022. 5. 25.

회복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실업률은 022년 대비 개선되는 방향을 보이며 3.5%까지 점차 하락하나, 2024년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실업률은 향후 몇 년간 4.0% 이내 유지)
- (이자율) 기준금리(현재* 0.75~1.00%)는 2022년 말에 1.9%로 상승, 이후 2023년 말에 2.6%까지 추가적인 인상 전망
 - * CBO 보고서상의 현 기준금리는 6월 14~15일에 개최된 FOMC에서 결정된 정책금리 목표범위(1.50~1.75%)가 미반영된 수치임

■ 의회 하원, 영아 분유 대란(infant formula shortage) 대응을 위한 추경세출예산안(H.R. 7790) 가결(2022. 5. 18.)³³⁾

- (배경) 미국 내 한 분유 대형기업의 공장에서 생산된 분유를 먹은 아기 2명이 세균 감염으로 사

32) 정부 내부거래(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 제외

33)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ouse Passes Supplemental Funding Legislation to Address Infant Formula Shortage," 2022. 5. 18.,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supplemental-funding-legislation-to-address-infant-formula-shortage>, 검색일자: 2022. 6. 16.



망하자 공장 가동 중단 명령과 함께 일부 제품에 대한 분유 리콜이 이루어지면서 분유 대란으로 이어짐³⁴⁾

- (법안 규모) 총 2,800만달러 규모로 책정되어 있는 동 추경 예산안은 2023 회계연도(~2023. 9. 30.)까지 사용 가능
 - * (예산 배분) 1,400만달러(2022년) → 1,300만달러(2023년)
- (주요 내용) 미 FDA의 감사원 인력 강화 및 증원, 분유 이슈 관련 인력 예산, FDA의 부적절한 분유 관련 기업의 시장 진입 관련 역할 지원 등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상(emergency-designated)지출로 지정됨

[기타]

- 미 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22년 연례 보고서^{35), 36)}(분절·유사·중복 프로그램 감축과 재정 절감방안)(2022. 5. 11.)³⁷⁾
 - 본 보고서(2022년)는 비용절감/수입증대 및 정부의 효율성/효과성 개선이 필요한 총 30개(신규

분절(fragmentation), 중복(duplication), 유사(overlap) 분야 지적사항³⁸⁾ 예시

<2022 지적사항 예시>

- (Mission) IT
- (Area) 농업 생산 및 보존(Farm Production and Conservation IT Duplication and Overlap)
- (내용) 농무부(USDA) 소속의 3개³⁹⁾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농업생산 및 보존 역할 임무(FPAC⁴⁰⁾)에 대한 전략 계획 및 성과 목표 측정 등을 개발함으로써 불필요한 IT의 유사·중복 활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

<2021 지적사항 예시⁴¹⁾>

- (Mission) 에너지
- (Area) 천연가스 수출시설 (Natural Gas Export Facilities)
- (내용)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The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는 해상액화천연가스허가(onshore liquefied natural gas permitting)를 위한 기관 간 협정에 대한 규칙적인 검토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허가절차 및 미래 정책 변화 대응에 대한 분절 예방 관리가 필요함

34) CNBC, <https://www.cnbc.com/2022/05/21/abbott-ceo-apologizes-for-baby-formula-shortage-in-washington-post.html>, 검색일자: 2022. 6. 16.
 35) 2022 Annual Report: Additional Opportunities to reduce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and Achieve Billions of Dollars in Financial Benefits
 36) 해당 연례 보고서는 중복 및 낭비성 지출을 감축하기 위해 2010년 2월에 제정된 입법(P.L. 111-139) 의무사항임
 37) GAO, <https://www.gao.gov/products/gao-22-105301>, 검색일자: 2022. 5. 30.
 38) 분절(Fragmentation): 1개 이상의 연방기관 또는 기관 내 하부조직이 동일한 분야의 서비스 집행에 관여 / 유사(Overlap): (다수기관의) 프로그램들이 유사한 사업목적 가지고 유사한 활동 또는 전략을 구사하거나 수혜자를 유사하게 설정 / 중복(Duplication): (다수기관의) 프로그램들이 동일한 사업 진행 또는 동일한 수혜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있는 서비스 제공(<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2017. 12.>에서 발췌)
 39) ① Farm Service Agency, ② 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Service, ③ Risk Management Agency
 40) FPAC: Farm Production And Conservation
 4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5월호, 2021에서 발췌

21개, 기존 9개)의 정부정책 사업(areas)을 기준으로 총 94건 신규 시정 요구 조치(actions) 발표

- 2022년 3월 기준, 2011년 보고서를 시작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지적사항(1,299개)의 56%에 해당하는 724건에 대해 완전시정조치(full address)가 이루어졌으며, 부분시정(partial address) 240건(18%), 미시정(not addressed) 135건, 기타 106건으로 집계됨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완전 또는 부분)로 인해 발생하는 총 재정적 이익(financial benefits)은 5,520억달러 전망

■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2. 6. 1.)⁴²⁾

※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 (전반적인 경제활동) 4월 이후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있었으나, 소매업은 높은 소비자 가격으로 인해 다소 위축되는 경향을 보임
 - 주거용 부동산은 높은 가격과 높은 이자율에 직면함에 따라 약세를 보였고, 공급망 문제, 노동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 모두에 영향을 받음
- (노동시장) 고용은 완만하게 증가했고, 임금 인

상률은 강세를 보임

- 해안 지역의 일부 기업들의 경우 노동시장이 개선될 조짐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가용 인력 부족이 여전히 이어졌고, 많은 기업들은 업무 자동화 구현, 노동자에 대한 유연 근무, 임금 인상 등으로 대응함
-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했고, 원자재 가격 인상도 높았음
 - 대부분 지역에서 재화 및 서비스 가격 상승이 있었고,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가 이루어졌음
 - 일부 지역은 전년 대비 4~5% 수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여, 소비자들은 저가 대체품 구매나 구매량 감소로 대응함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5월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2022. 6. 10.)⁴³⁾

- 2022년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CPI-U)이 전년 동월 대비 8.6%로 집계됨
 - 2022년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1.1%)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은 1.0%로 4월(0.3%)에 비해 증가해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
- 모든 항목에서 전월 대비 물가 상승을 보이고 있음
 - 항목별 물가상승률을 볼 때, 모든 항목에서 전월 대비 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 증유

42) Fed, *Beige Book - June 1, 2022*, 2022. 6. 1.,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206.htm>, 검색일자: 2022. 6. 15.

43)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 - May 2022*, 2022. 6. 10., <https://www.bls.gov/news.release/cpi.nr0.htm>, 검색일자: 2022. 6. 15.; 백악관, *Statement by President Biden on Consumer Price Index(CPI) in May, 2022*, 2022. 6. 1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6/10/statement-by-president-biden-on-consumer-price-index-cpi-in-may/>, 검색일자: 2022. 6. 15.



<표 6> 미국의 물가상승률(CPI-U) 변화

(단위: %)

구분	계절조정, 전월 대비							전년 동월비
	'21년 11월	'21년 12월	'22년 1월	'22년 2월	'22년 3월	'22년 4월	'22년 5월	
모든 항목	0.7	0.6	0.6	0.8	1.2	0.3	1.0	8.6
식료품	0.8	0.5	0.9	1.0	1.0	0.9	1.2	10.1
가정식	0.9	0.4	1.0	1.4	1.5	1.0	1.4	11.9
외식	0.6	0.6	0.7	0.4	0.3	0.6	0.7	7.4
에너지	2.4	0.9	0.9	3.5	11.0	-2.7	3.9	34.6
에너지 상품	4.2	1.3	-0.6	6.7	18.1	-5.4	4.5	50.3
가솔린	4.5	1.3	-0.8	6.6	18.3	-6.1	4.1	48.7
중유	3.5	-2.4	9.5	7.7	22.3	2.7	16.9	106.7
에너지 서비스	0.2	0.3	2.9	-0.4	1.8	1.3	3.0	16.2
전력	0.2	0.5	4.2	-1.1	2.2	0.7	1.3	12.0
유틸리티 가스	0.3	-0.3	-0.5	1.5	0.6	3.1	8.0	30.2
식료품·에너지 제외 항목	0.5	0.6	0.6	0.5	0.3	0.6	0.6	6.0
식료품·에너지 제외 상품								
상품	0.9	1.2	1.0	0.4	-0.4	0.2	0.7	8.5
신차	1.2	1.2	0.0	0.3	0.2	1.1	1.0	12.6
중고차 및 트럭	2.4	3.3	1.5	-0.2	-3.8	-0.4	1.8	16.1
의류	0.7	1.1	1.1	0.7	0.6	-0.8	0.7	5.0
의료 상품 (medical care commodities)	0.1	0.0	0.9	0.3	0.2	0.1	0.3	2.4
에너지 제외 서비스	0.4	0.3	0.4	0.5	0.6	0.7	0.6	5.2
주거	0.5	0.4	0.3	0.5	0.5	0.5	0.6	5.5
교통	0.7	0.0	1.0	1.4	2.0	3.1	1.3	7.9
의료 서비스 (medical care services)	0.3	0.3	0.6	0.1	0.6	0.5	0.4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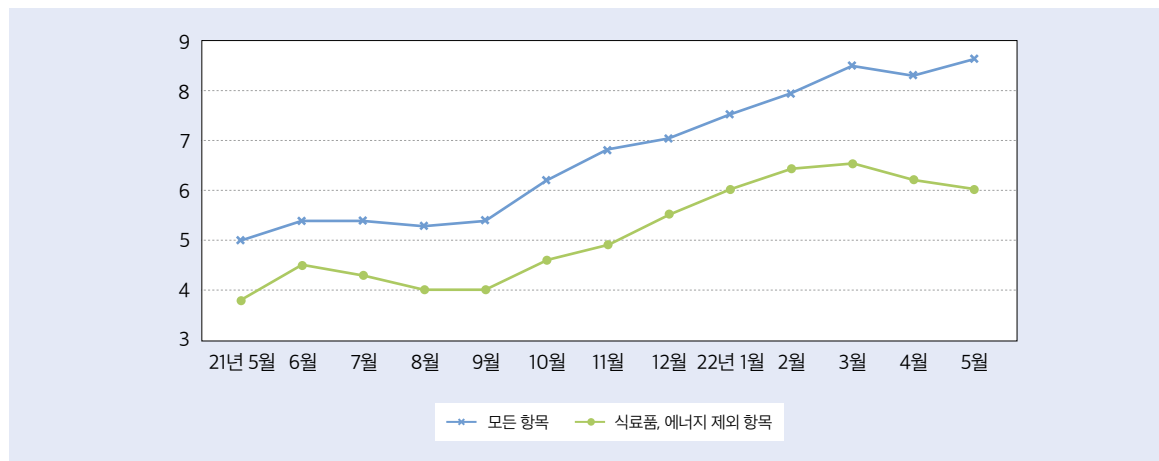
주: 1. 외식 항목은 계절조정되지 않음

2. 전년 동월비는 조정되지 않음

출처: BLS, Consumer Price Index-May 2022, 2022. 6. 10., Table A

[그림 2] 미국의 전년 동월비 물가상승률(CPI-U) 변화

(단위: %)



출처: BLS, Consumer Price Index-May 2022, Chart 2, 2021. 6. 10.

(16.9%), 가솔린(4.1%) 등 에너지 관련 항목이 크게 물가 상승을 보임

- 이 발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를 강조함
 -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statement)를 통해 핵심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이 원하는 만큼 빠른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에너지, 식품 등의 항목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함
 -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의회의 조속한 운송비 절감 법안 통과를 요구했고, 에너지 요금이나 처방약과 같은 가계비용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함

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참가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추가 상승 압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 위원(member)⁴⁷⁾들은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를 0.75%p 인상하기로 결정
 - 위원들은 경제 상황과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기존의 0.75~1.00% 수준에서 1.50~1.75%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함

■ 미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 인상 및 경제전망 공개(2022. 6. 15.)⁴⁴⁾

- FOMC 참석자(participants)⁴⁵⁾들은 6월 14~15일 개최된 FOMC 회의⁴⁶⁾에서 경제활동은 회복세를 보이고, 일자리 증가는 견조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발생했고, 중국의 코로나 관련 봉쇄로 공급망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을 보여 인플



[예산-결산 등]

- 내각부,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을 포함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⁴⁸⁾ 2022’ 각의 결정(2022. 6. 7.)⁴⁹⁾

※ 동 방침은 경제·재정에 관한 기본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매년 6월 각의 결정 후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세제 개정에 반영

44) Fed, *Federal Reserve issues FOMC statement*, 2022. 6. 15.,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20615a.htm>, 검색일자: 2022. 6. 17.; _____, June 15, 2022: FOMC Projections materials, accessible version, 2022. 6. 15.,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projtabl20220615.html>, 검색일자: 2022. 6. 17.

45) 연준 이사 5명과 지역연준 총재 5명

46) 베이지북 6월호를 참고 바람

47) 기준금리 투표권을 가지는 연준 이사 7명(현재 4명), 뉴욕연준 총재 1명, 기타 지역연준 총재 11명 중 4명

48) 「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 2022」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약칭 골태방침(骨太方針)

49) 내각부, 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 2022,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22/decision0607.html>, 검색일자: 2022. 6. 9.



- (개요) 지난 2021년 10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하면서 시장 원리와 규제완화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각종 병폐를 야기했다는 인식하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본주의’⁵⁰⁾를 내세우며 금년 6월까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⁵¹⁾
- (대·내외 상황) 코로나19 영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시급한 기후변화 문제 등 대외 환경과 국내 구조적 과제인 수입재 가격 급등, 인구 감소 및 저출산과 고령화, 잠재성장률 정체, 잦은 재해 발생 등 국내외 과제에 대응이 필요
- (새로운 자본주의 개혁) 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 그 자체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 성장 전략으로 삼고, 민관의 중장기 중점 투자와 제도 개혁을 통해 과제 해결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함
 - (새로운 자본주의 중점 투자 분야) 인적자본, 과학기술 혁신, 스타트업, 녹색 및 디지털 전환 투자
 - (인적자본) 디지털 등 성장 분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술훈련·교육 지원, 텔레워크 촉

진, 겸업·부업⁵²⁾ 등 근로 방식 다양화,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 등 교육 강화, 임금 인상 및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⁵³⁾ 자산소득배증 계획⁵⁴⁾ 수립 등

- (과학기술 혁신) 양자, AI, 바이오 테크놀로지, 세포·유전자 의료 기술 등에 민관 제휴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 투자 증가 기업은 인센티브 부여, 정보제공 및 자문을 위해 총리실에 과학기술 고문을 설치할 예정
- (스타트업 투자) 2022년 말까지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 환경(사업·기술 보증 자금 조달 등) 조성 및 인재 육성 지원 등을 추진
- (녹색 전환(GX: Green transformation)) 성장 친화적인 탄소 배출권 규제(Carbon Pricing)의 구체화 및 ‘GX 경제이행채권(가칭)’ 발행을 검토하여 150조엔 이상 규모의 민관 투자 실현 등을 계획
-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 향후 3년간 디지털 적합성을 높이도록 규제를 일괄 재검토하고, 자율 주행차·드론, 물

50) 2022년 예산에서 성장전략으로 과학기술국 위상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도시국가 구상 실현, 양자 등 연구개발 추진 등을 시행하고, 분배전략으로 의료 기관 및 교육 기관 종사자 급여 인상, 성장분야 인재 육성,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원활한 노동 이동 지원 등을 제시함(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 예산안 일본』, 2022, 6쪽 참고(<https://www.kipf.re.kr/cfa/Publication/Finance/kiPublish/CA2/Center/view.do?serialNo=526792>))

51) 수상관저, 岸田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기시다 총리 기자회견), 2021. 10. 4., https://www.kantei.go.jp/jp/100_kishida/statement/2021/1004kaiken.html, 검색일자: 2022. 6. 22.

52) 겸업은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업은 본업 외에 여가를 이용하여 갖는 일을 의미

53) 전국 가중평균 최저임금이 최소 1천엔 이상 되도록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 노력

54) 개인금융자산 2,000조엔 중 절반 이상이 예금·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 투자로 연계되지 못하므로 iDeCO(개인형 확정 기여 연금)의 가입 대상 연령대 확대, NISA(소액 비과세 투자제도)의 투자 한도액 및 비과세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저축에서 투자로 향하는 2022년 말 종합적인 자산소득배증플랜을 통해 가계 투자를 촉진할 예정

- 류 등 DX 표준화, 사이버 보안 전략 강화 및 행정의 디지털화 추진(마이넘버 카드⁵⁵⁾ 보급 등)
-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 사회적 가치 창출에 민간 연계 추진, 포용적 사회 실현, 다양화 및 지역활성화 추진, 경제 안보 강화
 - (사회적 가치 창출 민간 연계) 향후 5년간 PPP/PF⁵⁶⁾ 사업의 자율적인 시행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가 지원 및 민간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법인 형태 검토 등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하며, 혁신을 촉진하는 경쟁⁵⁷⁾ 장려
 - (포용적 사회 실현) 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⁵⁸⁾ 여성 권익 강화,⁵⁹⁾ 고독·고립 감소 정책,⁶⁰⁾ 취업 빙하⁶¹⁾ 세대 지원
 - (다양화 및 지역 활성화 추진) 디지털 전일 도시 국가⁶²⁾ 구상 실현, 지방 분권 및 지역 대중교통 네트워크 재구조화, 탈중앙화된 가상공간 지원,⁶³⁾ 중견·중소기업 활력 회복 및 가계·기업 채무 재조정, 관광 중심 국가
- 입지 부활, 문화·예술·스포츠 진흥 등
 - (경제 안전 보장 강화) 에너지 및 식량 등 경제 안전 보장을 철저히 하고, 자유무역 추진과 불공정 경제에 대응 강화
-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국제 환경 변화 대응으로 외교·안보, 경제 안전, 에너지, 식량 안보 등을 강화하고, 대외 경제 협력을 촉진하며, 방재·감재 등 재해 예방 및 대응, 국민 생활 안전을 강화
 - (외교·안보) 국제질서 유지·발전을 위한 외교를 적극 전개(미일동맹, 국가·지역 협력 강화, ODA 등)하고,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검토하여 5년 이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
 - (경제 안전 보장) 경제안전보장법⁶⁴⁾의 단계적 시행, 공급망 강화·민관 기술협력 관련 정책 지원
 - (에너지 안전 보장)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면서 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등 탈탄소 효과가 높은 에너지 최대한 활용
 - (식량 안보 및 농림수산업 성장) 식량 안정 공

55) 2016년부터 시행하는 개인식별번호 제도로 각 행정기관별로 관리하던 개인정보를 하나의 개인식별번호를 중심으로 통합함
 56) · Public-Private Partnership(민관협력사업) - 민간이 위험부담을 지고 도로 등 사회자본시설 투자·건설, 유지 보수 등을 맡고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으며 정부는 세금 감면 및 일부 재정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
 · Private Finance Initiative(민간투자개발사업) -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시행하는 사업
 57) 거래 관행의 개선, 규제를 개혁하는 창도적 역할 강화
 58) '어린이 가정청' 창설, 생애단계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 어린이 빈곤 완화 등
 59) 남녀 간 임금 격차 공개 의무화, 남성 육아휴직 제도 촉진,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등
 60) 사회적 연계를 강화하고 자살 종합 대책을 시행하며, 지방의 경우 민간 연계 플랫폼 형성을 지원
 61) 장기 경기 불황 등으로 미취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2023년부터 2년간 취업 지원, 민간 기업 채용 촉진, 공무원 채용 등 정규직 고용자 30만명 증가를 목표로 함
 62) 디지털화 추진을 통해 지방과 도시의 격차를 해소하여 지방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63) Web 3.0, NFT, 메타버스 등 분산형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64) 經濟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令和4年法律第43号) -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에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법안을 각국에 요청하여 시행되는 법으로 공급망 강화, 핵심 인프라, 첨단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일본의 경우 경제안보법이 2022년 5월 12일 일본 상원 가결되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



급을 위한 종합 대책 구축, 식품 원재료 및 목재의 국내 생산 전환 등 지원, 수출 촉진(2030년 목표: 5조엔), 스마트 농림수산업 실현

- (대외 경제 협력)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역을 확대하고, 룰에 기초한 다각적 무역체제 유지 및 강화, 대일 직접투자 촉진(2030년 80조엔 목표), 외국 인재 수용 장려 등

- (중장기 경제·재정운용 및 2023년 예산)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고 현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코로나19 상황과 최근 물가 인상 등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정책을 선택

- 민관 협력을 통한 계획적인 증점투자 추진, 단년도 예산 원칙의 폐해⁶⁵⁾ 시정,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출 및 ‘증거에 기반한 정책입안 (Evidence Based Policy Making, EBPM)’, 세계 개혁 시행

- 모든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자본 정비, 지방 행정 및 재정 개혁, 교육·연구 지원 등 추진

- 동 기본방침과 2021년 기본방침을 기반으로 경제·재정 일체적인 개혁을 추진하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선택의 폭을 좁혀서는 안된다는 입장

- 일본은행, 4월 물가상승률 전망 및 5월 ‘경제·물가 전망과 금융정책 운영’에서 구로다 총재 물가상승률 평가 의견 발표(2022. 4. 28., 2022. 5. 13.)⁶⁶⁾

- 일본은행은 4월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현재의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신선식품 제외 2022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022년 1월 기준 1.1%에서 1.9%로 상향 조정함

- 2022년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목표치인 2%에 가까운 수치이지만 단기 금리 -0.1%, 장기 금리 0%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

- 2023년과 2024년 물가상승률은 모두 1.1%로 전망되어 정책위원들이 2%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봄

- 5월 ‘경제·물가 전망과 금융정책 운영’에서 구로다 총재는 2022년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2%정도로 높아지지만, 에너지 관련 외 품목은 0% 대의 변화율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품목으로 상승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신선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전망은 2022년 0.9%, 2023년 1.2%, 2024년 1.5%로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

65)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사업 성질에 따른 기금 활용 등을 진행하고, 단년도에 이어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고 적절하게 국가적 과제에 대응

66)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展望レポート), 2022. 4. 28., <https://www.boj.or.jp/mopo/outlook/index.htm/>; _____, 經濟・物価見通しと金融政策運営, 2022. 5. 13., https://www.boj.or.jp/announcements/press/koen_2022/data/ko220513a1.pdf



독일

[예산·결산 등]

- 연방 하원, 2022년 연방 예산 승인(2022. 6. 3.)^{67), 68)}
 - 하원에 제출된 2022년 연방 예산은 4,958억유로로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예산안 보다 120억 유로가 증가함
 -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정책 실행 능력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예산 내용에 반영
 - 2022년 예산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상쇄하는 것이 목적이며 내년부터는 다시 헌법상 부채규정을 준수할 계획
 -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조금을 지원
 - 장거리 통근자 공제, 재생에너지 부담금(EEG-Ulme) 폐지, 난방 보조금, 아동 수당 및 일시적 보조금, 근로자 일시적 보조금 혜택, 대중교통티켓 및 에너지세 감면 등으로 지원
 -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및 공급망 안보 위기에 대한 대책
 - 에너지 안보: 4개의 새로운 LNG 터미널 설치, 새로운 공급원 확보, 수소 에너지원 개발

- 등으로 러시아산 가스로부터 독립
- 재생 에너지의 대규모 확대: 부활절 패키지⁶⁹⁾를 통과시켰으며 여름과 가을에 두 개의 패키지를 더 발표할 계획
-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기 지원 및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연방군에 투자
 -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
 -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연방군을 만들기 위하여 1,000억유로의 특별 기금 설립

[기타]

- 연방 통계청, 2022년 1분기 경제 실적 발표(2022. 5. 25.)⁷⁰⁾
 - (전 분기 대비) 2022년 1분기 독일 국내총생산은 2021년 4분기 대비 0.2% 증가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하면 0.9% 감소
 -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글로벌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제는 2022년 1분기 소폭 성장함
 - 민간지출은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0.1%)이고, 정부지출도 소폭 상승(0.1%)
 - 건설투자는 2021년 4분기에 비하여 4.6%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2.5% 증가

67) 연방 정부, Mehreinnahmen an Bürger zurückgeben, 2022. 6. 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lindnerbundshaushalt-2022-2043108>, 검색일자: 2022. 6. 7.

68) 연방 정부, Investitionen in Sicherheit und für einen Aufbruch in Deutschland, 2022. 6. 2.,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kanzler-scholz-rede-bundestag-2045522>, 검색일자: 2022. 6. 7.

69) 2022년 4월 6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가속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재정동향 4월호 참조)

70) 연방 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1. Quartal 2022, 2022. 5. 2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2/05/PD22_215_811.html, 검색일자: 2022. 6. 13.



- 수출은 상품 수출의 감소로 인하여 전 분기 대비 2.1% 감소하였고, 수입은 여행 증가 등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증가로 인하여 0.9% 상승 (<표 7> 참조)
- (전년 동기 대비) 코로나19 2차 유행의 영향을 받았던 2021년 1분기와 비교하여 2022년 1분기는 4.0% 증가
 - 높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이 심했던 2021년 1분기 대비 민간소비는 8.5% 증가⁷¹⁾
 -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0.4% 소폭 증가
-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으며, 수입은 7.2% 증가함
- (국제 비교) 독일은 2022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2021년 4분기 대비 0.2%로 다른 유럽 국가 평균과 대략 비슷함
 - 유럽연합 통계국(ESTAT)은 EU 전체의 GDP가 전 분기 대비 0.4% 증가했다고 보고⁷²⁾하였고, 미국은 2022년 1분기에 0.4% 감소함
 -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분기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하면 스페인의 2022년 1분기 GDP는 -3.4%로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았고, 독일은 -0.9%, 이탈리아 -0.4%

<표 7> 독일의 2022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구분	2020				2021				2022
	1Q	2Q	3Q	4Q	1Q	2Q	3Q	4Q	1Q
전분기 대비 ¹⁾	-1.8	-10.0	9.0	0.7	-1.7	2.2	1.7	-0.3	0.2
전년동기 대비 ²⁾	-1.5	-11.3	-3.6	-1.9	-3.0	10.8	2.8	1.8	4.0

주: 1) 가격 조정, 계절 및 캘린더 조정값

2) 가격 조정

출처: 연방 통계청, 2022. 5. 25.

<표 8> 독일의 2022년 1분기 GDP(가격 조정, 계절 및 캘린더 조정) 국제 비교

구분	미국	유로지역	EU27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전 분기 대비 ¹⁾	-0.4	0.3	0.4	0.0	-0.2	0.3	0.2
전년 동기 대비 ²⁾	3.6	5.1	5.2	5.3	5.8	6.4	3.8
코로나19 위기 직전 분기 대비 ³⁾	2.8	0.5	1.1	1.0	-0.4	-3.4	-0.9

주: 1) 2021년 4분기와 비교, 2) 2021년 1분기와 비교, 3) 2019년 4분기와 비교

출처: 연방 통계청, 2022. 5. 25.

71) 특히 숙박 및 음식점 서비스에 전년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출(+124.2%)을 함

72) 2022년 5월 17일 발표된 잠정치 기준(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2022. 5. 17., "GDP and employment flash estimates for the first quarter of 2022,"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636038/2-17052022-AP-EN.pdf>, 검색일자: 2022. 6. 23.)

- 로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반면 프랑스(1.0%), 유로지역(0.5%)에서는 GDP가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섬
- 미국은 전 분기 대비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2.8%의 비교적 강한 성장세를 기록(<표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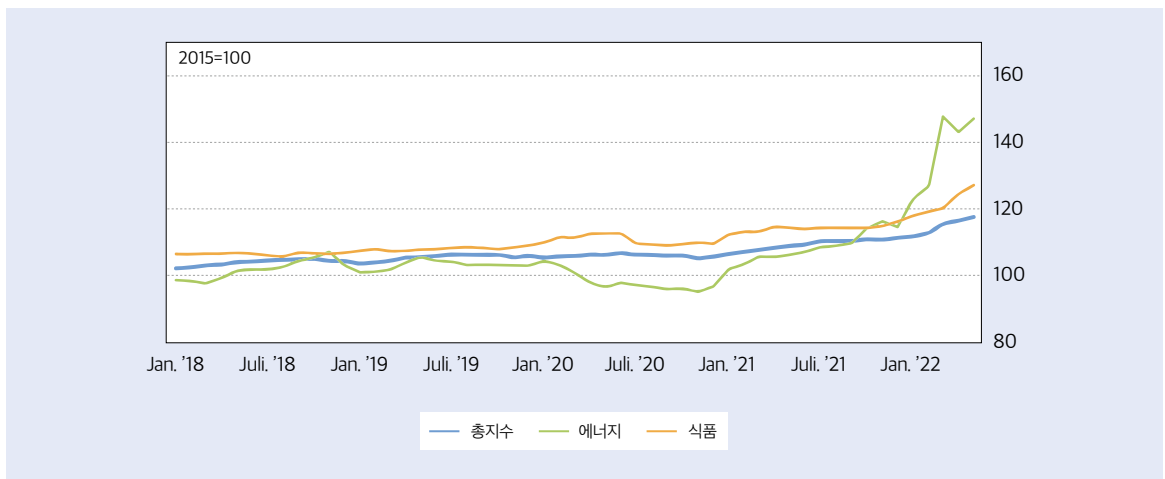
■ 연방 통계청, 2022년 5월 물가상승률 7.9% 발표 (2022. 6. 14.)⁷³⁾

- 2022년 5월 물가상승률은 7.9%로, 지난 3월 7.3%, 4월 7.4%에 이어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
- 높은 물가상승률의 주된 원인은 에너지 가격의 인상이며, 식품 가격의 상승도 또 다른 주요 원인임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

폭이 눈에 띄게 커지면서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 공급의 병목 현상으로 인하여 식품 가격이 점점 상승함

- 에너지 제품의 가격은 2022년 4월 35.3% 상승한 이후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8.3%까지 증가함
- 가정용 연료(Leichtes Heizöl)의 가격 상승률은 94.8%로, 두 배 가까이 올랐으며 천연가스(Erdgas) 55.2%, 화석연료(Kraftstoffe) 41.0%, 고체연료(Brennstoffe) 33.4%, 전기(Strom) 21.5%로 전체 에너지 제품의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남
- 식품 가격은 2022년 5월 전년 동월 대비 11.1% 상승했고, 4월에는 8.6% 상승한 이후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한 수치

[그림 3]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



출처: 연방 통계청, 2022. 6. 14.

73) 연방 통계청, Inflationrate im Mai, 2022 bei +7,9%, 2022. 6. 14.,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2/06/PD22_245_611.html, 검색일자: 2022. 6. 22.



- 식용유 38.7%, 육류 및 육류제품 16.5%, 유제품 및 계란 13.1%, 빵 및 곡류 10.8% 증가함
-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4.5%이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3.8%로 높은 물가 상승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구호 대책 정리 (2022. 6. 17.)⁷⁴⁾

- (첫 번째 구호 패키지) 연정위원회는 2022년 2월 23일 광범위한 구호 조치에 합의
 - 2022년 7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 부담금(EEG-Ulme) 폐지
 - 난방비 보조금: 주거급여 수급자에 270유로 지원(2인 가구의 경우 350유로, 추가 1인당 70유로 증가), 직업훈련수당 수급자 및 학생들에게는 균일하게 230유로 지급
 -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 관련 지출 정액 공제가 1,200유로로 늘어남
 - 연간 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10,347유로로 인상
 - 장거리 통근자(21km 이상)의 거리 공제를 38센트로 인상
- (두 번째 구호 패키지) 연정위원회는 2022년 3월 23일 두 번째 구호 조치에 합의
 - 에너지세 감면: 2022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휘발유는 리터당 29.55센트, 경유는 리터

- 당 14.04센트 인하
-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300유로에 이르는 일회성 보조금 지급
- 자녀가 있는 가구에 아동 1인당 100유로씩 추가 지급
-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200유로의 일회성 보너스 지급
-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100유로의 일회성 지원금 지급
- 월 9유로의 대중교통 티켓 발행
- (제4차 코로나 세제 지원법) 2022년 2월 16일 내각이 합의하고, 5월 19일 연방 의회를 통과함
 - 결손전기이월 2023년 말까지 연장
 - 가속감가상각제도 1년 연장
 - 재택근무 소득 공제 규정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급된 특별급여에 대하여 최대 4,500유로까지 비과세
 - 2020년, 2021년, 2022년 세금신고기한 연장
- (경제 지원 패키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 단기유동성 확보 방안: KfW 대출 프로그램, 연방정부 보증 프로그램, 마진콜 특별금융 프로그램
 - 표적 지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받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단일형(targeted) 혹은 복합형(hybrid) 자본 지원

74) 연방 재무부, Schnelle und spürbare Entlastungen, 2022. 6. 1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schnelle-spuerbare-entlastungen.html>, 검색일자: 2022. 6. 20.



프랑스

■ 르메르 재무부 장관, 에너지 요금 동결 조치 유지 발표(2022. 5. 30.)^{75), 76)}

- 르메르 재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가격 동결조치⁷⁷⁾를 올 연말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함
 - 가스 가격은 동결하고, 전기요금 인상폭은 4% 이내로 제한될 것이며 2023년까지 대폭적인 가격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함
 - 가스 공급체인 Engie와 고정가격 계약을 통해 관세를 동결하여 가스가격 인상을 차단하는 시행령(Décret n° 2021-1380 du 23 octobre 2021 relatif aux tarifs réglementés de vente de gaz naturel fournis par Engie et faisant application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R. 445-5 du code de l'énergie)을 실시함
 - 전기가격 역시 전력공급업체(EDF)가 일정량의 전력을 고정가격에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관세인상을 통한 인상폭을 4%로 제한하

는 조치를 시행함⁷⁸⁾

- 하지만 약 20억유로의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6월말 수정재정법안 또는 2023년 재정 법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언급함

■ 프랑스 정부, 기후변화 및 폭염 대응 조치 발표(2022. 6. 14.)⁷⁹⁾

- 장관회의를 통해 5억유로를 할당하여 전례 없는 폭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 조치 및 구조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힘
 - 도심 내 캐노피 설치, 녹지 조성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기관 및 지역당국과 함께 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임
 - 환경, 위험, 이동성, 계획에 대한 연구 및 전문 지식 센터(Climat and Territories de demain, CEREMA), 환경 및 에너지 관리 기관(Agenda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ADEME) 그리고 지방 당국을 지원하기 위한 예금 및 위탁 기금(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함

* Caisse des depots et consignations는 1816년에 설립된 프랑스 공공 부문 금융 기관으로 의회가 관리하는 정부 기관의 일부로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 정책 등을 수행함

75) 국가에너지정보포럼 정보사이트, Les tarifs réglementés de vente de gaz naturel d'ENGIE n'évoluent pas le 1er juin 2022, car ils ont été bloqués depuis le 1er octobre 2021, 2022. 5. 30., <https://www.energie-info.fr/tarifs-reglementes-de-gaz-dengie-toujours-geles-au-1er-juin-2022/>, 검색일자: 2022. 6. 22.

76)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프랑스 경제정책 주간 정부정책 동향,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7/view.do?seq=1332305&page=1, 검색일자: 2022. 6. 20.

77) 에너지 가격 동결조치는 유럽의 시장가격의 이례적 상승으로 인한 공급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0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동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정부가 프랑스 국민의 구매력과 경제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법령조치임(2022년 2월 보도자료 기준으로 현재 가스가격은 2019년의 4배, 2020년의 6배 더 높은 수준)

78) 프랑스 정부, Le Gouvernement veut limiter la hausse du tarif de l'électricité à 4%, 2022. 1. 14.,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le-gouvernement-veut-limiter-la-hausse-du-tarif-de-l-electricite-a-4>., 검색일자: 2022. 6. 23.

79) 프랑스 정부, Compte rendu du Conseil des ministres du 14 juin 2022, 2022. 6. 14., <https://www.gouvernement.fr/conseil-des-ministres/2022-06-14#la-reponse-du-gouvernement-a-la-vague-de-chaaleur>, 검색일자: 2022. 6. 21.



- 빈번한 폭염은 기후변화의 영향 중 하나로, 향후 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율을 2배로 높이는 등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
 -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대비 3.8%, 2017년 대비 9.6% 감소함

■ 프랑스 통계청, 2022년 5월 물가지수 발표(2022. 6. 15.)⁸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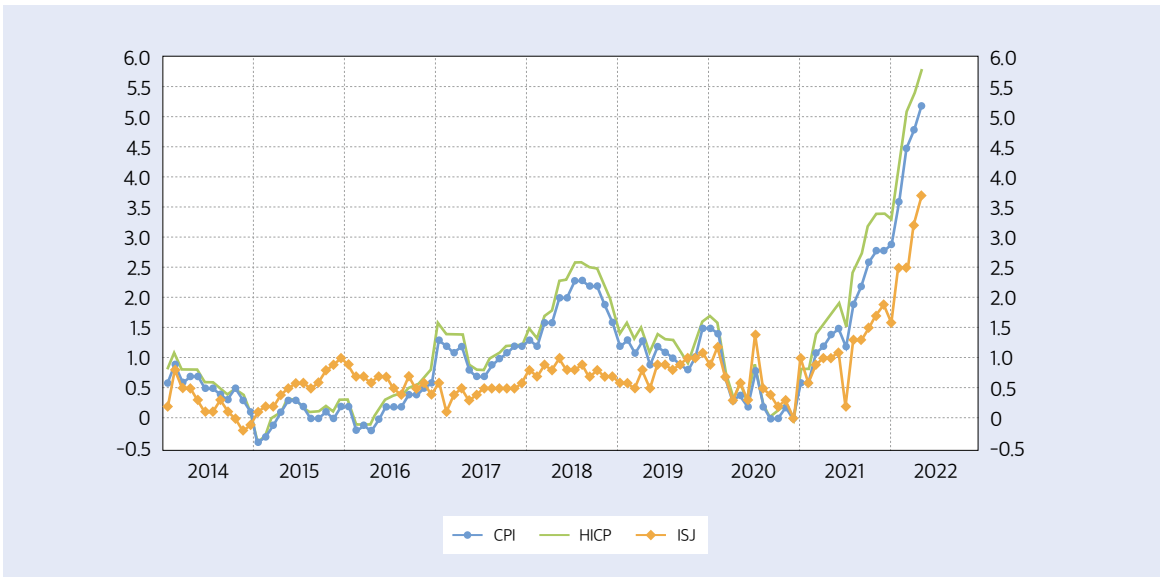
- 2022년 5월 프랑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하여 198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28%) 인상뿐만 아니라 식품(+4.2%), 서비스(+3.2%) 등 모든 부문의 상승률이 증가함

- 5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HICP)⁸¹⁾ 역시 전년 동월 대비 8.1% 상승하면서, 1997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 프랑스 HICP는 한 달 사이 0.8% 상승하고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하였으며, 5월 근원인플레이션(Inflation sous-jacente, ISJ)⁸²⁾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함

[그림 4] 프랑스의 CPI, ISJ, HICP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출처: 프랑스 통계청, En mai 2022, les prix à la consommation augmentent de 0,7% sur un mois et de 5,2% sur un an, 2022. 6. 15.

80) 프랑스 통계청(INSEE), En mai 2022, les prix à la consommation augmentent de 0,7% sur un mois et de 5,2% sur un an, 2022. 6. 15.,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6455415#graphique-ipc-g1-en>, 검색일자: 2022. 6. 20.

81)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HICP)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인플레이션과 물가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HICP는 유로를 통화로 채택한 회원국의 물가지수 가중 평균임. HICP는 농촌 소비자를 표본에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CPI와 구별됨

82)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물가 변동의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가뭄, 장마와 같은 계절적 요인이나 국제유가 변동과 같은 일시적 충격에 의한 가격 변동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농산물과 석유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을 제외하고 작성한 물가지수의 변화



영국

- 영국 재무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패키지 발표(2022. 5. 26.)⁸³⁾
 - (배경)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
 - 2월에 에너지 요금 선할인(200파운드)과 카운슬세 할인(150파운드) 조치를, 3월 Spring Statement에서 국민보험기여금 면제 기준 소득 인상(9,880→12,570파운드, 7월), 연료세율 인하(리터당 5펜스) 조치를 발표한 바 있음

- (지원규모) 이번 추가 지원 패키지의 규모는 총 153억파운드이며 기존 발표된 정책을 포함한 생활비 지원 정책 규모는 올해 총 370억파운드에 이를 전망
- (지원내용) 영국 전역에서 약 8백만 취약가구가 올해 최소 1,200파운드 이상의 지원(기존 카운슬세 할인 포함)을 받게 되며 보편적 에너지 요금 할인 금액도 400파운드로 증액(<표 9> 참조)
 - 또한 지방당국이 제공하는 취약 가구 지원 자금(Household Support Fund)⁸⁴⁾을 추가로 5억파운드 증액하고 지원 기간을 약 6개월 연장함

<표 9> 영국의 생활비 지원 계획의 주요 내용

(단위: 파운드)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시기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 ⁸⁵⁾ 수급자 (8백만가구 이상)	650파운드 보조금 (£326(1차) + £324(2차))	54억	1차 7월, 2차 가을
동계 연료 보조금을 받는 연금수급자 (8백만가구 이상)	기존 동계 연료보조금에 추가 300파운드 보조금	25억	11/12월
장애급여 수급자(6백만명)	150파운드 추가 보조금	9억	9월
에너지 요금(전기) 보편적 지원	요금 할인 최대 400파운드 (당초 계획 대비 2배), 상환 요건 폐지	60억	10월부터 6개월 기간
식료품, 에너지, 수도 요금 인상으로 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Household Support Fund에 추가 자금지원, 기간 연장 (지방당국의 지원 보전)	추가 5억 (총15억)	6개월 연장 (기한: 10월→'23. 3월)

출처: 영국 재무부의 보도자료(2022. 5. 26.)를 토대로 표를 작성

83) HM Treasury, "Millions of most vulnerable households will receive £1,200 of help with cost of living," press release, 2022. 5. 26., <https://www.gov.uk/government/news/millions-of-most-vulnerable-households-will-receive-1200-of-help-with-cost-of-living>, 검색일자: 2022. 6. 7.; _____, "Cost of living support factsheet," 2022. 5. 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st-of-living-support/cost-of-living-support-factsheet-26-may-2022>, 검색일자: 2022. 6. 7.; _____, "Energy Profits Levy Factsheet," 2022. 5. 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st-of-living-support/energy-profits-levy-factsheet-26-may-2022>, 검색일자: 2022.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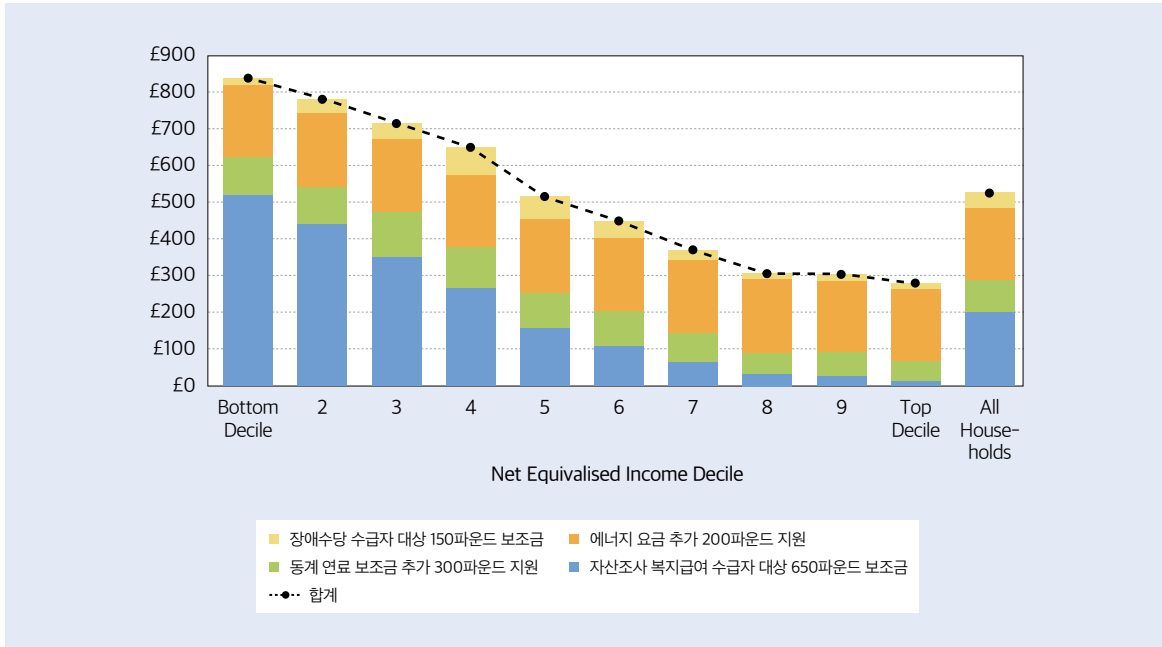
84) 지방당국이 취약 가구에 필요한 식품, 에너지 요금 등의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금

85)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소득 기반 구직 급여, 소득 기반 실업 급여, 근로 세액공제 등



[그림 5] 영국의 5월 지원 조치가 FY2022-23에 소득분위별 가계에 미치는 영향(금액 기준)

(단위: 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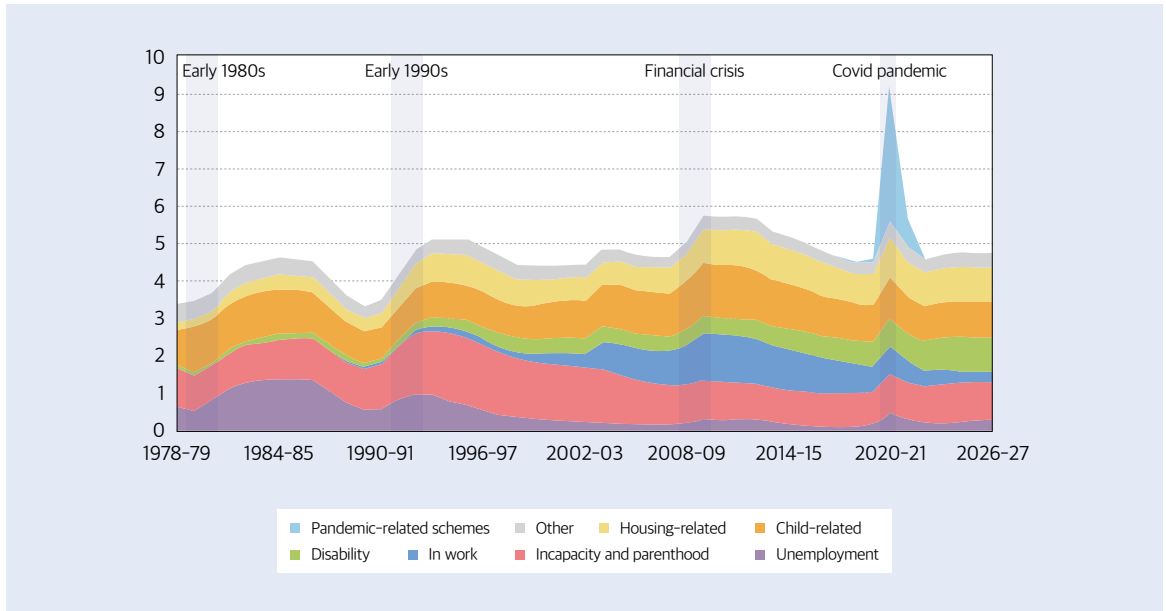
출처: 영국 재무부, Illustrat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May 2022 Cost of Living Support package and February 2022 Energy Support package on households, 2022. 5., Chart 1.B.

- (소득분포별 영향) 전체 지원의 약 3/4는 취약 가구에 전달될 전망이다 소득분포별 영향 분석 결과, 발표된 조치들은 상당히 누진적인 것으로 나타남([그림 7], [그림 8] 참조)
- (에너지 이익 부담금 부과)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영국의 석유·가스 기업에 ‘에너지 기업 이익 부담금(Energy Profits Levy)’을 신규 부과할 계획
 - (목적) 유가 상승에 따라 이례적으로 대규모 이윤이 발생한 기업들이 생활비 지원 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고 기업이 해당 수익을 영국의 석유·가스 생산에 재투자하도록 장려

- (내용) 2022년 5월 26일 이후 발생하는 석유·가스 기업 이익의 25%에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부과하고 유가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면 단계적으로 부과를 중단
 -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동 부담금에 80%의 신규 투자 공제 제도를 포함
 - * 기업이 1파운드 투자 시 총 91펜스의 조세 절감 효과(기준 공제 효과 포함) 발생
 - 다만 전기 발전 부분에는 부담금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전력 요금이 생산 비용을 더욱 잘 반영하도록 개혁을 추진 예정
- (규모) 처음 12개월 동안 약 50억파운드를 조달할 전망

[그림 6] 영국의 연금 비수급자에 대한 복지지출 추이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OBR, *Welfare trends report - May 2022*, 2022., Chart 2.

■ 예산책임청(OBR), ‘2022년 복지지출 보고서 (*Welfare trends report - May 2022*)’ 발표(2022. 5. 25.)⁸⁶⁾

- (개요) 2022년 복지지출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지난 40년간 발생한 세 차례의 경기침체의 비교를 통해 경기침체기와 이후 기간에 나타난 연금 비수급자에 대한 복지지출⁸⁷⁾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함

* 예산책임청은 복지지출의 추세와 변동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지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올해부터 발간 일정을 매년에서 격년으로 변경)

- (복지지출 규모)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과 같

은 전례 없는 대규모 비용으로 인해 연금 비수급자에 대한 복지지출은 GDP 대비 약 9%로 과거 경기침체기보다 크게 증가([그림 6] 참조)

- 팬데믹 관련 지원과 기타 한시적 복지 지원이 신속하게 도입·철회되어 기존 경기침체 대비 복지 지출의 증가와 이후 감소 속도 모두 두드러짐
- 팬데믹 관련 경기침체는 네 번의 경기침체 중 중기 복지지출 수준에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침

- (경기침체기의 복지지출(단기)) 팬데믹 기간의 복지지출(팬데믹 관련 지원제도 포함)은 1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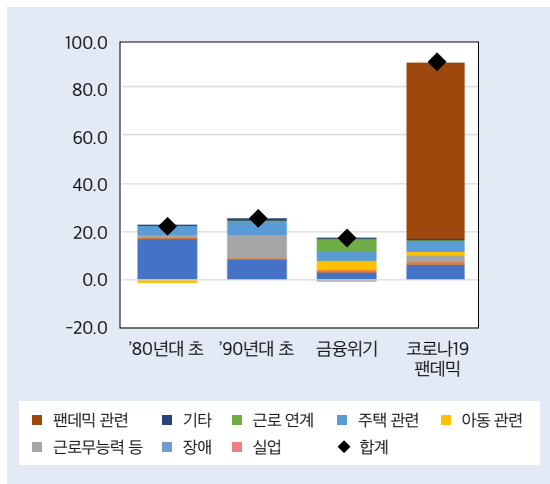
86) OBR, *Welfare trends report - May 2022*, 2022. 5. 25., 검색일자: 2022. 6. 7., <https://obr.uk/wtr/welfare-trends-report-may-2022/>

87) 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출을 제외한 것으로 주로 생산가능인구와 그 자녀에게 제공하는 복지지출과 관련됨



[그림 7] 영국의 침체 시기의 연금 비수급자에 대한 복지지출 초기 변화(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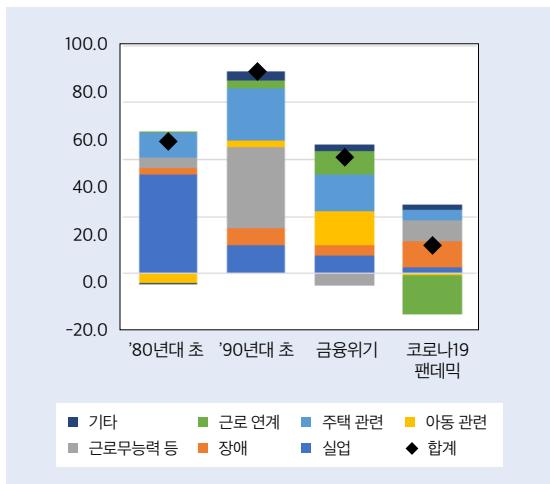
(단위: % 변화)



출처: OBR, Welfare trends report - May 2022, 2022., Chart 3.

[그림 8] 영국의 침체 이후 연금 비수급자에 대한 복지지출 증가 변화

(단위: GDP 대비 %)



출처: OBR, Welfare trends report - May 2022, 2022., Chart 4.

(2020-21년) 실질 기준 90% 증가해 과거 경기 침체의 복지지출 증가보다 훨씬 크게 나타남

- 이전 경기침체와 달리 팬데믹 시기의 일시적 대규모 지원⁸⁸⁾은 실업과 급격한 소득 감소를 방지해 팬데믹이 종래의 복지지출에 미치는 초기 영향을 상당히 줄였고 기존 복지지출의 증가도 제한적으로 나타남

- 실업률 증가폭이 더 컸던 1980년대 초 침체는 실업수당 지출의 역할이 팬데믹 시기에 비해 훨씬 더 컸음

- (경기회복기의 복지지출(증기)) 팬데믹 시작 후 5년간 연금 비수급자 복지지출은 GDP의 0.3% 정도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과거의 경기침체 이후 복지지출 증가분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장애와 근로무능력 관련 복지지출이 주요 증가 요인(각각 GDP의 0.2% 증가)으로 이는 장애 유병률의 지속적 상승, 직접적인 코로나19의 장기 영향 및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등에 기인함

- FY2024-25에 실업수당 지출은 경기침체 전 대비 GDP의 0.1% 증가해 과거의 경기침체 후 복지지출 증가폭보다는 훨씬 작을 전망⁸⁹⁾

- (리스크와 불확실성) 실업률, 건강 상태에 따른 비경제활동, 잠재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경제적 요인'과 복지급여 상향 조정 지연, 실질 소득 관련 압력, 부정수급·오류 등 '정책 및 운

88) FY2020-21에 872억파운드의 비용을 지출하여 1,150만명의 소득을 지원

89) 고용유지지원금, 자영업자 소득지원 등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개입으로 중기적인 실업의 상흔(scar)이 없다는 가정을 반영

영적 요인'에는 불확실성이 있음

-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에너지 및 물가 상승에 의한 단기 경제전망 악화로 또 다른 경기침체의 리스크가 상승

재정포럼

2022년 7월호 통권 제313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동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이현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 월간 재정포럼

2022년 7월 15일 발행 / 제26권 제7호(통권 제313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 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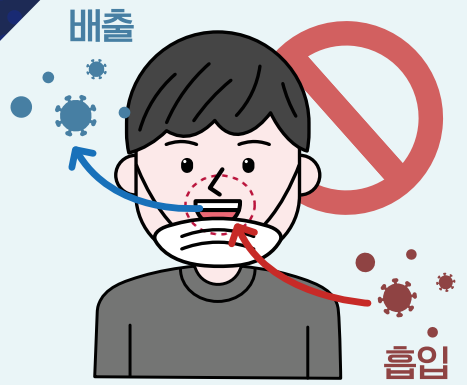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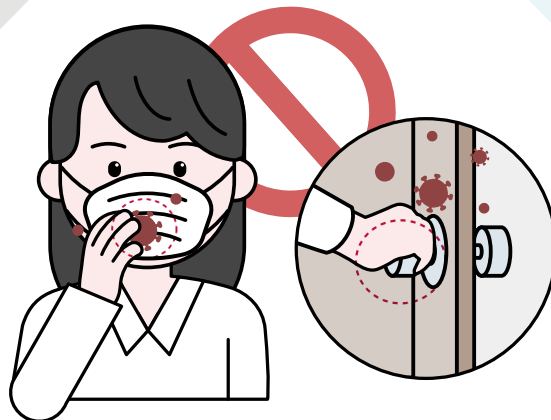


①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②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③ 마스크 겉 면을 만지는 행위



2020. 05. 06.

- 01 아르면 3~4일 집에 머물기
-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